

2018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공동 학술회의

고문서를 통해 본
초남인의 사슈와
경제생활

2018.10.25.(목)

13:30~17:30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층 세미나실



재단
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藏書閣

2018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공동학술회의

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인의 사슈와 경제생활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 13:30~17:30
 장 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층 세미나실
 주 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
|---|--|
| 13:00 | 등록 |
| 13:30~13:40 | 개회 인사말: 이종범((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
| 13:40~14:10 | 기조발제 호남지역 고문서 조사·수집의 현황과 전망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
| 14:10~14:20 | 휴식 |
| 제1부: 호남의 근대 사상과 저술 사회: 최성환((재)한국학호남진흥원) | |
| 14:20~14:35 | 발표 1 : '나철 친필본'을 통해 본 나철 사상의 일면 정육재((재)한국학호남진흥원) |
| 14:35~14:50 | 발표 2 : 일제시기 『良齋集』의 간행 경위 -玄谷 柳永善家 문서를 중심으로- 유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
| 14:50~15:00 | 휴식 |
| 제2부: 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의 경제생활 사회: 심영환(한국학중앙연구원) | |
| 15:00~15:15 | 발표 1 : 근대전환기 해남의 明禮宮 宮房田 收稅 과정 -정우형 수신간찰을 중심으로- 권수용((재)한국학호남진흥원) |
| 15:15~15:30 | 발표 2 : 한말~일제 초 영광 연안김씨가의 토지거래와 소유권 확보 허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
| 15:30~15:45 | 발표 3 :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이현주(한국학중앙연구원) |
| 15:45~16:00 | 휴식 |
| 16:00~17:30 | 종합토론 사회: 김희태(전라도천년사)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유지웅(전북대학교),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손희하(전남대학교), 조미은((재)한국학호남진흥원) |
| 17:30~ | 폐회 및 만찬 |

【 목 차 】

제1부 : 호남의 근대 사상과 저술

발표 1: ‘나철 친필본’을 통해 본 나철 사상의 일면 9

정옥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발표 2: 일제시기 『良齋集』의 간행경위

- 玄谷 柳永善家 문서를 중심으로 - 33

유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부 : 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의 경제생활

발표 1: 근대 전황기 해남의 明禮宮 宮房田 收稅 과정

-정우형 수신간찰을 중심으로- 57

권수용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발표 2: 한말 ~ 일제 초 영광 연안김씨가 토지거래와

소유권 확보 83

허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3: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109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호남의 근대 사상과 저술

제 1 부

사회: 최성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나철 친필본’을 통해 본 나철 사상의 일면 -정욱재
- 일제시기 『良齋集』의 간행경위
- 玄谷 柳永善家 문서를 중심으로- -유지영

‘나철 친필본’을 통해 본
나철 사상의 일면

정욱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나철 친필본’을 통해 본 나철 사상의 일면

정옥재((재)한국학호남진흥원)

< 목 차 >

1. 머리말
2. 나철의 생애를 통해 본 사상 형성 과정
3. 나철의 역사인식과 기존 연구의 문제점
4.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의 시기는 우리 역사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격변기였다. 문명사적 시각으로 볼 때, 근대의 정치·경제·사회·사상·기계문명으로 표상되는 서구문명과 중세의 중국 중심의 화이사상·천하사상 천하체제로 표상되는 유교문명과의 대립·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따라서 조선도 문명전환에 대응하는 변통의 논리를 세워야만 하는데, 당시 역사적·시대적 과제는 서구문명을 적극 수용하여 근대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조선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였다.¹⁾ 조선은 고종이 직접 “존송한 것은 三王五帝와 周公·孔子·孟子·程子·朱子の 道”이며 “우리 왕조는 나라를 세워 500년 이래로 한결같이 모두 선대 성인(聖人)의 도를 표준으로 삼았다”²⁾고 언급할 정도로 여전히 성리학을 고수한 나라였다. 조선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유림도 이런 근대 전환기에 직면하여 중세사회를 옹호하는 성리학적 가치체계를 극복하고 근대화와 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할 사회적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데,³⁾ 상당

1) 김용섭, 『(신정·증보판) 東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문명의 전환-충격, 대응, 통합의 문명으로』, 지식산업사, 2015, 196~206쪽.

2)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16일(임신).

3) 권오영, 「한말 유가의 정치사상」, 『韓國儒學思想大系-政治思想編』VI, 한국국학진흥원, 2007, 699~700쪽.

수의 유림은 성리학적 가치체계의 목수를 주장하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반발하였다. 결국 대한제국은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1910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점당하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지식인 노릇하기 어려운(難作人間識字人)”⁴⁾ 시대를 직면한 유림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선택해야 했다. 즉 성리학의 옹호 정도와 근대 문물의 수용 정도에 따라 유림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리학적 가치체계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근대 지식인으로 전환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성리학적 가치체계를 굳게 견지한 유림 중에는 田愚(1842~1922)처럼 나라의 멸망(國亡)보다 도의 멸망(道亡)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유교의 보존(道存)을 사명으로 여겨 은거를 택한 이가 있었다. 또한 柳麟錫(1842~1915)처럼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택한 이가 있는가 하면, 黃玟(1855~1910)·宋秉珣(1839~1912)처럼 자결 순국을 선택하는 이도 있었다. 성리학적 가치체계의 핵심은 버리지 않은 채 시대적 상황에 조응하여 근대 사상을 수용한 유림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일제에 자발적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선택한 유림도 있었다.

본고에서 검토할 나철(羅喆, 1863~1916) 역시 시대적 격변기에서 주목할 만한 행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는 독특하게도 근대 이행기에 개신유림으로 활동하였다가 다시 종교사상가로 변신한 인물이었다. 현재 나철은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대종교를 중광하여 항일민족운동에 인적·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⁵⁾ 학자에 따라 대종교가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력까지 감안하여 그를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높이 평가할 정도로⁶⁾ 항일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나철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20세기에 보이는 나철의 행적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시기를 나누어 보면, 크게 전기(1904~1908)와 후기(1909~1916)로 구분하여 그의 행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전기는 일본의 조약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조국의 국권회복을 외친 상소운동,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 사회운동 등 정치활동의 성격이 농후했다. 반면 후기는 한민족의 국조인 단군을 신봉하는 대종교를 중광하는 등 종교운동의 성격이 강한 편이었다.⁷⁾ 즉 나철은 민족운동가에서 종교사상가로 초점을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역사학계

4) 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2005, 『역주 매천야록』 하, 문학과 지성사, 665쪽.

5) 나철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朴永錫, 「大倭敎의 民族意識과 民族獨立運動」, 『日帝下獨立運動研究』, 일조각, 1984; 朴烜, 「羅喆의 人物과 活動-大倭敎 創始 이전을 중심으로」, 『滿洲韓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1991; 盧鏞弼, 「대한제국기 自新會 관련 고문서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5, 1996; 정영훈,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3호, 2002; 샷사 미츠야키(佐佐充昭), 「한말 일제시대 檀君信仰運動의 전개-大倭敎 檀君敎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오영섭, 「대종교 창시 이전 나인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6) 박성수, 『독립운동의 아버지 나철』, 북캠프, 2003.

7) 오영섭, 「대종교 창시 이전 나인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92쪽.

뿐만 아니라 종교학계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나철이 직접 남긴 문헌은 적고, 나철에 관련된 1차 사료도 많지 않은 한계 때문에 기존 역사학계의 연구는 주로 대종교 중광 이전의 나철에 주목하여 그의 활동을 상당 부분 해명하였다. 그의 항일운동과 대종교 중광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으나, 나철의 사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현재 나철이 직접 저술하여 전해진 문헌은 주로 『神理大畧』과 遺書類인 「離世歌」, 「殉命三條」, 「거듭빛노래(重光歌)」 등 대종교 종교 문헌인데, 종교학계 등이 여기에 주목하여 나철의 사상이나 대종교 사상 등을 연구하였으나 나철의 사상 형성 과정에 대한 정밀한 연구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교학계 등에서 나온 연구는 나철의 사상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 비판과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나철 남긴 문헌을 바탕으로 나철의 사상을 정합적이고 완성된 사상 체계로 간주하여 경우에 따라 역사적 실상과 맞지 않는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학계 등에서 설명하는 나철의 사상이나 대종교 종교사상 등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존 연구가 소홀히 했던 기초 사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나철의 사상의 일면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근래 나철의 유서류인 「離世歌(세상떠나는노래)」, 「殉命三條」, 「거듭빛노래(重光歌)」가 수록된 ‘나철 친필본’이 발견된 것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⁸⁾ ‘나철 친필본’의 출현으로 인해 그동안 학계에서 사료로 이용하던 나철의 유서류는 상당 부분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에 이용되었던 나철의 유서류는 1920년대 초반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朝天記』⁹⁾에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朝天記』에 실린 「離世歌」, 「殉命三條」, 「重光歌」를 주요 자료로 삼아서 나철의 사상 등을 연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철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사실상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나철 친필본’의 발견과 더불어 나철 사상 연구에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백봉전집』의 간행이다. 나철을 종교사상가로 이끈 스승이며 대종교와 개천절의 창시자로 알려진 ‘白峯’의 자료가 대종교 연구가 조준희·유영인의 노력으로 수집·정리되어 ‘백봉교단’의 실체와 사상, 대종교의 原사상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¹⁰⁾ 이 자료의 출간으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전설이나 거짓으로 치부하던 백봉교단이 사실상 존재하

8) ‘나철 친필본’의 발견 경위, 내용, 가치 등에 대해서는 정옥재, 「‘나철 친필본’의 출현과 의의-「離世歌(세상떠나는노래)」, 「殉命三條」, 「거듭빛노래(重光歌)」,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2012 참조.

9) 『朝天記』(대종교총본사 소장본)는 나철이 구월산 삼성사를 奉審하러 서울을 떠나던 1916년 8월 1일(음력)부터 순교한 후 유체를 12월 20일(음력)에 三道溝 靑湖에 奉藏할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으로 김교헌이 저술하였다. 이 책에 나철의 「離世歌」, 「殉命三條」, 「重光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離世歌」, 「殉命三條」, 「重光歌」를 연구자들은 원전으로 간주하여 사료로 이용하였다. 필자는 이 자료를 조준희 선생의 호의로 『朝天記』를 제공받아 살펴볼 수 있었다.

10) 조준희·유영인 편,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였음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나철의 사상 연구와 대종교 연구 등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게 되었다. 어쩌면 나철과 대종교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래에 발견되어 나철의 친필 유서로 공인된 ‘나철 친필본’을 주요 자료로 이용하여 나철의 사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나철의 유서 중에서 분량도 많고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거듭빛노래(重光歌)」를 중심으로 나철 사상의 일면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나철의 사상 형성 과정을 잘 보여주는 행적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나철 친필본’을 중심으로 나철의 역사관과 나철의 사상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나철의 사상 연구에 관해 약간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나철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밝히기 위한 작업의 전 단계로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띠는 점을 밝혀 둔다.

2. 나철의 생애를 통해 본 사상 형성 과정

나철은 1863년 12월 2일(음력)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금곡에서 羅龍集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이며 초명은 斗永, 호는 耕田, 자는 文卿이다. 뒤에 寅永으로 개명하여 1909년 대종교를 중광한 뒤 외자인 喆로 다시 개명할 때까지 당대에 나인영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나 16세(1878)에 순창군에서 향시에 응시했고 20세(1882)에 서울에서 과거를 보았다. 나철은 20세 무렵까지 고향 지역에서 수학을 했으나 사승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¹¹⁾ 나철이 태어나서 수학한 시기는 조선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였다. 대내적으로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등 외척이 국정을 담당하는 세도정치로 중앙에서는 정치적 기강이 무너지고 권력의 부패는 심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삼정 문란으로 대표되는 부세체제의 누적된 모순과 지배층의 수탈로 민중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기 전해에 임술민란이 일어나서 삼남지역이 크게 요동을 쳤다. 대외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세계를 압박해 오면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 체제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천주교’로 상징되는 서구문물의 유입은 조선사회의 운영 원리인 유교 이데올로기의 권위를 크게 위협하였다. 당시 서구열강의 통상 요구와 잦은 이양선의 출몰에 대해 조선왕조는 방어 대책을 모색해야

11) 오영섭, 「대종교 창시 이전 나인영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95쪽. 기존 연구들은 『大倣教重光六十年史』(대종교총본사, 1971)의 기록을 신빙하여 모두 나인영이 9세에 호남의 석학인 求禮의 왕석보(王錫輔, 1816~1868)에게 한학을 수학했다고 하는데 오영섭이 분명히 지적한대로 왕석보(1816~1868)와 나인영(1863~1916)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 기록은 잘못되었다. 연구자들이 대종교를 연구할 때 『大倣教重光六十年史』를 거의 1차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수록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적은 부분이 많아서 엄밀한 자료 비판이 필요하다. 일례로 변조된 「離世歌」, 「重光歌」 등도 그 책에 실려 있다.

할 상황이었다.

역설적으로 19세기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난숙하였고 학파별 논쟁이 심했던 시기였다. 이황과 이이가 활동하던 16세기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이해하고 있었던 理氣論을 이 시대의 유학자들은 모두 자유롭게 소화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다른 학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이론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 시기 학자들은 학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저마다 주희의 설을 근거로 삼아 자기 학설을 전개하면서도 각 학파가 때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논쟁을 펼쳤다.¹²⁾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인 보수유림 학파로는 華西學派.淵齋學派.寒洲學派.蘆沙學派.艮齋學派 등이 있었으며, 나철이 성장한 호남 지역에 노사학파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료의 미비로 수학 시기의 나철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노사학파 등과의 교류 등도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 성리학의 국가에서 성장한 만큼 당연히 성리학을 배웠을 것이나, 그가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보수유림처럼 성리학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 과거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병행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나철의 현실 인식은 분명 보수유림과 달랐을 것이다.

그는 1885년 봄에 서울에 올라가서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을 지닌 金允植(1835~1922)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1891년 11월 11일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1893년 경까지 승정원 가주서·승문원 부정자·사관 등의 미관말직을 역임했고, 1895년 5월 징세서장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후 나철은 1901년 말까지 스승 김윤식과 정치적·사상적 부침을 함께 하였는데, 그는 김윤식에게서 스승의 인맥과 개화사상을 소개 내지 전수받았다. 그는 김윤식을 통하여 세계 정세와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김윤식와의 만남과 지원은 나철이 대종교를 중광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¹³⁾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종교 중광 전까지의 나철의 사상적 기반을 논한다면, 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명확히 보수유림과 궤를 달리하는 개신유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본격화 되고 이에 호응하는 친일파들이 등장하자, 나철은 국권수호를 위해 구국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는 1904년 비밀결사 自新會를 조직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저격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후 나철은 1905년 12월 30일(음력) ‘白峯’으로 대표되는 백두산 비의 교단으로부터 『삼일신고』와 『신사기』를 전해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나철은 1908년 11월 12일(음력)부터 1909년까지 나철은 ‘백봉교단’에게 경전류와 예식서 등의 각종 서적을 전해받음으로써 ‘백봉교단’의 도통을 이어받으면서 ‘단군’을 재발견한다.¹⁴⁾ 단군을 재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은 개신유림에서 특히 발견할 수 있는

12) 이상하,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입론 근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쪽.

13) 오영섭, 앞의 논문, 195~197쪽.

14) 백봉이 나철에게 도통전수한 과정과 전해준 경전류에 대해서는 조준희, 「대종교 창시자 백봉

데, 이런 화서학파의 동문이면서도 개신유림으로 전환한 이관구(李觀求, 1885~1953)¹⁵⁾와 끝까지 보수유림으로 남은 고석로(高錫魯, 1842~1922)¹⁶⁾와의 대화에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자선(子鮮, 李觀求)이 고후조(高後凋, 高錫魯)를 만났는데, 고후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국시(國是)를 아시오?” 하니, 자선이 말하기를, “국혼(國魂)이 바로 국시입니다.” 하였다. 고후조가 말하기를, “국혼은 무엇입니까?” 하니, 자선이 말하기를, “오직 우리나라 조상이신 단군의 성자현손이 계승하고 계승하였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반만 년 동안 간혹 외족의 침략을 받았으나 종시로 외족의 세력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고 비밀히 동심협력하여 외세를 전복시키고 그 굴레를 벗어나서 마침내 독립 자유에 이른 뒤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사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정신이 국혼입니다.” 하였다. 고후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신은 예절과 의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며 의리가 아니면 거처하지 않습니다. 이 까닭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컫기를 ‘예의동방’이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근자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¹⁷⁾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실상 19세기의 인물과 19세기 말·20세기 중엽까지 살며 근대 학문의 영향을 받은 인물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서구문물이 밀려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관구는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단군을 ‘재발견’하여 그것을 국시이자 국혼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고석로는 성리학적 가치 체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禮와 義를 우리나라의 국혼이자 국시로 생각하고 있다. 나철은 여기서 나아가서 단군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올리면서 ‘道’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즉 1909년 1월 15일(음력)

의 도통전수와 경전류 해제],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참조.

15) 이관구는 화서학파 유인석의 제자로 애국계몽기에 사상적 전환을 한 개신유림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조동걸, 1983,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실행조직」, 『한국학논총』 5 ; 조준희, 2001, 「大韓光復會 研究 : 黃海道支部와 平安道支部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6 ; 이충구, 2003, 「화사 이관구의 생애와 학문」, 『화사 이관구선생 서거 50주년기념 학술강연회』, 독립기념관 ; 정옥재, 2004, 「華史 李觀求의 『新大學』 研究」, 『한국사학사학보』 10 ; 이성우, 2007, 「光復會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환, 2009, 「華史 李觀求의 민족의식과 항일독립운동」, 『송실사학』 23 ; 정옥재, 2009, 「한말 일제하 유림 연구-일제협력유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석, 2010, 「화사 이관구의 생애와 민족독립운동」, 선인 ; 노관범, 2012, 「1940년대 후반 한국에서 梁啓超 정치사상의 재현-李觀求의 『新大學』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1.

16) 고석로는 이항로의 고제인 유종교의 제자이며 독립운동가 김구의 스승이다.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권오영, 2005, 「高錫魯의 위정척사사상과 ‘口傳心受’의 교육」,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3, 백범학술원 참조.

17) 이관구, 2003, 『言行錄』, 화사선생기념사업회, 49쪽. “子鮮見高後凋 高後凋曰 子知朝鮮國是乎 子鮮曰 國魂卽國是也 後凋曰 國魂何也 子鮮曰 唯吾國祖檀君之聖子賢孫 繼繼承承 至于今(中略) 終至獨立自由 然後排外思想乃息 此精神 是爲國魂也 後凋曰 子知其一 未知其二 吾國人之重要精神 在禮義也 是故非禮不動 非義不居 是以世人稱之曰 禮義東方 又曰君子國也.”

나철은 대종교를 중광하면서 종교사상가의 삶을 선택하고 항일민족운동의 방법을 정신적·영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나철의 사상 형성 과정을 요약하자면, 그는 19세기 중엽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 공부를 병행하면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가, 근대 이행기에 김윤식을 만나서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을 지닌 개신유림으로 활동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대한제국의 명운이 다하는 시기에 나철은 '백봉교단'을 만나 일종의 종교적 각성을 통하여 '단군'을 재발견하고, 단군을 종교적 대상으로 믿는 대종교를 중광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을 삼도록 하였다.

3. 나철의 역사인식과 기존 연구의 문제점

나철 같은 종교가가 죽음을 결심한 후 가족과 교단에게 남긴 유서는 정치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사상사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우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철의 죽음은 기독교 예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도를 위해 죽은 순교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저술이 없는 예수와 달리 나철은 직접 지은 종교 문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에 「離世歌(세상떠나는노래)」, 「殉命三條」, 「거듭빛노래(重光歌)」 등의 유서를 남겼다. 그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거듭빛노래(重光歌)」는 나철의 사상과 역사인식, 대종교의 초기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로 인하여 '重光歌'라는 자료는 원래 '거듭빛노래'란 한글 제목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듭빛노래(重光歌)」의 내용은 대종교 중광과 포교, 단군의 사적·교맥, 대종교의 역사와 위기, 대종교의 성지와 문화, 대종교의 교리와 예식, 예언 등을 담고 있다. 즉 '나철 친필본'은 나철이 '인식'한 대종교 역사뿐만 아니라 나철의 현실인식, 세계관, 역사의식 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듭빛노래(重光歌)」 53·54장은 朝天을 앞둔 나철의 비장함이 서려 있다. 따라서 「거듭빛노래(重光歌)」는 나철이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자신의 생각을 최종 정리한 유서이기 때문에 나철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1차 사료이다. 여기서는 「거듭빛노래(重光歌)」의 전문을 기존의 통용본과 비교하여 나철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 나철의 사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 나철의 사상의 일면을 검토해보자.

<표 1> 「거듭빛노래(重光歌)」과 통용본 대조표

| 기존 통용본 「重光歌」 | 나철 친필본 「거듭빛노래(重光歌)」 |
|---|---|
| <p>重光歌 五十四章</p> <p>一. 天宮門 거듭 여니 天旗발 다시 펼 펼 濟濟한 형제자매 구름같이 모여서 檀檀한 믿음에 빛노래 높이 부르니 빛노래 마디마디 大倭歷史 올린다 후렴 거듭빛 거듭빛 빛의 임은 우리 한배 한배 한배 한배 이 빛을 萬萬歲 밝히소서</p> <p>二. 처음빛은 어느 때뇨 첫 甲子 상달상달 한울 열고 敎세운 赫赫上帝 나리사 三神되 히뜩히뜩 檀나무 푸릇푸릇 東에서 차차 퍼져 온 세계 다 덮었네</p> <p>三. 크다 크다 이 倭道 온 세계 빛이라 이 종도가 어두면 세계 모두 캄캄 이 종도가 밝으면 세계 다시 桓桓桓 이 세계 거듭 빛에 한배 오직 神神神</p> <p>四. 神저자 거듭 여니 때때로 돌아온다 南北의 振振五族 세계의 姓姓九種 한아바지 품속에 뜻뜻한 김 골고루 五主五訓 옛빛이 오늘날 다시 靈靈</p> <p>五. 太白山 한배달은 옛 바퀴 둥글둥글 壬儉城 아침해는 옛 光彩 불긋불긋 四千年前 저 日月 거듭 돌는 오늘에 우물우물 萬像들 이 빛 함께 찍라</p> | <p>大倭教總本司 (重光歌) 거듭빛노래</p> <p>檀帝降世 四千三百七十三年 丙辰之仲 秋節</p> <p>重光歌 五十四章</p> <p>重光歌 五十四章</p> <p>一. 天宮門 거듭 여니 天旗발 다시 펼 펼 濟濟한 <u>兄弟姊妹</u> 구름같이 모여서 檀檀한 믿음에 빛노래 높이 부르니 빛노래 <u>마디마디</u> 大倭歷史 올린다 거듭빛 거듭빛 빛의 임은 우리 한배 한배 한배 한배 이 빛을 萬萬歲 밝히소서</p> <p>二. <u>칠</u>빛은 어느 때뇨 첫 甲子 상달상달 <u>하</u>늘 열고 敎세운 赫赫上帝 나리사 三神되 히뜩히뜩 檀나무 푸릇푸릇 東에서 차차 퍼져 <u>원</u> 天下 다 덮었네</p> <p>三. 크다 크다 이 倭道 <u>원</u> 세계의 빛이라 이 倭道가 어두면 세계 <u>모다</u> 캄캄 이 倭道가 밝으면 세계 다시 桓桓桓 이 <u>세계</u> 거듭빛에 한배 오<u>즌</u> 神神神</p> <p>四. 神저자 거듭 여니 <u>때때</u>로 돌아온다 南北의 振振五族 <u>세계</u>의 <u>姓姓</u>九種 한아바지 품속에 뜻뜻한 김 골고<u>로</u> 五主五訓 옛빛이 <u>오늘</u>에 다시 靈靈</p> <p>五. 太白山 한배달은 옛 <u>박</u>퀴 둥글둥글 壬儉城 <u>아</u>침해는 옛 光彩 <u>불</u>긋<u>불</u>긋 四千年前 저 日月 거듭 돌는 <u>오늘</u>에 우물우물 <u>衆生</u>들 이 빛에 함께 <u>오</u>라</p> |

- 六. 倍達나무 옛비는 부슬부슬 새 造化
無窮꽃 옛이슬은 방울방울 새 恩惠
半萬年前 저 雨露 거듭 짓는 오늘에
움글움글 群生들 이 빛에 같이 뒤라
- 七. 白頭山 報本壇에 몽게몽게 빛구름
摩尼山 祭天壇에 번쩍번쩍 붉은 늘
上古적의 저 雲霞 거듭 끼인 오늘에
총총 버린 各門戶 이 빛을 祖宗이라
- 八. 三峴에 바라보라 군데군데 한배빛
思皇峰 활쏘든 터 檀君臺 道 닦든 곳
唐藏京의 옛 都邑 御天石의 옛 자취
天王堂 神靈바람 새로이 슬슬 분다
- 九. 敎이름 살펴 보라 내리내리 한배빛
代天敎는 扶餘에 崇天敎는 新羅에
敬天敎는 高句麗 大道眞像 渤海에
壬儉敎는 高麗에 主神敎는 滿洲에
- 十. 道淵源 찾아보라 가담가담 한배빛
仙家에 天仙宗祖 釋迦에 帝釋尊崇
儒家의 上帝臨汝 耶蘇의 耶和華와
回回의 天主信奉 실상은 한 한배님
- 十一. 侗門靈哲 세여라 무리무리 한배빛
神德 가진 西岬后 敎統 얻은 扶婁帝
獸蟲逐한 扶虞氏 醫藥掌한 扶蘇氏
宴禮主한 扶餘君 穴口城 쌓은 三郎
- 十二. 山川定한 彭元輔 農桑말은 高矢네
文字만든 神史官 家屋지은 王朝明
道를 퍼던 袞天生 功을 베푼 余守己
殉化하던 三石人 聽講하던 三千徒
- 十三. 神誥읽던 殷太師 檀本쓰던 王受兢
大道傳한 文朴氏 聖德있던 神明王
龍車타던 天王郎 天帝 뵈던 阿蘭弗
麟馬朝天 句麗祖 白日昇天 居西干
- 十四. 仙桃山の 東神母 鷄林井의 闕英后

- 六. 倍達나무 옛비는 부슬부슬 새 造化
無窮꽃 옛이슬은 방울방울 새 恩惠
半萬年前 저 雨露 거듭 짓는 오늘에
움글움글 羣生들 이 빛에 같이 뒤라
- 七. 白頭山 報本壇에 몽게몽게 빛구름
摩尼山 祭天壇에 번쩍번쩍 붉은 늘
上古적의 저 雲霞 거듭 끼인 오늘에
총총 벌인 各門戶 이 빛을 祖宗하라
- 八. 三峴외 바라보라 군대군대 한배빛
思皇峰 활쏘던 터 檀君抬臺 道 닦던 곳
唐藏京의 옛 도읍 御天石의 옛 자취
天王堂三聖祠 神靈바람 새로이 슬슬 분다
- 九. 敎이름 살펴 보라 내리내리 한배빛
代天敎는 扶餘에 崇天敎는 新羅에
敬天敎는 高句麗 大道眞像 渤海에
壬儉인걸敎는 高麗에 主神敎는 滿洲에
- 十. 道淵源 찾아보라 가담가담 한배빛
仙家의 天仙宗祖 釋家에 帝釋尊崇
儒家의 적은바 神敎를 天下服從
耶蘇집 拜神原理 侗門支流 번쳤네
- 十一. 侗門聖哲 세어라 무리무리 한배빛
神德 가진 西岬后 敎統 이은 扶婁王
獸蟲없엔 扶蘇氏 醫藥내은 扶虞氏
天下平한 扶餘王 穴口城 쌓은 三郎
- 十二. 山川定한 彭元輔 農桑말은 高矢네
文字만든 神史官 家屋지은 王朝明
道를 퍼던 袞天生 功을 베푼 余守己
殉化하던 三石人 聽講하던 三千徒
- 十三. 神誥읽던 殷太師 檀本쓰던 王受兢
大道傳한 文朴氏 聖德있던 神明王
龍車타던 天王郎 天帝 뵈던 阿蘭弗
麟馬朝天 東明帝 白日昇天 居西干
- 十四. 桃山仙人의 東神母 鷄林聖人의 闕英后

| | |
|---|--|
| <p>普述水 늦은날에 帝孫만난 三衣人 溟帶물 南渡할 때 溫祚따른 十賢臣 山窟巖穴 道 닦던 新羅의 六部始祖</p> | <p>普述水 늦은날에 帝孫만난 三賢人 溟帶물 南渡한 날 溫祚따른 十賢臣 山窟巖穴 道 닦던 新羅의 六部始祖</p> |
| <p>十五. 中嶽窟의 金角干 石多山の 乙支公 功세운 明臨國仙 德힘쓴 解婁左輔 御天日 神夢언어 아들 낳은 山上王 鴨綠谷 풀암자에 禮로 맞은 乙處士</p> | <p>十五. 中嶽窟의 金角干 石多山の 乙支公 功세운 明臨大仙 德힘쓴 解扶左輔 御天日 神夢언어 아들 낳은 山上王 鴨綠谷 풀암자에 禮로 맞은 乙處士</p> |
| <p>十六. 天真像그린 率居 帝釋經 쓰던 金生 侗統이은 渤海祖 神劔얻은 麗太祖 闡道玄妙 崔致遠 贊眞尊嚴 李奎報 四時祭天 百濟禮 八關事神 高麗俗</p> | <p>十六. 天真像그린 率居 帝釋經 쓰던 金生 侗統이은 渤海祖 神劔얻은 麗太祖 三教包含 崔孤雲 御眞題贊 李奎報 四時祭天 百濟王 八關事神 高麗王</p> |
| <p>十七. 神誥序낸 大野勃 五訓註낸 任雅相 石函 감춘 大文宗 金尺받은 李太祖 君樹立한 契丹主 天臺築한 女眞帝 龍蛇風塵 芙蓉堂 教名받은 仁祖님</p> | <p>十七. 眞經序낸 大野勃 五訓註낸 任雅相 寶誥 감춘 渤文王 金尺받은 朝太祖 天神廟의 遼太祖 拜天壇의 金太祖 壬辰왜란 誕生대 神祐입은 仁祖王</p> |
| <p>十八. 救世할 큰짐지고 禱天한 白峯神師 한 精誠 열해만에 한배게 默契 받아 四三六一 開天날 옛教빛 받혔도다 玉집金꽃 피는 날 三千部部 새 봄빛</p> | <p>十八. 救世할 큰짐지고 禱天한 白峯神師 한 精誠 열해만에 한배게 默契 받아 四三六一 開天날 옛教빛 받혔도다 玉집金꽃 피는 날 三千部部 새 봄빛</p> |
| <p>十九. 슬프다 侗門劫運 이 빛 없기 몇몇번 博士滿의 叛할 때 檀本神史 永遺失 劉漢의 四郡두고 李唐의 督府 두니 信衆은 離散하고 經典은 焚蕩했네</p> | <p>十九. 슬프다 侗門劫運 이 빛 없기 몇몇번 燕衛滿의 侵奪할 때 檀國神史 다 遺失 漢劉徹의 四郡둘 때 信衆經典 다 散失 唐李治의 都府둘 때 史庫書樓 다 焚失</p> |
| <p>二十. 蒙古의 高麗侵虐 異族의 嫌疑로다 書籍文記 다 뺏고 教門祭典 다 廢絶 後朝鮮 諱識하야 世祖睿宗 禁書로 古朝鮮詞 三訓誥 神事秘記 다 닦네</p> | <p>二十. 胡元의 高麗侵虐 金國同祖 嫌疑라 書籍文記 다 뺏고 教門祭典 다 廢絶 世祖睿宗 金은 冊 그 또한 兵火만나 古朝鮮詞 三訓誥 神事秘記 다 닦네</p> |
| <p>二十一. 天竺道 들어올제 檀檀脫脫 부르며 宋儒學說 오더니 忘本敬他 可笑라 侗理를 廢할손가 歐美의 上帝敬奉 不謀同 各門戶에 皇皇하신 一神빛</p> | <p>二十一. 天竺道 들어올제 檀檀脫脫 부르며 魯聖道 짓너올제 家家簫管 있으나 잇때 侗家道물은 歐美에 派派흘너 拜天한 各門戶에 皇皇하신 一神빛</p> |
| <p>二十二. 이때 大東天地에 侗門빛은 흐리나 蕩蕩한 深恩厚澤 골갈 해에 잇을까 뼈살도 한배주심 옷밥도 한배주심</p> | <p>二十二. 잇때 大東天地에 侗道빛은 흐리나 蕩蕩한 深恩厚澤 골갈해에 잇을까 뼈살도 한배주심 옷밥도 한배주심</p> |

德儀로 風俗으로 至今껏 곳곳받듬

二十三. 곳곳받든 한배께 南北韓의 信奉은
三神帝釋 聖祖神 太白神帝 上山神
滿洲사람 信奉은 主神과 太古檀神
支那사람 信奉은 東皇大帝 老白神

二十四. 特色의 傳來함은 赤縣과 蜻州섬에
참理致는 다 잃고 옛 教化만 떠있네
四億萬 사람사람 늬아니 編髮盖首
十八姓 遺族집집 꼭 같이 한배 享祀

二十五. 侗門賢人 받든 神道빛 昭昭있네
西쪽의 佑神觀은 扶餘의 帝女시고
東쪽의 出雲社는 牛首의 遺跡이라
東西의 宗教民族 한배님의 神化라

二十六. 大侗祖 큰손으로 甓赤子 거듭 건짐
한울宮 계시올 때 寶光煜煜 높은 빛
땅世界 만드실 때 氣色熱 주신 큰빛
사람世上 내릴 때 光輝四表 넓은 빛

二十七. 大侗人 머리머리 한배검 함께이고
한결같이 桓桓빛 어대 간들 變할까
검은데 검지 말고 붉은데 붉지 말라
強한데 屈伏말고 惡한데 물젖을나

二十八. 편편한길 蝸인빛 遠近없이 一體로
아득아득 宇宙빛 萬古를 늘싸은 듯
더운더운 太陽빛 萬方을 다 쪼인 듯
따뜻따뜻 大侗빛 萬物을 다 發한 듯

二十九. 높고높은 한울메 道脉이 千峰萬嶽
白岳太白 大朴과 鼻白頭白 다巍巍
朴達哈達 阿斯達 康達完達 다屹屹
溫德享 錫赫特과 泰山漢孥 다巖巖

三十. 깊은깊은 한울못 道根源 千派萬流
치렁치렁 松花江 億萬년에 마를까
출렁출렁 鴨綠江 百億劫에 끊일까
굽틀굽틀 豆滿江 千萬世에 쉬일까

德儀로 風俗으로 지금껏 곳곳받듬

二十三. 곳곳받든 한빛에 南北韓의 信奉은
三神帝釋 聖帝神 太白神帝 上山神
滿洲사람 信奉은 主神과 太古檀神
支那사람 信奉은 東皇大帝 老白神

二十四. 特色의 傳來함은 中國과 日本섬에
참리치는 다 잃고 옛 教化만 떠있네
四億萬 사람사람 늬아니 編髮盖首
十八姓 遺族집집 꼭 같이 한배 享祀

二十五. 侗門賢人 받은 神道빛 昭昭있네
西쪽에 佑神觀은 扶餘帝室의 女神
東쪽에 出雲社는 濊邦의 素盞鳴神
神廟와 宮省園에 韓几와 五十韓神

二十六. 大教祖 큰손으로 甓赤子 거듭 건짐
하늘宮 계시올 때 寶光煜煜 높은 빛
땅世界 만드실 때 氣色熱 주신 큰빛
사람세상 나릴 때 光輝四表 밝은 빛

二十七. 大教人 머리머리 한배검 함께이고
한갈같이 환한빛 어대 간들 變할가
西洋에 히지 말라 南洋에 붉지 말라
強한데 더러울나 惡한데 물젖을나

二十八. 편편한길 蝸인빛 遠近없이 一체로
아득아득 宇宙빛 萬古를 늘 싼 듯
더운더운 太陽빛 萬方을 다 쪼인 듯
따뜻따뜻 陽春빛 萬物을 다 發한 듯

二十九. 높은높은 하늘뫼 道脉이 千峰萬峰
白嶽太白 大朴과 鼻白頭白 다嵬嵬
朴達哈達 阿斯達 康達完達 다屹屹
溫德享 錫赫特과 泰山漢孥 다巖巖

三十. 깊은깊은 하늘못 道근원 千派萬派
치ړ치ړ 松花江 億萬년에 마를가
출렁출렁 鴨綠江 百億劫에 끊일가
굽틀굽틀 土門江 千萬世에 쉬을가

三十一. 이빛비친 處處에 우리한울 또 본다
 병어리는 입벌려 한배검 부르지며
 관수는 눈을 떠서 天真像 우리보며
 귀머거리 귀깨여 天神歌 반겨 들네

三十二. 이빛받은 家家에 우리사람 또산다
 앉음방이 발뻗어 일어서 펼펼뛰고
 곱새는 등을 펴서 훨훨 가며 춤추고
 묶인鐵絲 벗어나 自由로 潑潑한다

三十三. 恭敬날은 復脉날 이날빛 다쏘이라
 어린아해 한마음 精誠으로 절할 때
 如日始出 녀字뜻 한배빈 듯 늘생각
 감감한 太古적에 한배검빛 저렇네

三十四. 셋 하나 참리치를 힘쓰라 공부하라
 十八地境 세길로 妄에서 眞에 가면
 五苦界 아주떠나 四神機 바로 얻어
 通性한 이 길우에 萬德門 光明光明

三十五. 공부한 형제자매 三法 먼저 세우되
 한배의 소리·기운 밖에서 求치 말고
 네神府 공경하라 네靈臺 밝히려
 玄玄코 精一하면 한울사람 한 旨趣

三十六. 네眞性을 求할때에 皎皎한 저달보라
 한 달이 各各물에 똑같이 찍혔것만
 고요코 맑은물엔 맑은빛이 淸淸
 혼들고 흐린물엔 흐린빛이 으스름

三十七. 男女웃 흰 東旌을 항상항상 깨끗케
 白山表章 생각소 高句麗 좋은 規模
 童稚의 壽福檀戒 항상항상 드리워
 檀帝靈戒 생각소 渤海의 착한 風俗

三十八. 朝鮮사람 最誠信 이誠信 거듭하라
 人人의 勇善劫惡 年年에 穀豐無病
 扶餘나라 同仁厚 동仁厚 다시하라
 때때로 序齒禮에 講修한 아홉盟誓

三十九. 震檀圖 한글자를 얻은이 어떤 一人
 한배孫 辰韓한族 한檀下 한맘願禱

三十一. 이빛빛인 處處에 우리하늘 또 본다
 병어리는 입벌어 한배검 부리지며
봉사는 눈을 떠서 天真像 우리보며
 귀먹어리 귀깨어 天神歌 반겨 들네

三十二. 이빛받은 家家에 우리사람 또산다
 앉은방은 발뻗어 일어서 펼펼 뛰고
 곱새는 등을 펴어 훨훨 가며 춤추고
묶인 이鐵絲 벗어나 自由로 潑潑간다

三十三. 공경날은 日曜날 이날빛 다쏘이라
 어린아히 한마음 정성으로 절할 때
 如日始出 녀字뜻 한배빈 듯 늘 思慕
검검한 太古적에 한배칠빛 저렇네

三十四. 셋 한나 참리치를 힘쓰라 工夫하라
 十八지경 세길로 妄으로 참에 가면
 五苦界 아주떠나 四神機 바로 얻네
 通性한 이 길 우에 萬德門 光明光明

三十五. 工夫한 兄弟姊妹 三法 문져 세우되
 한배의 소리기운 밖결에 求치 말라
 네神府 공경하라 네靈臺 밝히려
 玄玄코 精一하면 하늘사람 한 지추

三十六. 네眞性을 求할때에 皎皎한 저달보라
 한 달이 各各물에 똑같이 찍히건만
 고용고 맑은물엔 맑은빛이 淸안창
 혼들고 흐린물엔 흐린빛이 어스름

三十七. 男女웃 흰 東領을 항상항상 깨끗게
 白山表章 생각소 高句麗 좋은 規模
 童穉의 壽福檀戒 항상항상 드리게
 檀帝靈戒 생각소 渤海의 착한 風俗

三十八. 朝鮮사람 最誠信 이誠信 거듭하라
 人人의 勇善劫惡 年年에 國豊無病
 扶餘나라 同仁厚 이仁厚 다시하라
 때때로 序齒禮에 講修한 아홉명서

三十九. 震檀圖 한글자를 얻은이 어떤 一人
 한배孫지진한한族 한檀下 한맘願禱

한柱 한門 한統에 끊인 倥光 이어나
한마디 침침빛에 群敎界를 못統一

四十. 天山神道 配衡과 一大口 一小土와
三十六國 來朝는 誌公記 적은바라
天下의 큰宗敎가 高麗에 난단 말과
天神敎 將來同化 歐美豫言 아닌가

四十一. 天嶽神記 보아라 宗人道 弘益弘濟
黑鷄赤鷄 云云과 普和統旁 뒤알고
神公秘詞 풀어라 秤錘極器 한天下
白牙岡 均等位에 萬邦世世 保太平

四十二. 모질다 歐洲 큰亂 불상타 同胞 죽엄
피비와 비린 바람 黑暗빛을 다 쓸고
好生한 天意받아 道德和平 부를 때
天神道 明明한빛 全世界 同輝하되

四十三. 記하라 四子言志 奉敎子 出班言에
幸逢한 文明時代 天神敎 重創하야
太白山 檀木下에 總敎宮 다시 建築
世界各敎 다歸一 天下各族 다同化

四十四. 天王峯 넷꽃송이 仰天吼 한쉬과람
神山靈境 열린날 萬邦사람 다回頭
任走하는 迷途人 한검앞이 生活方
큰道德 生活路에 어서어서 다同歸

四十五. 한울戶籍 피노라 重光歷史 추리자
飄飄然 神師靈踪 現世記 안傳하고
渺渺然 十三道兄 實事蹟 없었으나
古經閣 끼친빛은 큰功德 길히煌煌

四十六. 한배핏줄 無盡數 그사람 在在컨만
蠢蠢한 이不肖가 倥門主務 웬일고
乙巳 선달 그믐날 老人 만나 敎받고
한얼빛 佈明書를 一一히 감춰다가

四十七. 四三六六 己酉해 上보름 첫새벽에
天祖神位 받들고 祭享하며 道퍼니
이날 慶節 거듭빛 거듭빛 잊지마세
白岳下 翠雲前에 六間뗏집 잘있나

한柱 한門 한統에 끊인 倥光 이어나
한마디 침침빛에 群敎界를 못統一

四十. 天山神道 配衡과 一大口 一小土와
三十六國 來朝는 誌公記 적은바라
天下의 큰宗敎가 高麗에 난단 말과
天神敎 將來同化 歐米哲言 아닌가

四十一. 天嶽神記 보아라 宗人道 弘益弘濟
黑鷄赤鷄 云云과 普華統旁 뒤알고
神公秘詞 풀어라 秤錘極器 한天下
白牙岡 均平位에 萬邦世世 保太平

四十二. 모질다 歐洲 큰亂 불상하다 同胞 죽음
피비와 비린 바람 黑暗한빛을 다 쓸고
好生한 天意받아 道德和平 부를 때
天神道 明明한빛 全世界 同輝하리

四十三. 記하라 四子言志 奉敎子 出班言에
幸逢한 文明時代 大天神敎 重創하야
太白山 檀木下에 總敎宮 다시 建築
世界各敎 다故一 天下各族 다同化

四十四. 天王峯 셋꽃송이 仰天吼 하수과람
神山靈境 열린날 萬方사람 다回頭
八陣벌인 迷塗士 한검앞이 生門方
큰道德 生門路에 어서어서 다同歸

四十五. 하늘호적 피놀라 重光歷史 추리자
飄飄然 神師靈蹤 現世記 안傳하고
渺渺然 十三道兄 實事蹟 없었으나
古經閣 끼친빛은 큰功德 길이煌煌

四十六. 한배피줄 七千萬 그사람 在在컨만
蠢蠢한 이不肖가 宗門主務 웬일고
乙巳 섯달 그믐날 老人 만나 敎받고
한실빛 佈明書를 밀밀히 감춰다가

四十七. 四三六六 己酉해 上보름 첫새벽에
天祖神位 받들고 祭행하며 道퍼니
이날 慶節 거듭빛 거듭빛 잊지말세
白岳下 翠雲前에 六間뗏집 잘있나

| | |
|---|---|
| <p>四十八. 二月十八 새벽빛 스물두字 神書에 不自欺通 잇을나 맘색여 念念하라 사랑사랑 信徒들 물밀듯 쏟아드네 기쁘다 天歌神歌 소리소리 한배님</p> <p>四十九. 辛亥秋 蕭蕭檀杖 古蹟靈跡 찾는다 塹城崇靈 奉審後 豆滿江물 건너니 구슬바람 祖山길 神兄님 어대계심 嗚呼라! 己酉가을 世外에 鸞駕翩翩</p> <p>五十. 祖山東 檀城府에 박달피 우뚝우뚝 修道佈道 네해에 큰道빛 漸漸普徧 總司는 靈宮옛터 四道로 六洲까지 古靈祠 香火빛은 烈烈한 모든 聖哲</p> <p>五十一. 一符三印 거듭運 빛빛마다 새神化 檀村에 病을 빌 때 四十一人 곧 蘇醒 靑湖에 비를 빌 때 絶食한 五日得雨 汪淸 和龍 密山골 種種靈驗 다神明</p> <p>五十二. 乙卯봄 重光節에 南本司 돌아오니 三神殿 檀香煙氣 祭天儀 거듭승승 天帝敎 神孫몸에 世法拘束 우습다 弘濟를 自擔터니 天神께 도려累德</p> <p>五十三. 累씻어라 어서가 一縷命 快히 끊자 天祖의 크신 恩德 萬分一 報答할가 同胞의 모든 罪惡 一切로 代贖하야 空空한 한울길에 어서 뵈자 한배빛</p> <p>五十四. 上帝께 呼訴하야 天國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神敎로 큰地球를 統轄케 大小強弱 너나를 한집에 一體愛合 한世界 한道빛에 天民同樂 萬萬대</p> | <p>四十八. 二月十八 새벽빛 스물<u>덟</u>자 神書에 不自欺通 잇을나 맘색<u>겨</u> 念念하라 사랑사랑 信徒들 물밀듯 쏟아드네 <u>기쁘</u>다 天歌神歌 소리소리 한배<u>일</u></p> <p>四十九. 辛亥秋 蕭蕭檀杖 古蹟靈跡 찾는다 塹城崇靈 奉審後 豆滿江물 건너니 구슬바람 祖山길 神兄님 어대계심 嗚呼라 己酉가을 世外에 鸞駕翩翩</p> <p>五十. 祖山東 檀城府에 박달피 우<u>뚝</u>우<u>뚝</u> 修道佈道 네해에 큰道빛 漸漸普徧 總司는 靈宮옛터 四道로 六洲까지 古靈祠 香火빛은 烈烈한 모든 聖哲</p> <p>五十一. 一符三印 거듭運 빛빛마다 새神化 檀村에 病을 빌 때 四十一人 <u>곧</u> 蘇<u>生</u> 靑湖에 비를 빌 때 絶食한 五日得雨 汪淸 和龍 密山골 種種靈驗 다神明</p> <p>五十二. 乙卯봄 重光節에 南本司 돌아오니 三神殿 檀香煙氣 祭天儀 거듭承<u>承</u> 天<u>祖</u>敎 神孫몸에 世法구속 <u>웃</u>웁다 弘濟를 自擔터니 天神께 <u>돌</u>려累德</p> <p>五十三. 累<u>씻</u>서라 <u>칼</u>매라 一縷命 快히 <u>끈</u>자 天祖의 크신 恩德 萬分一 報答할<u>가</u> 同胞의 <u>몸</u>은 罪惡 一切로 代<u>身</u>하야 空空한 한울길에 <u>어</u>서 뵈자 한배빛</p> <p>五十四. 上帝께 <u>號</u>訴하야 天國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神敎로 <u>원</u>地球를 統轄케 大小強弱 너나를 한집에 一切愛合 한世界 한道빛에 天民同樂 萬萬<u>대</u></p> <p>檀帝降世四千三百七十三年 丙辰八月十五日 大儂敎都司敎 羅喆 ㊸ 臨終發表</p> |
|---|---|

나철은 「거듭빛노래(重光歌)」를 54장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나이가 당시 54

세였기 때문에 자신의 연수와 맞춘 것이라고 54장의 頭註에서 밝히고 있다.¹⁸⁾ 그런데 현행본은 「거듭빛노래(重光歌)」에 기록된 두주와 미주를 모두 누락하고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天玉堂三聖祠’ 처럼 나철이 작은 글씨로 본문에 설명을 붙인 부분도 모두 누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행본의 심각한 문제점은, 단순히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거나 한글을 한자로 바꾼 것은 차지하고, 어떤 부분은 거의 변조에 가깝게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존 연구는 수정된 통용본에 근거하여 나철의 사상 등을 연구하여 실상과 다른 나철의 역사상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나철 사상을 밝히기 위한 전단계로서 우선 나철의 역사인식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종교는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종교로 당연히 단군에 관련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정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문헌이 바로 『檀祖事攷』(1911)와 『神檀實記』(1914)이다. 『단조사고』가 대종교 단군 인식의 시작을 알린 문헌이라면, 『신단실기』는 대종교 역사 인식을 대중화한 문헌으로 모두 金敎獻(1868~1923)에 의해 저술되었다. 두 책은 근대 단군 인식의 역사적·종교적 이해에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자료로, 『단조사고』대종교에서 최초로 나온 단군 관련 자료를 모은 사료집 성격의 문헌이라면, 『신단실기』는 공식적으로 간행되어 대중에게 대종교의 역사인식을 밝힌 최초의 저술이다.²⁰⁾ 그중 『신단실기』는 나철이 김교헌에게 저술하여 간행하도록 한 문헌이었다. 특히 『신단실기』의 저자 김교헌은 단군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무리하게 날조하지 않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밝혀낸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광범하게 수집·정리하고, 여기에 대종교적인 단군민족주의 세계관을 투영시켜 새로운 상고사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²¹⁾ 그런데 「거듭빛노래(重光歌)」에 보이는 단군 관련 서술들의 상당 부분이 『신단실기』에 근거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1. 敎 이름 살펴 보라 내리내리 한배빛// 代天敎는 扶餘에 崇天敎는 新羅에//敬天敎는 高句麗 大道眞宗 渤海에//壬儉일점敎는 高麗에 主神敎는 滿洲에²²⁾

1-2. 東方에 檀君이 首出하샤 以神聖之化로 敎民厚勤하샤 濟濟爲強族하니 敎名은 扶餘曰代天敎오 新羅曰崇天敎오 高句麗曰敬天敎오 高麗曰王儉敎니 每十月에 拜天하니라(續宛委餘編)²³⁾

18) 나철, 『거듭빛노래(重光歌)』, 54장 頭註. “止於五十四章 卽余今年年數也”

19) 두주가 있는 장은 4장, 13장, 26장, 38장, 40장, 41장, 43장, 46장, 47장, 50장, 52장, 54장이다. 그리고 두주와 미주가 같이 있는 장은 51장이며, 미주만 있는 장은 28장이다.

20) 『단조사고』와 『신단실기』의 단군 인식의 계승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정옥재, 「단군 인식의 계보와 대종교

-「증보문헌비고」·「단조사고」·「신단실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9호, 2018 참조.

21) 한영우, 「1910年代 李相龍·金敎獻의 民族主義 歷史敘述」, 『韓國民族主義歷史學』, 일조각, 1994, 105쪽.

22) 「거듭빛노래(重光歌)」 제9장.

1-1은 「거듭빛노래(重光歌)」제10장의 글로 역대 왕조에서 믿었던 민족 고유 종교의 명칭을 읊고 있다. 1-2는 『신단실기』에 실린 내용으로, 『續宛委餘編』를 전거로 들고 있다. 『신단실기』가 전거로 내세운 『속완위여편』은 현재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다. 이와 유사한 서명이 『해동역사』에 전해진다. 즉 『해동역사』에 인용된 중국문헌 중에서 명의 유명한 문인 王世貞의 저서 2종을 인용하였는데, 바로 『藝苑卮言』과 『宛委餘編』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속완위여편』은 왕세정의 저서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왕세정의 문집에는 이런 저술이 없고 비슷한 내용조차도 없다. 만일 왕세정이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다면 당연히 『해동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명대의 문인이 외국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서술할 정도로 지식이 있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1. 山川定한 彭元輔 農桑말은 高矢례//文字맨든 神史官 家屋지은 王朝明// 道를 펴던 裊天生 功을 베푼 余守己// 殉化하던 三石人 聽講하던 三千徒²⁴⁾

2-2. 當洪水하야 命彭虞하샤 治山川하야 奠民居하며 神誌로 掌書契하며 高矢로 治田事하시다 (中略) 以余守己로 爲濊君長하야 使其子九人으로 分掌諸郡케하시며 以裊天生으로 爲南海上長하시다²⁵⁾

단군이 백성에게 編髮蓋首를 가르치고, 彭吳에게 명하여 국내 산천을 다스려서 백성의 주거를 안정시켰다는 내용 등은 洪萬宗(1643~1725)의 『東國歷代總目』에서 처음 나온다.²⁶⁾ 사실 단군에 관한 내용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역사화 되어 가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런데 대종교는 단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없는 전설이나 민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그대로 사실로 인식하고 수집·정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철이 인식하는 단군과 그 역사는 종교적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학문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단군을 역사화 하는 단계를 넘어서 신격화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조사고』와 『신단실기』에는 신빙하기 어려운 자료 내지는 위작의 흔적이 보이는 자료가 수록되었다.²⁷⁾ 『신단실기』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나철은 단군에 대해 轉假爲眞의 事實을 史

23) 『신단실기』, 196쪽. 필자가 참고한 『신단실기』는 헌뿌리에서 1986년에 원문을 영인하고 고동영이 국역한 『신단실기』본이다. 본고에 인용되는 쪽수는 헌뿌리 간행본의 쪽수이다.

24) 「거듭빛노래(重光歌)」 제12장.

25) 『신단실기』, 232쪽.

26) 「檀君朝鮮」, 『東國歷代總目』(장서각 B3B 19). “檀君(中略) 敎民編髮蓋首[君臣男女飲食居處之制 亦自此始云] 命彭吳治國內山川 以奠民居[本記通覽云 牛首州有彭吳碑 金時習詩曰 壽春是鄒國 通道自彭吳 牛首州今春川 壽春卽本州別號]”

27) 정옥재, 「단군 인식의 계보와 대종교-「증보문헌비고」·「단조사고」·「신단실기」를 중심으로-」, 『

實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의 역사인식은 종교적 믿음에 바탕을 둔 일종의 神祕史觀과 비슷하다.

그런데 대종교가 만들고자 했던 단군에 대한 역사상은 당시 유림에게 큰 호응은 얻지 못했던 같다. 유림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여 간행된 『신단실기』는 정작 유림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郭鍾錫(1846~1919)의 高弟인 金樞(1896~1978)은 『신단실기』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평을 내리고 있다.

나는 단군이 동방에서 처음 나오신 분으로 반드시 神聖한 덕을 지닌 사람이 생각한다. 그 분의 事蹟에 대해서는 오직 잘 가려서 近雅한 것을 취할 뿐이다. 근세에 어떤 사람이 『신단실기』를 지었는데, 단군의 政教·風俗과 그 疆域·族統을 극진히 서술하였다. 또한 단군을 미루어서 종교의 교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이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 없다.²⁸⁾

보수유림은 단군을 동방의 首出聖人이자 開國始祖로 인정을 하지만,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단실기』에 기록된 단군과 단군 조선의 역사 서술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를 수록한 잡서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보수유림이 대종교에 대해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였으리라 생각한다.

나철 같은 종교인이 실제 있었다고 믿는 事實과 사료 비판을 통해 검증된 事實은 구분해야 하고, 사실로 믿고 해석한 내용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도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 이는 나철의 사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나철은 ‘백봉교단’으로부터 전수받은 서책과 수련법으로 자신을 수련하여 개신유림에서 종교인으로 변화하게 된다. 더불어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道는 보존할 수 있다(國雖亡而道可存)’는 그의 언명도 보수유림이 내세운 것과는 다른 함의를 지니게 된다. 즉 보수유림이 말하는 ‘道’는 孔子·孟子 등 중국 성현의 가르침, 三綱·五倫·五常 등 유교 윤리, 상투·넙은 소매 등 문화 체계로 표현되는 유교적 대도이다.²⁹⁾ 그리고 보수유림이 설정한 유교의 ‘도’는 서양의 근대 문명과 소통이 불가능한 가치체계이다.

중국의 道가 망하니 오랑캐와 짐승이 몰려온다. 北虜는 오랑캐이지만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으나 서양은 짐승이라서 대화도 할 수 없다.³⁰⁾

『역사문제연구』 39호, 2018, 154~157쪽.

28) 金樞, 『重齋先生文集』12, 重齋先生文集刊行會, 1989, 176쪽. “愚以爲檀君首出東方 必其人有神聖之德耳 至其事蹟則 惟在善擇而取其近雅者而已 若近世有人 作神檀實記 極述檀君政教風俗 與其疆域族統 而又有推之爲宗教之主者 則事涉無徵而不可信矣.”

29)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371~373쪽.

30) 『華西先生文集』附雅言 下, 동문사, 1974, 1176쪽. “中國之道亡 則夷狄禽獸至 北虜夷狄也 猶可言也 西洋禽獸也 不可言.”

옛날에는 중화와 오랑캐로 中外를 분별하였는데, 지금은 다만 사람과 짐승로 크게 나눌 뿐이다. 반드시 사람이 아니냐 짐승이 아니냐 할 것 없다.³¹⁾

나철이 말하는 ‘도’는 보수유림이 말하는 ‘도’의 의미를 벗어나서 우리 하늘의 도를 언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혈통적 구분에 갇힌 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도를 나철은 설파하고 있다. 보수유림이 서양을 아예 짐승으로 규정하여 근본적으로 소통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게 나철은 서양도 근원이 같은 ‘도’를 수용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런 면을 「거듭빛노래(重光歌)」 제10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통용본도 같이 언급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하겠다.

3-1. 道淵源 찾아보라 가담가담 한배빛 / 仙家에 天仙宗祖 釋迦에 帝釋尊崇 / 儒氏의 上帝臨汝 耶蘇의 耶和華와 / 回回的 天主信奉 실상은 한 한배님³²⁾

3-2. 道淵源 찾아보라 가담가담 한배빛 / 仙家の 天仙宗祖 釋家에 帝釋尊崇 / 儒家의 적은바 神敎를 天下服從 / 耶蘇집 拜神原理 倥門支流 번쳤네³³⁾

기존의 연구는 3-1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종교가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이슬람교 등 만교의 그 실상을 다 하나로 보며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이타적인 요소가 주목된다고 하였다.³⁴⁾ 또한 나철이 비록 종교의 이름과 전통은 각각 다르나 모두 '神敎'에 근원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고 있어, 一元的 多元主義 입장에 서있다고 평가하였다.³⁵⁾ '나철 친필본' 3-2 내용을 살펴보면, 나철은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가 대종교의 지류로 인식하였을 뿐 이슬람교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철 친필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나철이 유교·불교·선교·기독교의 신앙 대상과 대종교의 한배님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들은 대종교의 지류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보수유림과 다른 점은 대종교의 '도'와 다른 종교의 '도'와 양립불가능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비록 본류와 지류라는 일종의 서열 관계는 있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실 학문적·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나온 '담론'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물론 '깨달음'에서 나온 '교설'일 수도 있다. 분명

31) 이철승 저, 조종업 역, 『直菴集』, 서산문화원, 2011, 710쪽. “古者以華夷辨中外 今也只人獸大分而已 必無非人非獸底.”

32) 「重光歌」 10장, 『朝天記』.

33) 나철 친필본 「거듭빛노래(重光歌)」 10장.

34) 정영훈, 「홍암 나철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국학연구』 6, 국학연구소, 2001, 46~47쪽; 조준희, 「삼신사상에 대한 문화적 고찰 I -대종교의 태교사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7, 국학연구소, 2002, 170쪽.

35) 박광수, 「홍암(弘巖) 나철(羅喆)의 단군신앙운동 연구」, 『종교연구』 53, 한국종교학회, 2008, 99쪽.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나철은 보수유림과는 다르게 ‘도’를 지리적·혈통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편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종교가 다른 종교에게 포용적인 성격을 지닌 것도 이런 연유라고 생각한다.

나철의 생애와 사상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 유교는 깊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불교와 선교(도교), 기독교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었는지 사실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기독교는 당시 통용되는 상식 수준의 지식만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나철 친필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 나철이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의 실상을 대종교로 본다고 단언할 수 없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이타적인 요소도 더욱 찾기가 어렵다. 나철의 언급은 어디까지나 그가 그렇게 믿고 생각한 내용을 표현한 것 뿐이지 학문적이고 보편타당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차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료 비판과 함께 실증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나철의 사상을 구조적·합리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통용본을 사료로 이용한 데다가 심지어 나철의 ‘견해’를 일종의 경전처럼 다루어 초합리적·견강부회적 해석까지도 하고 있다. 설사 ‘깨달음’을 담은 ‘교설’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³⁶⁾ 나철에 대한 종교학계 등의 연구가 학문적·객관적 진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신화’하는 방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철의 신화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오히려 나철의 역사적 실체를 가리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 셈이다.

4. 맺음말

나철은 19세기 중엽 호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느 양반집 자제처럼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과거 공부도 병행하였다. 그는 근대 이행기에 크게 두 번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행로를 바꾸게 되는데, 첫 번째는 김윤식을 만나서 동도서기론적 개화사상을 지닌 개신유림으로 활동하였다. 두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대한제국의 명운이 다하는 시기에 나철은 ‘백봉교단’을 만나 경전류를 전수받으면서 도통을 이은 일이다. 나철은 이 만남을 통하여 종교사상가로 각성하였고 ‘단군’을 재발견하였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도 轉變하여 ‘단군’을 종교적 대상으로 믿는 대종교를 중광하여 ‘도’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한편, 대종교를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만들었다.

민족독립운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나철과 대종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대종교를 “민족종교를 표방한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하고 주로 민족독립운동사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 나철에 대한 개인 연구 역시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나철과 대종교 연구에서 중요한

36) 김용환, 「홍암 나철 흥복사상의 세계시민성 가치」, 『단군학연구』 23, 고조선단군학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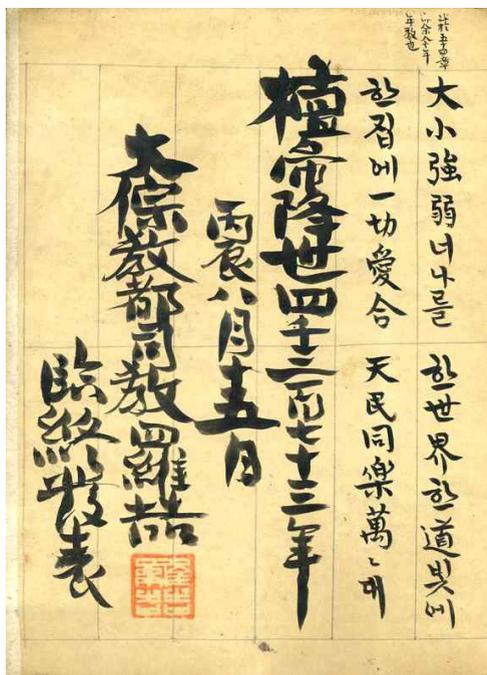
사상이나 종교 자체에 대한 접근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오히려 종교학계 등 다른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철의 사상 연구는 역사적 실체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철 및 대종교 사상의 연구의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선 대종교 자료의 면밀한 수집·정리와 1차 사료에 대한 충실한 비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철 및 대종교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문헌 수집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나철의 사상 연구에 한정을 한다면, 나철의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백봉 교단’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제야 백봉자료를 수집·정리되어 그동안 학계 일부에서 허구의 인물 내지 가상의 교단으로 여겨졌던 ‘백봉’과 ‘백봉교단’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수집·정리된 자료를 통해 대종교 중광을 전후한 시점에 방대한 경서류가 초기 나철의 대종교단에 전해졌으며, 저술 주체도 나철의 대종교와 전혀 상이한 대상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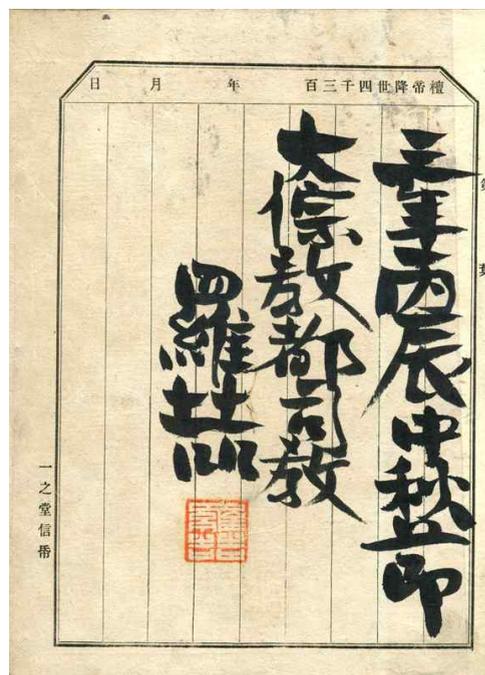
이는 나철의 사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이제 ‘백봉교단’의 사상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백봉교단’이 나철에게 전해준 경전류가 어떻게 대종교 경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마찬가지로 나철은 ‘백봉교단’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했는지, 아니면 선택적 수용 내지 변용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종교 경전 중에서 ‘백봉교단’이 전해준 『대종교 신리』가 나철이 저술한 『신리대전』으로 바뀐 것을 감안할 때, 사상적 계승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백봉교단’의 실체와 자료는 나철의 사상 형성 과정 및 사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을 준 것이다. 또한 대종교 교주로서의 나철의 사상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근래에 발견된 ‘나철 친필본’을 비롯하여 나철의 문헌을 수집·정리하여 사료 비판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나철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는 나철을 도통한 도인이나 종교적 성인으로 보는 시각이 전제된 까닭인지 주 논조가 호교론적·찬양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나철 친필본’을 비롯하여 나철의 직접 남긴 언설들을 시대적 산물로 생각하여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분석·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박제된 성인의 이미지가 아닌, 역사 속에 살아 있는 나철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7) 조준희, 「대종교 창시자 백봉의 도통전수와 경전류 해제」,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25쪽.

<그림 1> '나철 친필본'
「거듭빛노래(重光歌)」 마지막 54장



<그림 2> '나철 친필본'
「離世歌」 마지막 면



일제시기 『良齋集』의 간행경위

- 玄谷 柳永善家 문서를 중심으로 -

유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일제시기 『良齋集』의 간행경위 - 玄谷 柳永善家 문서를 중심으로 -

유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 목 차 >

1. 머리말
2. 일제시기 문집의 간행경위
3. 갈등의 전말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조 최후의 정통 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良齋 田愚(1841~1822)에 관하여는 이미 철학과 한문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그의 철학사상과 그 문인들의 학문계승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간재는 그의 생애동안 약 50여권에 달하는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죽기 전인 1914년 1920년 등 자신의 원고를 직접 편차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사망 후 그의 문인들은 스승의 원고를 간행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고민을 하였고, 결국 '일제의 허락을 받아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고 했던 스승의 생전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1926년에는 진주에서, 1927년에는 논산의 용동에서 그리고 1929년에는 상해에서 문집을 간행하였다.

그렇다면 문인들이 스승의 유지를 저버리고 문집을 간행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간행된 문집의 간본이 왜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서는 각각의 문집 서문과 발문을 통해서 그 간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再印한 해방 후의 간재문집 해제를 통해 이미 소개된 바 있다. 특히 2005년에 간행된 한국고전번역원 梁基正의 『간재집』 해제에는 시초에 간재의 문인인 최병심과 오진영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는 것, 간행논의 시에 일제의 허락하에 간행하지 말라고 했던 스승의 생전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排日관련 글이 포

함되어 있는 간재의 문집을 어떻게 認可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이 문집 간행상의 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간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진다. 문도들은 결국 화합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말이다. 이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 공개되어 주목된다. 간재의 문도 중 子貢으로 일컬어지는 玄谷 柳永善이 생전에 생산, 수집하였던 유영선가 소장 문서가 국사편찬위원회로 수집되고, 그것이 웹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창의 현곡 유영선가 문서를 중심으로 당시의 문집간행 경위와 문집간행을 둘러싼 갈등의 전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시기 문집의 간행경위

玄谷 柳永善(1893~1961)은 1904년에 스승 良齋 田愚(1841~1922)의 문하에 들어가 20여년을 수학하고, 선생의 사후 강학활동과 학문을 계승한 유학자이다.

스승 간재는 全州府 門外 靑石里에서 태어나 14세(1854)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 貞洞과 三清洞에서 살다가 21(1861)세에 부친의 명에 받아 牙山에 거처하던 奎齋 任憲晦에게 가서 수학하였다. 25세에 공주의 明剛으로 부친과 함께 이사한 후에 내내 임헌회를 모시고 배웠으며 27세에 부모상을 당하였고, 36세(1876)에는 스승 임헌회가 돌아가셨다. 고종이 여러 차례 부르고 1894년(고종 31)에는 사헌부 장령에 임명했지만 모두 거절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五賊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8년에는 문인들을 거느리고 68세의 나이로 북왕등도로 들어갔으며, 다음해는 군산도 구미촌으로 다시 1910년 7월 합방의 소식을 듣고는 왕등도로 복귀했다가 1912년에 군산도를 들러 9월 계화도 장자동으로 영구 정착하여 말년을 보냈다. 간재의 계화도 입거 후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어 2년 뒤인 1914년에는 간재의 강당과 그 제자들의 강당을 합하여 약 13개소로 운영, 강학활동을 하다가 1922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박영효와 같은 개화세력으로부터 수구 유학자로 낙인되었고, 일제에 항거하는 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의 항일세력과 세간으로부터 구적, 적과 싸우지 않고 피난하여 몸을 사리는 비겁한 유학자 등으로 비난받았다. 이에 그의 문인들은 스승을 변론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유영선은 이에 대하여 “出仕하지 않은 선비는 어려운 때를 만나면 義를 지키고 道를 講해서 士道를 지키고 後學을 길러야 한다”고 글을 써서 일축해 버렸다고 한다. 이에 당시 유림은 “전간재의 골수가 다 유영선의 폐부로 들어가 버렸다”고 평했다고 한다.¹⁾

2017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유영선가 고문서는 대개 서간류, 통문류, 필사 문적

1) 申景澈, 「良齋先生文集 解題」, 『良齋田愚先生文集』, 1999.

초론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922년 스승 사후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류가 약 90여건, 문도들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118건, 당시에 발행되었던 통문 6건, 문집간행과정상에 작성된 진주본 즉 「誣辨錄」 등이 남아 있어 문서간행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문집 등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개인 편지의 경우 문집에 선택되지 않을 수 있고, 통문 등의 경우 발급자가 단체로 되어 있어 누구의 문집에 있는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서들을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간재의 문집은 이미 여러 해제들을²⁾ 통해 알려졌듯이 일제 강점기 출판본으로는 1926년 新鉛活字로 간행한 晉州本, 1927년 木板으로 간행한 新都本(이칭 龍洞本)³⁾, 1929년 상해에서 간행한 『秋潭別集』이 있다. 『추담별집』은 1926년 진주본 간행 주체가 당시 『간재사고』 출판시 넣지 못했던 排日 관련 문서들을 별도로 간행한 것이므로 이를 빼고 보면 진주본과 신도본 두 분이 기본이 된다. 해방이후에는 이 두 본을 저본으로 하고 다른 문적들을 부록으로 삼아 재영인하여 출판한 것들이 있다.

한편 해방후에는 간재가 생전에 편간했던 『간재사고』와 그 후의 문인 수집본을 당시에 재필사해 두었다가 필사본 그대로를 영인한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를 華島修定本⁴⁾이라고 한다. 필사시기는 1923~1924년 7월이며, 필사자는 문인 金澤述이다. 김택술이 일제의 허락하에 認刊하지 말라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당대에 필사해 두었다가 1975년에 영인한 것이다. 당시는 김택술이 사망한 때이므로 그의 아들 金炯觀이 서울 光成文化社에서 『良齋私稿』의 제명을 붙여 상하2단으로 축소영인하였다.⁵⁾ 이 영인본은 이후 1984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田愚全集』으로 재영인(金炯觀 發行)되었다. 이때에는 상하 2단의 축소영인을 지양하여 1단으로 키웠으며 문집의 구성으로 화도수정본에 金澤述이 편한 拾遺 4권(화도수정본 이후 김택술이 더 수집하여 편집한 것)과 김택술이 편한 「年譜」를 함께 첨부하였다.⁶⁾

- 2) 柳正基의 「良齋私稿 解題」(『良齋私稿』, 光城文化社, 1975), 申景澈의 「良齋先生文集 解題」(『良齋田愚先生文集』, 충남대학교 도서관 1999), 梁基正의 「良齋集」(『한국문집총간 해제』 6, 민족문화추진회, 2005.)
- 3) 龍洞本은 1927년 論山郡 豆馬面 龍洞里 李仁矩 講舍인 鳳陽精舍에서 간행되었다. 용동리가 新都內(신도안)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모두 新都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나 華島修定本의 간행자인 김택술이 1975년에 編한 간재연보에는 龍洞本으로 지칭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1999년 충남대에서 영인한 『간재선생문집』의 해제자와 2005년에 발간된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해제』 6의 「간재집」 해제자가 모두 龍洞本으로 지칭하였다. 두 본은 같은 본이지만 현재 이 글은 현곡 유영선가 문서를 중심으로 한 글이고 이곳에 대한 지칭이 일제시기에 龍洞이 아니라 新都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新都本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 4) 華島修定本이란 용어는 이 필사본의 주체자인 김택술이 1975년에 작성한 「良齋年譜」에 의거하여 붙인 이름임.
- 5) 이 책에는 1975년에 작성한 良齋先生私稿發刊顛末이 들어 있고 蔡鎮斗, 成九鏞, 宋烈, 金炯觀, 증손 田世淇가 각각 썼으며, 23명의 명단이 든 同刊錄도 들어 있다.(申景澈, 「良齋先生文集 解題」, 『良齋先生文集』, 충남대학교 도서관 1999.)
- 6) 아세아문화사본 『田愚全集』에는 전 충남대학 대학원교수 柳正基의 「良齋私稿 解題」(1984)가

진주본은 1984년 보경문화사에서 재영인하여 『良齋先生全集』(上·下 2책)으로 간행했는데 이때에는 진주본인 『간재사고』에 상해본 『추담별집』과 『간재예설』, 『간재척독』, 『부록-연보(유영선 찬), 가장, 관선록 등』을 더하였다.

신도본은 신도본의 간행자인 李仁矩의 손자 慕雲 李錫羲의 소장서적을 충남대에 기증하고 慕雲文庫를 만들면서 충남대학교에서 그를 기념하여 이석희의 仲子인 李炳天 가택 소장본으로 1999년 재영인하였다. 이때에는 신도본(이병천 가택 소장본)에 유영선이 찬한 『年譜』와 문인들이 지은 제문으로 이루어진 「附錄」을 첨부하여 완성하였다.⁷⁾ 그리고 2004년에 민족문화추진위원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良齋集』을 간행하면서 신도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다만 이때에는 신도본의 목판본 자체를 직접 저본으로 삼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신도본과 이병천씨 가택 소장 신도본을 함께 보완하여 오류를 수정하며 간행하였다.⁸⁾

이상으로 간략히 간재집의 간행계통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일제시기 출간본에 해당하는 진주본과 신도본의 문집 간행에 얽힌 사연을 유영선가 문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집 간행 발의(1922)

스승 간재가 1922년 7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9월 13일 益山 玄洞의 先塋에 장사 지냈다. 간재의 병세를 유영선이 찬하고, 이것을 김택술이 편집한 「年譜」 2종에는 간단히 ‘有疾’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⁹⁾ 이에 관하여 1920년 11월 15일에 간재의 제자 金鍾熙와 金龜洛이 쓴 편지 2통에는 스승의 병보(病報)를 전하고 있는데 당시의 증세로,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다 멈추기를 3차례 하여 약 3~4되, 4~5그릇을 흘렸고 기절하였다’¹⁰⁾로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병세가 차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9월 간재의卒을 마친 다음날 문집의 간행을 위하여 간재의 아들 田華九를 비롯한 문인 吳震泳, 金澤述, 崔秉心, 南軫永, 成璣運, 權純命, 柳永善, 金洛奎 등이 계화도의 강당에 모였다. 일제의 허가를 받아 간행하지 말라는 스승의 유언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문인들은 이번 기회에 문집을 간행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일제의 허가를 위해 刻手에게 대신 허가를 받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그 결과 1922년 10월에 淸道에 소재한 成璣運의 서재인 德泉齋에 刊所를 설치하고 간역을 시작하였다.¹¹⁾ 이때 작성된 덕천재

있으며 뒤에는 金炯觀의 「良齋先生全集跋」(1984)이 있다.

7) 申景澈의 「良齋先生文集 解題」(『良齋田愚先生文集』, 충남대학교 도서관 1999.)

8) 梁基正의 「良齋集」(『한국문집총간 해제』 6, 민족문화추진회, 2005.)

9) 有疾(유영선, 「年譜」, 1946 ; 김택술, 「年譜」, 1975.)

10) ‘不意 初八日朝 先生衄血 幾乎二三升餘 至於氣盡 電報各處意...’(1920.11.15金龜洛 書), ‘師候初一日衄血暴流而旋止 三日復作而旋止 八日大作 三次 至四五椀 固至氣絕 數頃而蘇...’(1920.11.15 金鍾熙 書)

11) 梁基正의 「간재집」, 452쪽.(『한국문집총간 해제』 6, 민족문화추진회, 2005.) : 유영선가 문서,

의 통문 초본이 남아 있다.¹²⁾ 청도에 간소를 설치했던 것은 掌財 담당자와 판목과 각수의 조달 문제 등을 고려한 처사였지만 간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곧, 崔秉心이 간재를 대신하여 지은 「少尹崔公神道碑」로 인해 오진영과 최병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少尹은 조선시대 정4품 관직이며 실직 2품 이상이 아니므로 신도비를 만들 수 없고 이 글을 간재의 문집에 실을 수 없다는 오진영·유영선 측과 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며 소윤이라도 3품이라고 주장하는 최병심 측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목하였다.¹³⁾ 11월에는 金洛奎 등이 일제의 허가를 얻어 간행하는 것은 先師의 뜻이 아라고 하며 刻手가 대신 허가를 받아서 간행하는 것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이러한 일 등이 빌미가 되어 1923년 3월에 최병심은 김택술, 김낙규 등과 함께 익산 玄洞의 간재 묘소 아래에 따로 刊所를 설치하고 별도의 간행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문인들이 오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파와 최병심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파로 양분되어 반목하였고, 淸道나 玄洞 모두 간역을 진행하지 못하였다.¹⁴⁾

(2) 진주본(1926) 과 상해본(1929)

오진영은 최병심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이 玄洞으로 옮겨 감에 따라 淸道의 간소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1923년 10월에 청소의 간소를 철수하고 권순명, 유영선 등과 함께 上海에서 간행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계획 역시 1924년 1월경 日帝에 발각되어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행을 위한 모색을 했던 듯 보인다. 1924년 6월 무렵에는 南信夏가 奉天印刷局으로 편지를 받고 유영선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에 先師文集은 우리들이 힘을 써서 혹 성공하더라도 일이 크고 힘이 작다는 것, 그리고 南方의 士友들이 의견을 아직 모르니 거듭 생각해야 한다며 타이르고 있다.¹⁵⁾

다음해 2월에는 壯版을 알아보았던 權純命의 편지¹⁶⁾가 있으며, 이에 대해 윤4월 5일에는 南軫永이 南中 사우들이 스승의 대고를 謀刊하려는 會議가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의 편지¹⁷⁾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서로의 견제와 궁금함 속에 1925년에 진주본의 간행

「泣告同志諸公」發文, 1925

12) 도학 민멸되면 안 되, 간역 힘드니 함께 해주기를...(국편, '유영선 문중 문서_이정옥, 1922.10. 德泉齋 發文)

13) 『欽齋集』 권 14 雜著, 「吳震泳告玄洞會中諸公辨」, 「吳震泳徧質同門諸公書辨」, 「碑辨」

14) 이상 각주 13번 이후로 모두 梁基正의 「良齋集」(『한국문집총간 해제』 6, 민족문화추진회, 2005.), 452쪽 참조.

15) …奉天印刷局來札 則先師文集 吾輩用力 則或可成功 然事巨力綿 而南方士友意見 亦不可知也 申思之...(1924.06.04. 南信夏 간찰)

16) 지난번에 壯版을 담당했던 軍이 당신이 밖에 있는 바람에 어긋났는데 돌아왔는지요? 여제 저물어서 돌아와 講里의 편지를 보니 형과 商確하지 못하여 돌아볼 곳이 많다고 하는데 피곤이 갑자기 심해지고 겨를이 없어 ...장관이 당신의 생각으로는 어떠한지요. 價文은 의심하지 말고 출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1925.02.20. 권순명 간찰)

시작을 알리는 통문이 작성되었다.

1925년 9월 초에 良齋先生私稿印所의 이름으로 통문이 발행되었다. 발의자는 趙弘淳, 南軫永 등 48명이다. 내용을 보면 과거 淸道에서 掌財를 맡았던 金楨鎬가 印出을 전담하고 하는 뜻으로 罪討 당함을 참고 다시하고자 하며, 강릉 金潤卿이 함께 힘써 印所를 설치하고 師稿를 인쇄하고 있으니 성공하도록 돕자는 내용이다. 이때 함께 발행한 「印稿節目」에는 문집을 약 1千帙 인출할 예정이며, 掌財는 金楨鎬이니 의연금을 그 쪽으로 보내달라는 것, 인쇄소는 慶南 晉州郡 大安洞 晉陽印刷所이며 인쇄 시작일자는 1925년 10월 21일부터 약 5개월간이라고 하였다.¹⁸⁾

반면 이때까지 현동 묘재 측에서는 師稿의 간행에 착수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이 통문을 보고 이것은 斯文의 大事이니 同門 大衆과 함께 결정하고자 하며, 진주 인소 측 통문 내용의 몇 구절과 현재 문집간행상의 許多曲折 부분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문인에게 큰 관건이 되는 일이라며 10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연달아 회의를 열 것이니 모두 현동 묘재로 모여 달라고 9월 19일에 통문을 발행하였다.

그 후로 진주인쇄소는 權純命, 吳震泳 등이 주축이 되어 문집을 발간하고 柳永善, 南軫永 등에게 끊임없는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 2월에는 崔仲敏, 金鍾熙, 權純命, 柳永善 등 12인이 통문을 내어 간행과 간질을 위한 의연금을 더 걷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 내용에 印刊이 반 이상 완료되었고, 이제 粧績까지 시작하였으며 3월 말까지 먼저 半帙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간인 작업이 반정도 진해되었음을 공표하였다.¹⁹⁾

그리고 7월 3일에는 권순명이 유영선에게 편지하여 監印과 正誤 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형이 빨리 오셔서 살피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상대방 측도 형이 왕림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자신측을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²⁰⁾ 그리고 7월 22일에는 다시 권순명이 유영선에게 속히 방문해 줄 것을 재촉하였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石丈이 主力이 되는 것은 門内の 異言이 갈수록 성해지게 되는 단서가 되고 이는 先師의 뜻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²¹⁾

17) 편지 추기에 石靜이 화해했다가 다시 壞되었다는데 정말인지, 大稿를 南中 士友가혹시 謀刊하려는 會가 있었는지, 과연 걱정 없는 것인지 등을 물음. (1925.윤4.05. 남진영 간찰)

18) 이제 하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자. <印稿節目>약 1천질을 인출할 예정, 장재는 金楨鎬, 인쇄소는 경남 진주읍 大安洞 晉陽印刷所, 인쇄 開印日 1925년 10월 21일부터 5개월간. (1925 良齋先生私稿印所 發文: 趙弘淳·南軫永 등 64인)

19) 印已過半, 始役粧績 而限三月晦 先頒半帙矣. 간행과 반질을 위해 의연금 더 내주세요. (1926.02.09 崔仲敏, 金鍾熙, 權純命, 柳永善 등 12인 發文)

20) 監印, 正誤가 난처하다. 형이 모름지기 携物하여 疾驅해주기를 千萬바란다. …彼邊은 반드시 형이 오기를 기다려서 議爛한 후에 속히 나아갈 생각이 있을 테니…(1926.07.03. 권순명 간찰)

21) 다만 일이 진전될수록 책임이 더 커지고, 비용이 더 과다해지니…형께서 빨리 방문해주기를 청함. 석장의 힘이 주로 되는 것은 문내의 異言이 갈수록 성해지니 이는 先師의 뜻이 아니다. (1926.07.22. 권순명 간찰)

한편 오진영은 8월 17일에 자신이 靜涵 南軫永과 여러 차례 稿事의 일로 왕복하며 많은 상의를 이루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며 현재 刊印 상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新都에서 旂印을 방해할 생각으로 자신을 밤낮으로 모함하고 있다며 슬퍼했다. 그리고 현재 畿甸에서 편지 받기로는 자신의 죄를 열거하고 난적으로 논단하고 나와 다른 이를 묶어 적으로 말한다며 이를 한탄하였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朴昌玉·申命彦이 合力으로 債錢을 만들어 印所에 1數를 보냈다고 하였다.²²⁾

그리고 동일자로 작성된 別紙에는 壯版紙가 지체되어 독촉 받는 가운데 상대의 족장께서 손수 50張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물건의 품질이 좋았다며 그 종이보다는 못하더라도 대략 괜찮은 품질로 만들고자 부탁하려고 한다며 그 정도를 생각하여 값을 출급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 있다.²³⁾

그리고 몇일 뒤인 8월 25일에는 柳永善이 所關 零條의 반액인 500원을 지급하였다.²⁴⁾

한편 金鍾熙는 8월 26일에 유영선에게 편지를 써서 旂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며 靜齋의 말을 들으니 일은 완료되었지만 爻象이 심하게 될 것이니 걱정이라며 형은 처음부터 監印에 불참하였으니 지금 가지 말라고 충고하였다.²⁵⁾

그리고 1926년 9월 4일에 권순명은 재차 진주 행차를 왜 이리 지체하는지 물었고, 毅叔은 지난달에 편지하여 서울에서 내려와서야 편집 발행됨을 알았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간인과정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을 의문스러워 했다.²⁶⁾

9월 16일에는 남진영이 유영선에게 편지하여 旂陽의 事變을 탄식스러워하며 刊所 諸公들의 무능함을 탄식하였다. 半帙된 大稿에 미진한 면이 많으니 正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가 진양에 가고자 하니 유영선도 印所에 와서 함께 상의하기를 청했다.²⁷⁾ 그리고 9월 18일에는 김종희가 진주에 행차하였을 유영선에게 편지하여 언제쯤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묻고 人소의 제반 곡절을 일일이 말해주기를 청하며 궁금해 하였다.²⁸⁾

22) [1926]. 08.17 오진영 간찰.

23) [1926]. 08.17 오진영 별지(105번, 十七日又白)

24) 1926.08.25. 柳永善 간찰

25) 旂印事 近復何如耶 此聞靜齋所言則 雖了役, 來頭又有爻象之漸深 可憂也. 老兄께서는 언제 旂行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老兄은 이미 監印에 불참하셨으니 지금 다시 참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1926. 08.26 김종희 간찰)

26) 1926.09.04. 권순명 간찰(이어서 진주 행차를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찌 이렇게 지체되었는지 묻고, 종이에 관한 일과 지난달 19일 의숙(毅叔)의 편지 내용에 서울에서 내려와 編輯 發行됨을 알았다고 했다. 제반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장차 낭패에 이를까 걱정이라고 하였다. 부디 편지를 읽으면 즉시 戒行하여 피차에 미안함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27) 旂陽事變은 탄식스럽고, 또 刊所 諸公의 不能은... 지난 10일에 大稿가 半帙되었기에 대략 읽어 보았더니 미진처가 있고, 합하여 살펴볼 곳이 있고, 正釐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간소 제공의 資屈 때문인지, 추가로 正誤字 하고자 한다. 진양에 가고자 하니 형도 모름지기 다른 일을 물리치고 印所에 이르러 함께 이일을 상의함이 어떠한가. (1926.09.16. 남진영 간찰)

28) 각건데, 진주 행을 출발했을 것인데, 언제 돌아오나요. 人소의 제반 곡절을 혹 일일이 말해

그런데 이때까지 유영선은 진주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자로 작성된 권순명의 간찰에 왜 빨리 진주로 오지 않는 것인지를 묻고 印事가 9월 말쯤 마쳐질 것이라고 말하며 서둘러 戒行하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²⁹⁾

그리고 10월 2일 즈음에는 유영선이 진주 간소에 도착하였다. 김종희는 유영선에게 보낸 편지에서 편지를 받고 당신의 진주 도착하심을 알았다며 師稿를 매만지고 있을 감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士友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누구누구가 찾아왔었는지 등등 일일이 말해주기를 청하였다.³⁰⁾

11월 1일에는 권순명이 편지하여 형께서 말씀하신 유고 중의 논의할 부분은 애당초 두 형(유영선, 남진영)이 함께 감인(監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언급 내용을 이미 대부분 수정했고, 頒帙하는 일은 인쇄소와 講里도 함께 걱정중에 있다며 또렷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였다. ³¹⁾

12월 3일에는 掌財로 참여한 김정호가 유영선에게 편지하여 頒帙에 대한 영성함을 언급하며 양해해 주기를 청하였다. 말씀하신대로 받들려해도 자신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벗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문집은 소포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³²⁾

12월 11일에는 권순명이 유영선에게 아쉬운 내용으로 편지했다. 新都와의 和議를 언급하며 형이 극력 주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앞으로의 진주 문집 頒布가 처음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잘 勘理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워하였다.³³⁾

1927년 2월 16일에는 권순명은 편지에서 分帙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번 편지에서 내가 講里의 답을 얻어 有司 1~2인을 派送하려고 한다고 말했었지 않느냐며, 이번엔 보

줄수 있으나요. 하고 궁금해 함. (1926.09.18. 김종희 간찰)

29) 형이 진주로 빨리 오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印事は 9월 晦에 마칠 듯합니다. 아직 등정하지 않았다면 物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戒行하시기를 바랍니다.(1926.09.19. 권순명 간찰)

30) 卽伏藉來書 謹審兄駕已入晉 竊惟與多士友 磨挲師稿 其悵涕之情 相應一倍深矣...非不動念 願以憂故尙疊 不能連轡於蠹藪之間 勢也奈何 那上事 或可一一聞之否...士友之留那上者 誰之望 因筆示之926.10.02. 김종희 간찰)

31) 지난번에 문수(文修)가 와서 한 말을 전했다. 또한 상대가 말한 유고 중의 논의할 부분은 당초에 두 형(유영선, 남진영)이 함께 감인(監印)하지 않아서인데 이미 대부분 수정했으며, 반질하는 일은 인쇄소뿐만 아니라 강리(講里)도 함께 걱정중인데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1926.11.01. 권순명 간찰)

32) 頒帙一事, 甚零星可悶, 盛諭謹悉 而敢不飛也奉呈, 但鄙於此事, 不敢任意自私, 則實難率爾矣. 第俟日後 與僉友商議 而謹當仰報, 俯諒千萬, 大稿向已小包郵呈, 幸無羔抵達否.(후략)(1926.12.03.金楨鎬 간찰)

33) 스승의 유고에 대한 일과 신도(新都)에 화의(和議)를 극력 주선하지 않은 상대에 대한 실망, 상대를 찾아갔을 때 이미 길을 떠난 일 등을 언급하고, 笥稿를 잘 반포하여 처음생각대로 신도의 방해에 파종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무슨 우리에게 보여줄 방편이 없는지요. 지난번에 진주에서 또한 생각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再通 후에는 ..형이 이미 출발해 버려서 또 일이 勘理를 기다리지 못하고 告歸하게 되었으니..(1926.12.11. 권순명 간찰)

게 된 新都의 통문을 보고 和說은 전혀 없이 오로지 分擔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며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和意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였다.³⁴⁾

이상이 유명선가에 남아있는 문서로 살펴본 당시 간인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진주본의 인간은 1925년 10월 21일부터 5개월간 진행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5개월이 되는 무렵인 1926년 3월 말즈음 인간의 50%를 완료하고 半帙을 先頒布 하였다. 7월 즈음 監印을 시작하였으며 9월 말에는 印刊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지체되어 10월 즈음 완료되었다. 인간이 끝날 무렵인 10월 초 즈음에 유명선은 진주 간소를 방문했기에, 監印에는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전인 9월 16일 즈음 半帙된 자료를 받아보고 印本의 문제를 확인한 남진영이 유명선에게 편지하여 함께 간소에 가서 상의해 보자고 했지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10월 이후가 되었고 이후 11월 1 일에는 권순명으로부터 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수정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11월 이후 반질에 대해 講里와 함께 적극적으로 궁리한 후 12월부터 다음해인 1927년 2월까지 반질을 하였다. 그리고 12월의 편지에서부터는 신도측과의 和意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재 문집 초간본인 진주본 『良齋私稿』는 新鉛活字本으로 원편 43권, 속편 16권 합 30책이다.

한편 1926년 인행된 진주본과는 별도로 1929년 7월에는 오진영이 시위에 저촉되어 원집과 속편에 수록하지 못했던 글을 4권 2책으로 편차하여 『秋潭別集』으로 이름 짓고, 南信夏를 上海에 보내 연할자로 간행하도록 한 뒤에, 몰래 국내로 반입하여 유포하였다.³⁵⁾

이상의 진주본은 1984년에 保景文化社에서 재영인하여 『良齋先生全集』으로 출간하였다. 이때에는 진주본에 「秋潭別集」, 「良齋禮說」, 「良齋尺牘」과 附錄(年譜, 家狀, 觀善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3) 신도본(1927)

신도본은 당시 논산군 두마면의 용동리에서 제작되었지만, 용동리가 남선리·부남리·석

34) 分帙은 지난번에 講里의 답을 얻어 장차 유사 1,2인을 派送하려한다고 말했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형이 周章하여 和事하는 일입니다. 講里의 일은 전 편지에 이미 말씀드렸으니 다시 말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얻은 新都에서 온 통문 2紙에는 和說의 이치가 아무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分擔을 의논했는데 분담도 과연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다시 和意가 歇后하게 되면 어찌하나요. 응당 壽衡으로부터 서통이 있을 것인데 어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臨會 전에는 主和할 수 없을 테니 후회가 이에 더욱 간절합니다. 그러나 어찌 ...文修는 지난 20일간에 과연 방문하셨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선 後稿를 기다려 후일을 이를 것을 일삼는다 하였어요 伯敬 兄의 半帙은 완료되지 않았는데 형이 무슨 이유로 편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27.02.16. 권순명 간찰)

35) 梁基正, 「간재집」, 『한국문집총간 해제』 6, 2005년, 453쪽.

계리와 함께 鷄龍山의 新都內(조선 태조가 건국시 새수도를 만들기 위해 조성하다가 멈춘 곳)에 해당하기에 유영선가에 남은 당시 자료에는 모두 新都로 지칭하고 있다. 1975년에 김택술이 찬한 「良齋年譜」에 龍洞本으로 언급하면서 이후 해제자들이 신도에서의 판본을 용동본으로 불렀지만 이 글은 현곡 유영선가를 주 자료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신도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³⁶⁾

처음 설치되었던 刊所인 淸道에서 오진영 측과 의견을 달리하여 현동의 묘재로 작업소를 옮긴 최병심, 김택술, 김낙규 등은 일제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문집을 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간행의 방법을 포기하고, 우선 1922년까지 정리된 稿本을 필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것을 1923년 10월 이후부터 1924년 7월에 필사를 완료했는데, 전고 13책(전편 20권, 전후속 6권), 후고 12책(후편 24권), 재후고 3책(재후편 6권), 별고 1책(별편 2권) 합29책이다(24행30자). 제목은 「간재사고」이다. 이 가운데 別稿는 排日에 관련된 글만을 별도로 모은 것이다.³⁷⁾ 그런데 스승의 유훈에 따라 일제치하에서 문집간행을 하지 않을 것인데 매일 관련 글만을 따로 모아 편간한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혹 간행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편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화도수정본이다.

이러한 일이 완료된 이후 현동 사람들은 오진영 측의 진주본 간행소식을 듣게 된다. 1925년 9월 19일에 김낙규 등이 [玄洞墓齋之印]을 찍어 輪告文을 발행하였다. 이 통문의 발행 이유는 진주의 별도 간행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라 師稿의 간인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기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문 뒤에 기록된 발의자 이름에 스승의 유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金洛奎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門人 大衆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니 10월 15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連를 열 생각이니 익산의 현동 묘재로 왕림해 주기를 청하였다.³⁸⁾

그리고 논의 끝에 11월 7일에는 익산의 현동묘재 이름으로 다시 김희진 등 119인이 석농 오진영을 討罪하기에 이른다. 이때에는 석농 오진영이 認刊에 급급하여 선사께서 간인할 뜻이 있었으며, 홀로 자기에게 文稿를 알아서 하라고 명하셨다는 것, 또 일찍이 하셨던 遺教는 필요 없다고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는 선사의 遺書를 욕보이는 행위라며 그와 함께한 趙弘淳 등도 그들의 黨이라며 죄를 성토했다.³⁹⁾ 또한 오진영이 마음

36) 註 3) 참조.

37) 梁基正, 「良齋集」, 『한국문집총간 해제』 6, 2005년, 453쪽 : 김택술, 『良齋年譜』, 1975.

38) 1925.09.19 김낙규 등 輪告

39) 不幸有震泳者 急於認刊 援師誣 證曰 先師曾有認意, 又曰 先師獨命文稿量爲, 又曰 先師嘗教不必 涇拘 使先師受人疑 及見遺書 猶不悔服 反憾公討 所發認本 未售以至有告訴之變矣 今又使趙弘淳等 再犯遺訓 肆然認印 使先師道義割地埋沒 彼其怙終無憚之惡 固不勝誅 而弘淳等棄訓附震 以實認誣之罪 又可容乎 先師遺書又曰 去取無準 以之了事者 事親不孝 事師不義 又曰 定本無得 妄添一篇 若拘於顏私 復行通變 是忍死其父師 而欺其朽骨無知 噫 彼震泳 恣意改竄 拘私添入 時義文句一一刪出 毀前後之稿 亂手定之本 其忍死師之心 胡寧至此 而弘淳等之聽用亂本而了事者 亦可曰 有師乎哉 誣證者誣師也 倍訓者倍師也 一之大罪 況再之三之者 詎不爲師門之亂賊 人人共討者乎 凡承震持喉奔走先後者 詎不爲亂賊之黨先治者乎 與同門之助金贊成

대로 改竄(마음대로 글자나 구절을 고침)하고 사적인 것에 구애되면 침입하고, 時義 문구를 하나하나 삭제했으니 그 前後의 원고를 훼손하고, 修定하신 원본을 흐트러 뜨렸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變亂시킨 원고본을 인정하지 말고 유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선도하였다.

스승의 유훈을 지키자는 결의는 간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이들 중의 일부는 곧 간인에 착수한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11월 26일에 李仁矩가 발급한 敬告文에는 자신이 先生의 嗣孫 田鎰孝와 함께 繼述, 散稿를 수집하기로 하였으니 양해바라며, 전일효 집으로 왕림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⁴⁰⁾

그리고 같은 날 전일효는 간찰의 형식으로 경고문을 돌렸다. 자신이 祖考의 유집 간행과 관련하여 많은 말이 있어 슬프지만 이인구 형과 새기기를 공모했고, 이제 착공을 했으니 함께 해 달라는 내용이다.⁴¹⁾ 이상의 두 통고문은 모두 목판으로 새겼다. 특히 이인구의 경고문은 목판의 匡郭 옆에 ‘冊樣倣此 而字數而什爲之’라고 하여 목판을 새길 때 이와 같이 만들 것이라는 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신도본은 이러한 모양 그대로 10行20字의 형태로 판각되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2월 26일에 전일효는 다시 목판에 판각하여 간찰을 돌렸다. 내용은 이미 友 李仁矩와 판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前後稿에 여러 갈래가 있길래 仲父에게 물어 늘어 만들어내신대로 의논하기에 平日修定本으로 1책을 판각 완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난상토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1월 20일에 왕림하여 함께 의논하자고 덧붙였다.⁴²⁾

다음해인 1926년 1월 20일에는 李相珪 등 27인이 [良齋先生文集刊所印]을 찍어 敬告를 발행하였다. 내용은 이인구가 가산을 기울여 판각의 役을 시작한 것이 수개월이니 돕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함께 작성된 「刊所立議」에는 先師修定本을 저본으로 할 것이며, 刊板은 보관해서 영구히 보존할 것이고, 刊所主人 이인구에게 자금을 납입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刊所는 논산군 두마면 용동리 이인구의 講舍라고 알렸다.⁴³⁾

그리고 그해 12월 28일에는 南軫永이 유영선에게 편지를 썼다. 대고의 제반을 崔 又와 의논하여 확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大稿는 진주간소의 것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

者 及不能自?而倡 不必討者 安得不并爲其黨與也 伏願 兪君子齊討誣倍之罪 收洗變亂之本 恪遵遺書謹守定本 毋同歸於違末命欺朽骨之罪 幸甚(1925.11.07 敬告 同門諸公)

40) 先生의 嗣孫 田鎰孝와 함께 繼述, 散稿를 蒐하기로 함. 양해 바람. 선생 사손택으로 俯臨 바람.(1925.11.26 이인구 敬告文)

41) …百六之運謂, 待有爲之時, 似若不然, 且以遺書言之, 在我祖考處義堂堂然也, 在於子孫門人處地, 以圖壽傳, 亦今日莫能已之急務, 素以今與李兄仁矩 共謀開彫, 方在着工,…(1925.11.26. 田鎰孝 간찰)

42) 1925.12.26. 田鎰孝 간찰(木板)

43) 이인구가 傾其產 以始刊板之役 已數月矣 좀 돕자. 刊所立議: 선사수정본으로 할 것임. 간판은 보관해서 영구히 보존할 것임. 간소주인 이인구에게 자금을 납입할 것, 간소는 논산군 두마면 용동리 이인구 講社임.(1926.01.20 李相珪 등 敬告)

고 (新)都人에게 전해 들으니 유영선을 監正으로 기록했는데 이상하다며 이것은 필시 저쪽에서 스스로 한 일이지 형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이 이 일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⁴⁴⁾

다음해인 1927년 2월 20일에는 金鍾熙가 유영선에게 편지를 썼다. 新都의 通文에 형과 나의 이름이 冒入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무슨 해괴한 일이나며 형이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⁴⁵⁾ 그리고 5일뒤에 김종희는 다시금 유영선에게 편지를 써서 형과 내가 監正으로 되어 있어 괴이하다며 웃기다는 표현을 하였다. 김종희는 稿事는 한번 간인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再認이 어찌 할 일이나며 이미 인행된 원고를 누구라도 읽을 겨를이 업이 재간을 하면 어찌 하느냐며 반박하였다.⁴⁶⁾

이상이 유영선 가에 남아있는 문서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도에서 현동으로 작업소를 옮긴 최병심, 이인구, 김낙규 등의 현동묘재파는 처음에 1923년 10월부터 1924년 7월까지 스승의 원고를 필사로 베끼는 작업을 하였고 그것이 끝난 이후 1925년 9월 무렵 진주에 간소가 차려지고 '간재사고'의 활자 印役이 시작되는 것에 분개하여 그것의 주축이 되는 오진영 등을 토죄하는 통문을 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그 중 일부의 사람들이 간재의 손녀사위 전일효를 주축으로 하여 1925년 11월 26일 즈음부터 전일효의 집인 논산군 두마면 용동리 講舍에 '간재선생문집간소'를 차리고 그의 가산을 기울여 목판각을 시작했다는 것, 12월 26일 즈음에는 1책의 판각이 완료되었으며, 그 후로 끊임없이 유영선 측에 참여를 바라는 통문을 보내다는 것, 판각시작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26년 12월 말 무렵에는 판각과정상에 監印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1927년 2월까지 계속된 것, 그 당시 유영선과 김종희는 그들도 모르는 상황에 監印으로 지목되어 통문에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던 것 등이다.

처음 진주본의 간행을 성토했던 이들이 이인구와 전일효를 중심으로 문집의 간행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우선 1925년 11월 26일 전일효의 간찰에는 '목판간행을 도모하는 것은 또한 오늘날 그만둘 수 없는 급무'(以圖壽傳, 亦今日莫能已之急務) 라고 표현한 것 이외에는 다른 표현을 얻지 못했다. 아무리 일제의 허가 하에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도록 한 스승의 유훈이 있었다라도 그들에게는 의리가 뒤틀린 스승의 글자를 새겨 후대에 전하는 것이 급선무의 일이었고, 문도가 매우 많았던 상황에서 밀폐되어서는 안되는 자료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리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도본이 배부는 매우

44) 大稿의 諸般을 崔又와 商確했다. 崔亨夫가 新都에 여러달 머물고 돌아갔다더라 머리맡은 사람이 본향에 왕복한다....傳聞, 都人 以大銜 稱以監正 播示遠邇 此必是渠輩之所自爲 非出兄意也 兄亦嘗聞之耶(1926.12.28 南軫永 간찰)

45)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이 있음. 新都의 通文에 兄銜과 鄙名이 冒入되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나. 형은 옥 전에 이미 알고 있었나 원컨대 답해주세요.(1927.02.20. 金鍾熙→유영선)

46) 都通을 보니 형과 내가 監正으로 되어 있어 괴이하다. 사문 金教俊이 빨리 부임하라고 하던데 웃긴다. 대개 稿事는 一認이 수취스런 일인데 再認이 어찌 할 일이나. 인행된 원고를 누구라도 읽을 겨를이 없이 再刊을 하면 어찌 할 일이나. 鄙則惟有誓志不動四字而已.(1927.02.25.金鍾熙 간찰)

적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 『간재선생문집』으로 신도본 재영인 당시에 작성된 申景澈의 해제에 의하면 초판본은 총 54권 54책으로 간행되어 수십질만 인출하였고 신청자에게 배포하였기에 지금은 전질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梁基正의 2005년 해제에는 그 배포본이 현재 남아있으나 각 소장처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행되어 있다고 밝혔다. 곧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배일에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채 간행되었다거나, 두본 간에도 삭제된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병천(이인구의 후손)소장본이 유일하게 완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글로 볼 때 신도본도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없기에 일제와 관련한 부분은 따로 편간하였고 이인구가 완결본을 가택에 숨겨 보관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두 본이 1925년 10월 16일 시작과 11월 26일 시작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진주본은 1926년 10월에 신도본은 1927년 2월 즈음에 역을 마치도록 비슷한 시기에 완간이 되었는데 어째서 두 파로 나뉘어서 문집을 간행했던 것일까. 다음장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자.

3. 갈등의 전말

(1) 신도 측 입장

오진영이 문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러 문인들과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기록들을 볼 때 그가 스승의 측근에서 모셨으며, 많은 일을 대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그에게 認誣의 오명이 씌워지고 토죄를 이유로 비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진주본의 간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1925년 초 무렵이었다.⁴⁷⁾

우선 1925년 2월일자로 金賢述과 林鍾元이 발급한 「輪告同志文」에는 오진영의 ‘認誣(간인에 관한 무고)’에 대해 약 16가지 조항을 가지고 비판하였다.⁴⁸⁾ 이때에는 신연활자로 조판하여 통문을 만들었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뿌려 졌을 것으로 보이며 유명선가에서도 이를 받아 두었다.

조항은 16개에 달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① 스승이 간인의 의사를 밝혔고, 간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위임했다는 오진영의 설에 대한 반론, ② 認許를 業者인 刻手를 통해 받게 하면 일제의 허가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니 무관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 ③ 그리고

47) 이 시기는 문서를 통해서 본 시기이고 이미 그 전인 1923년부터 최병심과 오진영 측은 각각의 사연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48) 好辯의 혐의를 피하지 않고 그 중의 한 두가지를 거론한다.(1925.02.김현술·임종원의 윤고동지문)

기타 문제에 대한 반론과 ④ 다른 문인들과의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건에 대해 살펴보자. 오진영이 혼자서 스승의 별지를 받았다는 말에 대하여 그 별지가 靜丈(靜齋 李)은 ‘認刊을 하지 말라(勿認)’를 뜻한다고 하였고, 오진영은 반드시 이 일을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또 “先師께서 금년 봄 3월에 홀로 杏下 竹床에 앉아 오래 계실적에 진영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文稿는 50년 후로 期限하여 印行하는 것이 진실로 좋겠다. 그대들이 늙어 이를 텐데, 모두 가버리면 다시 관리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세상을 또 알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⁴⁹⁾고 한 이 53자를 해석함에 진영은 認刊의 遲速을 말씀하신 것이지 간인의 與否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자 이것을 비난하였다. 스승의 유훈은 분명 일제의 허가를 받아 간행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진영은 이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말씀 아래에 ‘五粹’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영이 스승이 말했다는 五粹는 스승이 한 말이 아니라 진영이 꾸며낸 말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오진영의 간인에 대한 의지는 1911년(신해)과 1920년(경신)에 스승이 남긴 遺訓과 서로 상치된다고 하였다.⁵⁰⁾

둘째로 인허를 받음에 업자가 인허를 받는 것은 저자와 상관없다는 설에 대해 비판하였다. 일제로부터 인허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을 기본 뜻으로 한다면 스승의 원고를 그 문인이 허가 받든, 그 업자가 받든 일제의 허가를 받아 욕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견도 평소의 스승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인데 오진영이 수단을 가리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하였다.⁵¹⁾

셋째로 반론을 위한 기타 문제인 ‘五粹’와 ‘여종이 돌에 글씨 연습을 했다는 것’, 뒷일을 運用하라고 했다는 것 등에 대해 반론을 적은 뒤 여러 문도들과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사교 차원에서의 오해와 전말 등에 대해 반론 혹은 변론하였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1924년 3월 13일 모현재에서 罷講 후 權純命과 愼軒 李起煥과 함께 同宿할 때에 權純命이 무시당했다는(枉被) 것에 대한 설명, 小祥時 오진영의 이름이 빠진 것에

49) 先師 今春三月 獨坐杏下竹床久之 命震泳曰 文稿 限五十年後 印行固好 而君輩老成者 去盡則更沒人管 世又不可知 須自料量爲之(유영선가 문서, 1925년2월 金賢述·林鍾元 發 「輪告同志文」)

50) 庚申難言之訓 ○知辛亥遺書之義 則可以知庚申遺書之義 若以庚申之訓 不如辛亥之明白 謂有別指 豈不枉了先師 噫 庚申之於辛亥 時變之極 尤何如也 朱子之於欽廟 一則不曰認言 再則曰不可問 胡不明白說破而含糊焉若是 噫 先師之難言 卽朱子之不認言 不可問也 關認是 先師大關 豈有掉過不言之理 故曰難言 的指勿認 若夫渠輩之謂有別指而 亦不的指 徒以親承之訓 斥以擅弄 詬以矯誣 則不承面命 不受遺書者 如震泳說 獨可取信耶 靜丈則謂之勿認 震則曰未知必謂此事 其徒則曰別有所指 是以難言爲認事 而以不敢爲諱認事也 孰爲變換師旨 孰爲矯誣師訓.

杏下說單論遲速未及認否 ○先師 今春三月 獨坐杏下竹床 久之 命震泳曰 文稿 限五十年後印行固好 而君輩老成者 去盡則更沒人管 世又不可知 須自料量爲之 此五十三字…

51) 業者自認 著者無關 云云 ○盖君子 仁恕及人 物我無間 今曰非的指當身大稿 然則他人之稿 可許之歟 他人之稿 可許則當身之稿不可爲歟 爲則俱爲 不爲則俱不爲 我則不爲 而許人爲之 是及人不恕也 及人不恕 非先師之道 吾所以謂先師 必無是言 而震也誣之也.

대한 설명⁵²⁾, 節要에 대한 반론, 蒼岩 丈에 대해 말한 것의 변론, 鬯菴.涵齋 丈에 대한 변론, 靜齋 丈 운운, 欽齋 운운, 後滄 丈 운운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2) 진주 측 입장

신도측의 오진영 비판은 곧 진주측에 대한 비판이 되었다. 오진영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집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신도에서 별도의 간행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로서 신도측 또한 스승의 유훈을 따르지 않은 셈이 되었다.

신도측의 오진영 비판에 대해 오진영 黨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 아무런 대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마침 유영선가 문서에도 신도측의 오진영 토죄에 대한 변론의 글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곧 「泣告同志諸公」이다.

「읍고동지제공」은 글자가 적힌 면이 총 19면으로 이루어진 謄寫本으로 假綴로 묶여 있다. 실제로 發文하여 同志 諸公에게 유포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글의 시작이 ‘다음은 玄洞人이 石農 吳震泳을 誣告한 것을 변론하는 일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어 당시 작성되고 배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진영 토죄의 글 중 오해의 부분을 변론하는 부분과 오히려 그를 무고하는 현동측에 잘못을 돌리는 부분으로 약 11.5쪽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뒤는 무고 중에 작성되었던 몇 통의 문인들 편지에 대하여 답변의 형식으로 변론한 부분이다.

우선 앞부분을 살펴보겠다. 우선 代認이란 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처음 刊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에 成璣運.金鍾熙.南軫永.權純命.柳永善 등 諸人이 田華九(간재의 아들)와 함께 원고를 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 동의하였고, 전화구가 이에 대한 異論이 있다면 자신이 막아줄 것이니 어서 諸人을 주선하여 간행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 그래서 석농이 중국으로 越境을 하여 간행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머뭇거리자 代認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代認에 대해 모두 의견이 일치하였기에 淸道에 印行을 위한 간소를 차린 것인데 이제와서 석농에게 모든 죄를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다.

당시 의논시에 전화구 및 현동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에 淸道로 간소가 결정되었다는 점, 代認은 어쩔 수 없는 방도였지만 당시에 현동 사람들도 찬성했다는 점, 전화구가 스승의 유훈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감춘 점 등을 열거하고 중간에 의견이 갈리었다고 해서 이처럼 동문 벗을 모함하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전화구와 최병심이 碑路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찌 처음에는 의논을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달리했는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52) 소상시에 실제 望冥者가 6~7인이었는데 뒤에 5~60명을 望冥錄에 冒入했기에 이를 삭제했을 뿐이라고 변론하였다.

이 글은 오진영을 변론하면서 나름 격분하였기에 감정적인 언사의 부분도 많다. 가령 ‘오늘날 스승의 辨誣를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벗을 모함하여 죄로 얽고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가’, ‘석농을 무함한 59인 중에 사부의 稿事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 우는 자가 있는지 석농은 스승의 말 한마디 잃지 않고 한가지 일도 착오없이 했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의 당이다’, ‘玄人은 하늘이 없는 것인가’, ‘玄人은 나만 있지 남은 안중에 없다’ 등등의 구절이 확인된다. 이러한 언사들은 마치 이 글이 玄人측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했다기 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거나 중간 입장에서 서 있는 문인들에게 자신 측의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글처럼 보인다.

그 뒤에 이들이 화의했는지는 아직 더 밝히지 못했다. 다만 신도측과는 달리 진주측에서 화의를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들이 몇 통 남아있다.

앞에서 언급한 1926년 11월 1일의 권순명 간찰, 12월 11일의 권순명 간찰, 1927년 2월 16일 권순명 간찰 등이 그것이다. 이는 진주본의 간행이 완료되고 배포가 되는 시점이며 내용은 신도측과 화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유영선이 힘써 주기를 원하는 것, 신도의 통문을 보니 화의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해방 후에 재영인하는 패턴을 보면 여전히 화해가 되지 않은 듯하다. 진주본의 것을 1984년에 보경문화사에서 재영인을 하면서 그 발문에 진주본의 것이 가장 순수하기에 새로 영인한다고 하였으며, 1999년에 충남대에서 편간한 「간재선생문집」의 해제에 이것이 간재의 가장 많은 글을 수록하고 있다고 하고 진주본의 것을 약 5줄로 요약하게 다루면서 ‘일본관련의 내용을 빼어 버리고 일본 총독부의 허가를 받다 간행한 것이다’라고 쓴 반면 신도본을 용동본으로 소개하면서 그 내용에 ‘龍洞本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본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1924년에 발행한 晉州本이 잘못되었다 하여 간재집 전부를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라고 해제함으로써 마치 반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총독부의 허가는 진주본이나 신도본이나 모두 받았으며, 또한 진주본의 경우 일제관련 내용을 빼 두었다가 상해에서 『추담별집』을 추가로 간인해 왔기에 두 종류를 합하면 간재의 글을 뺀 것이 거의 없고, 신도본 또한 일제 관련 글을 별도로 빼어 편제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시의 반목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지학 적인 측면에서 각 문고본의 양과 편제, 내용 등을 다룬 연구성과가 시급하다 하겠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간재 유고의 간행사항의 자세한 면모를 간재 전우의 제자인 현곡 유영선가에 남아 있던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22년 7월 4일 간재의 초상시로부터 논의되었던 간재문집의 간행은 처음에는 동문

들의합의로 1922년 10월 淸道에 간소를 설치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崔秉心이 스승대신 지었다는 「少尹崔公神道碑」의 글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스승의 문집에 실을 수 없다는 오진영과 그것을 후창한 유영선의 발의 등으로 최병심과 오진영 측에 틈이 생겨났다. 두 측은 각각의 입장을 변론했지만 전혀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색이 굳어졌다. 청도의 간소는 유지될 수 없었고 이어 金洛奎 등이 스승의 유언에 따라 일제 치하에서의 간행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최병심, 김낙규, 김택술 등은 스승의 묘소인 익산의 현동 묘재로 자리를 옮겨 스승이 남긴 수정본을 필사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1924년에 완성하였다.(華島修定本)

그와는 별도로 印刊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田華九, 吳震泳 등은 계속해서 문집의 간행 방안을 연구했고, 오진영 측은 여러 차례 간행을 모색하다가 1925년 10월 자신을 지지하는 유영선, 남진영, 권순명, 김정호 등의 문인들과 함께 진주에서 간행을 시작하였다. 오진영은 스승이 생전에 남긴 수고본과 그 후의 종합본인 청도에서의 저본을 가지고 체제는 유지하되, 일부를 편삭하였으며, 일제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모아 차후 간행을 목표로 하고 일제의 허가를 받아 문집을 1926년 11월 즈음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차후로 빼 두었던 일제관련 글들은 1929년에 상해에서 『추담별집』으로 간행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 두 본은 모두 新鉛活字本이다.

이에 진주본이 스승의 유지를 저버리고 일제와 타협하였으며, 일제관련 원고를 빼고 간행했다는 것, 스승의 기존원고에 편삭을 가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간재의 손자인 전일효와 손녀사위인 이인구 등이 논산 신도안 내 용동리의 이인구 講舍에서 별도로 문집을 간행하였다. 이들은 연할자로 인쇄하는 진주와는 달리 스승의 유고를 길이 전하겠다는 뜻으로 목판으로 간행하였고, 일제와 관련한 내용을 합하여 모두 간행하였다. 그러나 신도본 역시 스승의 手定本과는 동일하지 않고 편집을 가하였으며, 일제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감독하였기에 유포를 최대한 자제하여 신청을 받아 아주 적은 부수만을 인출하였으며, 일제와 관련한 내용까지의 완질본은 이인구 집에서만 감추어 대대로 소장해 왔다.

오진영은 처음부터 문집 印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가운데, 스승이 일제의 허락하에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고 했던 유훈과는 달리 자신에게 문집 간행에 대한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의 원고 간행에 대해 일종의 위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獨對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기에 이를 믿지 않고 스승의 유훈을 믿은 김택술, 김낙규, 최병심 등은 오진영을 비판했고, 이런 반목의 가운데에서 진주본은 그들에게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진주본은 간행 이후에도 신도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로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대의 상황이 종료되었다.

해방 이후에 김택술은 스승의 유지에 따라 일제 허가 하의 미간행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1975년 그의 아들 김형관이 익산 현동에서 베껴 두었던 華島修定本을 영인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 『전우전집』으로 증보영인하였다. 진주본은 1984년에 보경문화사에서,

신도본은 1999년에 충남대학교에서 재영인을, 그리고 2004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교정 영인하였다.

유영선가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진주본과 신도본의 간행 진행 사항이었고, 신도측의 끊임없는 오진영과 그를 주축으로 한 진주본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오진영측의 변론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문집 간행 상황을 가지고 간재문인의 영남파와 호남파의 대립이라든지, 분열 등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스승의 공개된 유훈을 믿은 편, 스승의 비공개 말씀을 믿은 편으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반목은 앞으로 각 본의 서지적 연구를 통해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_검색어: 유영선
田愚 著, 韓國學文獻研究會 編, 『田愚全集』 1~8,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田愚, 『良齋先生文集』 上·下, 보경문화사, 1984.
田愚, 『良齋田愚先生文集』 1~5, 충남대학교 도서관, 1999.
田愚, 『韓國文集叢刊』 332~336, 민족문화추진회, 2004.
崔秉心, 『欽齋集』, 여강문화사, 1988.
- 柳正基, 「良齋私稿 解題」, 『良齋私稿』, 서울 光城文化社, 1975.
梁基正, 「良齋集」, 『한국문집총간 해제』 6, 민족문화추진회, 2005년.
申景澈, 「良齋先生文集 解題」, 『良齋先生文集』, 충남대학교 도서관 1999.
- 박학래, 「良齋 田愚와 良齋學派 연구 현황 및 과제」, 『공자학』 30, 한국공자학회, 2016.
서종태, 「良齋 田愚의 전라도 문인집단 형성-『觀善錄』의 전라도 문인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78, 朝鮮時代史學會, 2016.09.
유지웅, 「良齋의 心論 明德說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영호, 「心山과 良齋 門人들의 出處是非論爭을 통해 본 일제하 유교지식인의 초상」, 『大東漢文學』 42, 대동한문학회, 2015.03.
李鍾綠, 「田愚의 西學認識과 斥邪論-「自西徂東辨」과 「梁集諸說辨」을 중심으로」,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2016.
洪宗欽, 「俛宇와 良齋의 時局對處比較-舊韓末 전후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士林들의 시국관 대비 사례-」, 『中岳志』 第9號, 嶺南文化同友會, 1999.

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의 경제생활

제 2 부

사회: 심영환 한국학중앙연구원

- 근대 전환기 해남의 明禮宮 宮房田 收稅 과정
-정우형 수신간찰을 중심으로- -권수용
- 한말 ~ 일제 초 영광 연안김씨가의 토지거래와
소유권 확보 -허원영
-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 이현주

근대 전환기 해남의 明禮宮
宮房田 收稅 과정
-정우형 수신간찰을 중심으로-

궐 권수용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근대 전환기 해남의 明禮宮 宮房田 收稅 과정

-정우형 수신간찰을 중심으로-

권수용((재)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1. 머리말
2. 명례궁 관련 인물
3. 명례궁 수세 내용
4. 해남의 궁방전과 명례궁 도장
5. 맺음말

1. 머리말

해남의 향리 정우형(鄭愚衡)가에서 나온 고문서는 2000건이 넘는데, 대부분이 간찰이고, 그중에는 특이하게 서울에서 보내온 것과 섬에서 보내온 것이 많다. 특히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고, 그중 궁방전과 관련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궁방은 명례궁(明禮宮)을 말한다.

궁방전(宮房田)¹⁾이란 궁장토(宮庄土)라고도 하는데, 조선후기에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궁방은 왕실 일족의 생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였는데, 내수사(內需司)와 명례궁(明禮宮)·어의궁(於義宮)·수진궁(壽進宮)·용동궁(龍洞宮)·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경우궁(景祐宮) 등이 영구존속궁이고, 이를 1사7궁(一司七宮)이라 부른다. 그중 뒤의 세 궁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 설립된 제궁이었다.

본고에서 살피는 명례궁은 경운궁의 별칭이라고 하지만, 궁방전을 보유한 4궁 중의 하나로서 본 것이다. 즉 국왕 거처로서의 경운궁과 궁방전을 보유한 명례궁의 연혁과

1) 궁방전은 직전법 폐지로 임진난 이후 왕족에 대한 생계 대책이 어려워짐에 따라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궁방은 왕족의 생활 기반과 품위 유지를 위해 토지를 비롯한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을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기능이 같을 수 없다.²⁾ 그런데 원래 명례궁의 역할은 갑오개혁기 자료인 <결호화법세칙(結戶貨法稅則)>에 따르면 왕비의 속궁으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임진란 때 직전제(職田制)가 파괴되어 궁가의 생활이 곤란해졌을 때 궁방전의 절수(折受)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선조 33년(1600)이다.⁴⁾ 절수는 원래 무주지(無主地)·진황지(陳荒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는 양상을 띠자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재정의 곤란이 초래되었다. 이에 시행 100여년을 거치면서 많은 폐단을 낳았던 절수제를 1695년 ‘을해정식(乙亥定式)’을 통해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급가매득제(給價買得制)와 민결면세제(民結免稅制)를 마련하였다.⁵⁾ 민결면세지는 전세, 대동, 각양 잡비 등 국가에 내는 미 23두를 궁방이 대신 수취하지만 토지는 민전인 것이고, 급가매득지는 민전과 마찬가지로 병작반수를 시행할 수 있는 궁방의 소유지였다.⁶⁾

그리하여 1808년 『만기요람(萬機要覽)』⁷⁾ 「재용편」에 의하면, 유토면세는 11,380결, 무토면세는 26,547결로 궁방전의 합계가 37,927결에 달하였다. 그중 명례궁은 1,748결 36부 1속으로, 유토는 1,062결 46부 4속이고 무토는 685결 89부 7속이었으며, 호남은 유토가 464결 94부 7속이고, 무토가 181결 15부로, 총 646결 9부 7속이었다. 명례궁의 경우 궁방전의 3분의 1 이상이 호남에 소재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유토·무토라는 용어는 절수제 중심의 궁방전이 확대될 때는 쓰지 않았으며, 1753년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서 최초로 유토면세라는 말을 쓰고 있고, 무토라는 말도 그 이후에 나타났다.⁸⁾

1894년 8월에 궁방전은 역토(驛土)·둔토(屯土) 등과 함께 면세지(免稅地)에서 승총(陞摠)되어 민유지와 마찬가지로 지세(地稅)를 내게 되었고, 무토면세지의 수조권도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국유화되었다.⁹⁾ 그런데 1907년 당시 전체 궁방전 7,712결 중 명례궁 궁방전의 지역별 소유 규모는 전체 1,777결로, 23%를 차지한다. 이 중 전남이 917결을 차지하였다.¹⁰⁾

2) 신명호, <17세기 초반 명례궁의 연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258쪽.
 3)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학교경제학부 박사학위논문, 2008, 35쪽.
 4) 박광성, <궁방전의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5, 1970, 3쪽.
 5)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217쪽.
 6) 이영호, <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한국학연구』 24, 2011, 148쪽.
 7) 만기요람(萬機要覽) :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책으로,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저술했다. 「재용편(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8) 박준성, 위의 논문, 247쪽.
 9) 궁장토를 정리하기 위해 일제는 1907년 2월에 각궁사무정리소를 설치하고 내수사와 7개 궁방이 관장하는 궁장토를 직할장토와 도장관리장토로 구분하였는데, 1907년 6월에 도장을 폐지하면서 모두 직할장토로 만들었다. 이때 도장으로 하여금 각 궁방에서 내려준 도서문적, 부속문권, 양안, 추수기, 감관사음명부를 반납하도록 한 뒤 그 서류에 의거하여 도장의 성질을 결정하고 폐지처분의 절차를 밟았다.(이영호, 앞의 논문, 160쪽.)

해남에 소재한 명례궁 궁방전에 대한 기록으로는 1722년에 작성한 <전라도 해남현 명례궁 둔전답 개타량성책(全羅道海南縣明禮宮屯田畚改打量成冊)>(奎18241)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궁방전이 녹산면, 화이면, 은소면, 현산면, 화일면¹¹⁾에 소재해 있었고, 전답 총면적은 855결(結) 23부(負) 9속(束)이었다.¹²⁾ 이때는 유토·무토의 구별이 없었을 때로, 1808년 『만기요람』의 기록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궁방전이나 명례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서 지역별·시대별 추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일률적일 수 없는 수세 방법이나 시기, 수세액, 수세담당자 등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 그런데 정우형 수신간찰을 통해서 양안이나 추수기 등을 이용해서는 알 수 없었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수신자 정우형은 해남의 고급향리로, 오랫동안 호방이나 이방을 역임하면서 명례궁 수세와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우형의 수신간찰에 보면 봉투에 정우형의 직임을 호부(戶部)라고 지칭한 곳이 많은데, 이것은 바로 정우형이 오랫동안 수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우형의 집안이 해남의 향리 또는 무임집안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난 것은 할아버지 정원익(鄭源翼, 1782~?) 때부터로, 해남 군관을 맡았고, 아버지는 정찬무(鄭贊武, 1821~1877)로 1871년부터는 호장(戶長) 직을 맡았다.¹³⁾ 정우형은 1868년[22세]에 수통인(首通引)이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향리에 입문하고 1878년 무렵에는 육방을 역임하고 있었다. 1887년 11월에는 명례궁에서 산제각을 조성한 일로 첨지(僉知)에 가자되었고, 1890년 11월에는 명례궁에서 실시한 고흥 북어포의 간척 일로 동지(同知)에 가자(加資)되었다. 한편 1889년부터는 오위장(五衛將)으로도 불렸다.

서울에서 보내온 간찰은 대부분이 명례궁 소차지(小差知)와 궁차(宮差)가 보내온 것이고, 섬에서 보내온 것은 섬의 궁임(宮任)이나 두민(頭民), 풍헌(風憲), 마름[숨음] 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내온 것인데, 모두 200여 건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 200여 건의 간찰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기타 다른 자료를 참조하면서 해남의 궁방전 규모나 수세 방법 및 과정, 민의 대응 등을 밝힘으로써 근대전환기 해남 및 섬 사람의 생활상 및 사회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0) 조영준, <18세기 후반~20세기 초 궁방전의 규모, 분포 및 변동>, 『조선시대사학보』 44, 2008, 211쪽.

11) 해남의 이 5개면은 현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에 해당된다.

12) 조영준의 <18세기 후반~20세기 초 궁방전의 규모, 분포 및 변동>(205쪽)에 의하면, 해남의 궁방면세결 보유현황은 1787년에 541결, 1814년에 667결, 1824년에 667결, 1854년에 697결, 1874년에 499결, 1884년에 499결이다.

13) 권수용, <19세기 해남향리 정우형의 수신간찰 연구>, 『고문서연구』 51, 2017, 244쪽.

2. 명례궁 관련 인물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간찰은 명례궁 궁방전 수세와 관련한 내용으로, 향리 정우형과 명례궁의 소차지(小差知) 최학규(崔鶴圭)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정우형과 각 섬의 궁임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명례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차지[당상] 아래의 소차지였고, 현장에서의 담당자는 관아의 호방이었던 것이다.

(1) 명례궁 직원

명례궁 직원이라 함은 내부직원을 말한 것인데, 내부직원으로는 당상(차지), 소차지, 장무 등이 있다. 이중 소차지를 역임한 최학규가 보낸 간찰이 가장 많다. 그밖에 궁차가 보내온 것이 있는데, 궁차를 내부직원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표1. 명례궁 직원이 보내온 간찰건수

| | |
|--------------------|--------------------|
| 최학규(崔鶴圭): 1887년 6건 | 강경학(姜景學): 1887년 1건 |
| 1888년 9건 | 1888년 1건 |
| 1889년 14건 | 1889년 1건 |
| 1890년 10건 | 1890년 1건 |
| 1891년 14건 | 박노순(朴魯淳): 1889년 2건 |
| 1892년 15건 | 1890년 1건 |
| 1893년 14건 | 노상적(盧尙迪): 1891년 1건 |
| 1894년 5건 | 1892년 1건 |
| 1896년 2건 | 1893년 2건 |
| 1897년 2건 | 고수준(高秀峻): 1903년 1건 |
| 1903년 1건 | 1906년 1건 |
| 1906년 1건 | |

최학규(崔鶴圭, 1833~?)는 본관이 해주(海州)로, 간찰에서 최성고(崔聖皐)라는 이름을 쓴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최학규라는 이름은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1877년 3월 5일조에 첨지중추부사에 단부하였다는 내용, 1878년 10월 1일조에 오위장으로 삼았다는 내용, 1883년 12월 29일조에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는 내용, 1888년 3월 27일조에 광양현감으로 삼았다는 내용, 1892년 7월 10일조에 친군통위영 부영관(親軍統衛營副領官)에 단부하였다는 내용, 1893년 12월 25일조에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삼았다는 내용, 1894년 4월 27일조에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삼았다는 내용, 1895년 4월 7일에 회계원 출납사장(會計院出納司長) 4등에 임용하였다는 내용,

1895년 8월 13일조에 제용원물품사장에 임용, 동년 10월 23일조에 제용원전선사장에 임용하였다는 내용, 1902년 3월에 70세이상자로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가자한다는 내용 등이다.

최학규는 1870년부터 1895년까지 명례궁의 직원인 소차지를 지냈음을 『좌목(座目)』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⁴⁾ 위 편지가 왕래할 시기의 명례궁 당상은 황수연(黃壽延)¹⁵⁾으로, 1880년 10월에 도입하였으며, 홍택주(洪宅柱)가 1906년 윤4월에 도입하기 전까지 역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학규는 1870년 37세 때 소차지에 임명되었는데, 아마도 1906년까지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소차지를 역임하면서 1879년에는 해남에 있는 명례궁 도장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최학규는 정우형에게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고,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887년 윤4월 17일에 보낸 편지부터 1906년 1월 3일에 보내온 것까지 모두 93건이 남아 있다. 그는 정우형이 이방직을 원할 때 해남현감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였고, 정우형이 원하는 직을 얻도록 노력하였다.¹⁶⁾ 공세가 완납을 했을 때는 칭찬도 해주었으며, 늦어지고 있을 때는 질책도 했다.¹⁷⁾ 정우형이 도장권을 가지고 있는 독야지의

14)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 2008, 294~295쪽. 명례궁 『좌목(座目)』(奎 18541)에는 1843년부터 1895년 사이에 명례궁에서 당상[차지], 소차지, 장무의 직책에 있던 사람의 직책, 성명, 도입일, 자, 생년, 본관이 수록되어 있다. 당상의 경우에만 1906년까지 적혀 있다.

15) 황수연(黃壽延)은 『승정원일기』에는 황윤명(黃允明)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춘파유고(春坡遺稿)』를 남겼다. 환관이다.

16) <1889년 10월 22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의 “임과(任窠, 벼슬자리)의 일은 동헌(東軒)에게 편지로 고하였으나 아직 회답이 없어서 매우 답답할 일입니다.[第任窠事, 書告東軒, 而尙未聞下回, 甚爲悶菴者也.]”라는 내용, <1889년 11월 15일 편지>의 “오늘 동헌(東軒)의 서간을 보니, 임과(任窠, 자리)의 일은 과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第今見東軒書簡, 則任窠事, 果勿慮爲教矣.]”라는 내용, <1889년 11월 22일 편지>의 “임과(任窠)의 일은 그간의 분방(分房)에서 과연 참가하게 되었는지요? 전편에 동헌(東軒)이 보내온 편지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차출(差出)하겠다는 뜻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어서 이처럼 물어보는 것입니다.[第任窠事, 其間分房果爲參入耶? 前便東軒書中, 勿慮差出之意, 往復者, 則如是耳.]”라는 내용, <1889년 12월 5일 편지>의 “방임(房任)의 일은 그간에 참방(參房)했는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房任事, 其間參房耶? 示之也.]” <1889년 12월 14일 편지>에, “이번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건대 그 사이에 방임(房任)에 차정되었다고 하니, 제 가슴이 시원하게 툭 트입니다.[今見所示, 則間以得差房任云, 甚庸豁然者耳.]”라는 내용, <1890년 10월 10일 편지>의 “방임(房任)의 일은 그간에 과연 참여하게 되었는지요?[房任事, 間果得參耶?]”라는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17) <1894년 5월 9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보내오신 무목(買木) 50동(同)은 무사히 도착해서 매우 다행입니다. 그리고 난류(亂類)는 그간에 이미 다 잡아 죽였으니 민정(民情)은 저절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궁결미(宮結米)는 모름지기 즉시 독촉하여 수쇄한 후 빨리 무목(買木)해서 올려보내어 들여 쓰는 데 근색한 탄식이 없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所來買木五十同, 無事穩到, 萬幸, 而亂類, 間已勦盡, 則民情自可寢息矣. 宮結米, 須卽督刷, 斯速買木上送, 俾無入用窘踏之歎, 至企至企.]”라고 했고, <1894년 6월 18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결역대전(結役代錢)을 아직까지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진실로 들여보지 못한 일이니, 비록 소요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본읍에서 소란함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하나같이 여기에다 의탁해버리니, 뒤로 미루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요? 곧바로 속히 독쇄(督刷)하고 한 사람이라도 견제(愆滯)됨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第結役代錢之尙今未收, 誠所未聞, 雖云騷擾

세를 감해주라는 부탁을 해남현감과 이방에게 해주었으며, 1887년 8월에 정우형이 비금 도에서 수쇄(收刷)를 하면서 초대할 때는 그곳을 찾아가기도 했다.

최학규 이외에 서울 사람으로서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는 궁차(宮差)가 몇 명 있다. 명례궁 직원 중 장무(掌務)가 궁차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좌목(座目)』에 올라있는 인물과 간찰 속에 보이는 인물 중 겹치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 장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하인은 아니었는데, 여기에는 도장(導掌)¹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다. 해남의 섬에서는 이들을 궁감(宮監)으로도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1888년 6월 14일에 최학규가 첨지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 “강오위장(姜五衛將)에게로 보내온 물건은 인편이 있는 대로 곧바로 전할 계획입니다. 노윤성(盧允成)이 오래 머뭇거리기를 면한 것은 두 영감의 주선에 의한 것이니,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姜五衛將許所去之物, 隨便卽傳計耳. 盧允成之以免斗留, 兩令之周旋, 爲之多謝者也.]”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강오위장은 궁차 강경학(姜景學)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 <1903년 10월 17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는 “명궁(明宮, 명례궁)의 납둔세미대전(納屯稅米代錢)을 수납(收納)하는 일로 주부(主簿) 조재옥(趙載鉦)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곧 작년에 내려간 사람이니, 모름지기 동헌(東軒, 수령)에게 특별히 말해서 임인년(1902)의 가급조(加給條)와 금년조를 속히 준획(準劃)하여서 늘어지는 폐단이 없게 하시고, 기어이 마쳐서 올려 보내주시길 매우 바랄 뿐입니다.[第明宮納屯稅米代錢收納事, 趙主簿載鉦下往, 則此卽昨下去之人也. 幸須另誦于東軒, 壬寅加給條及今年條, 斯速準劃, 俾無遷就之弊, 期於必準上送, 爲希爲希.]”라는 내용이 있고, <1906년 1월 3일에 최학규가 오위장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는 “궁납(宮納)의 일은 주선하는 일을 반드시 다했을 것인데, 어찌 하여 고의관(高議官)이 해가 지나도록 어정거리고 있는지요?[宮納事, 仰想斡旋必盡, 而奈高議官之連歲逗留何?]”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고의관은 궁차 고수준(高秀峻)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몇 사람의 경우에는 직위가 나오고 있어서 이들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수세에 직접 관여하여 수쇄를 하기도 하고, 수세해 놓은 것을 상납하는 일만을 하기도 하였다.

所致, 初非起鬧於本邑, 而一委於此, 無乃遷然之計耶? 卽速督刷, 無使一任其愆滯, 似好耳.]”라고 했다.

18) 도장(導掌) : 조선 후기 궁방전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는 사무를 담당한 궁방의 청부인. 조선 후기 각사(各司)의 장토(庄土)는 궁방이 직접 그 직원을 파견하는 곳도 있었으나 청부인에게 그 수세 또는 운영권을 위임하는 곳도 있었다. 이것을 맡은 자가 곧 도장이다. 박성준은 민결면세지 도장과 유토면세지 도장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민결면세지 도장은 조세를 징수해 상납하면서 1결당 규정된 조세 내에서 자신의 몫으로 책정된 일정액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궁방에 상납해야 한다. 이에 반해 유토면세지 도장은 독자적으로 장토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매년 궁방에 상납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액만을 상납하고 나면 장토 경영을 통해 획득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자신의 몫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박성준, <17~18세기 궁방전에서 도장의 발생과 역할>, 『역사문화연구』 64, 2017, 67~68쪽.)

(2) 현지 직원

여기에서 현지 직원이라 함은 각 섬인 도초도, 비금도, 팔금도, 수지도, 기좌도 등지에서 국방전 수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궁임(宮任)이나 두민, 풍헌, 마름[畝音] 등을 말한다. 섬에서 정우형에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과 그 숫자는 다음과 같다.

표2. 섬에서 보내온 간찰건수

| 도초도(都草島) | 비금도(飛禽島) | 팔금도(八禽島) 등 |
|--------------------|-------------------|----------------------|
| 고광원(高光瑗): 1894년 1건 | | |
| 고제국(高濟國): 1889년 1건 | 김규묵(金奎默): 1893년 1 | |
| | 1892년 3건 | 김덕기(金德基): 1892년 1 |
| 고성권(高聖權): 1893년 1건 | 김두순(金斗淳): 1892년 1 | 팔금 김행언(金行彦): 1892년 1 |
| 김영주(金榮澍): 1892년 1건 | | 1893년 2 |
| 김재헌(金載憲): 1888년 4건 | | 팔금 박명진(朴明珍): 1894년 1 |
| | 1894년 1 | 팔금 이창규(李昌圭): 1893년 5 |
| | 1889년 11건 | 김두일(金斗日): 1888년 1 |
| | 1890년 6건 | 김문언(金文彦): 1887년 1 |
| | 1891년 1건 | 김유헌(金有憲): 1890년 1 |
| | 1892년 9건 | 노덕수(盧德受): 1894년 1 |
| | 1893년 9건 | 이한순(李瀚淳): 1890년 2 |
| | 1894년 1건 | 1892년 3 |
| 문효기(文孝基): 1893년 1건 | 정홍필(鄭弘弼): 1892년 1 | 수치 강영래(姜永萊): 1891년 1 |
| 이동섭(李東燮): 1889년 1건 | | 1892년 2 |
| | 1891년 1건 | 1893년 1 |
| | 1892년 2건 | 수치 손기옥(孫琪玉): 1896년 1 |
| 최진규(崔鎭圭): 1892년 2건 | 최만근(崔萬根): 1892년 1 | 기좌 정인교(鄭寅僑): 1894년 3 |
| | | 1899년 1 |
| | | 기좌 최한준(崔翰俊): 1888년 1 |
| | | 1889년 1 |

위 편지들의 작성연대를 보면 전체 96건 가운데 95건이 1888년부터 1894년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수지도 손기옥 만이 1896년에 보낸 것) 이것은 위의 여러 섬이 해남에 소속되어 있을 기간을 표현한다고 보아도 될 듯싶다. 이들이 보내온 간찰을 통해 당시 섬의 현황을 살필 수 있다.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도초도(都草島)의 김재헌(金載憲)이다. 1888년부터 1894년 사이에 보내온 편지로, 도초도가 해남에 이속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김재헌은 도초도의 국방전 담당 대표로 보이는데, 41건의 편지가 남아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김재헌은 궁임(宮任)이지만 풍헌과 같은 역할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2년

3월 25일에 도초도 죽동에서 김재헌이 오위장 정희중(鄭希仲)에게 보낸 답장편지>에 “본도[도초도]는 무법천지라서 외진 곳으로 퇴거(退居)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울 수 있을 것입니까? 저도 역시 이사할 생각이니 한탄스럽습니다. 이 섬의 강령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읍에서 특별히 난만하게 상의하여 치보할 일입니다. 명례궁은 반드시 입규가 있을 것이니, 헤아려서 대처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本島段，無法天地，而退居幽僻處，則何爲責之？記下，亦是移舍爲料，可歎可歎。此島立綱，不可難矣，自邑別般爛議，馳報耳。明禮宮，則必有立規矣，諒處之如何?]”라고 한 내용이나 <1892년 12월 6일에 보내온 편지>에 “도중(都中)의 폐막(弊瘼)을 제거하기 위해 풍헌(風憲)과 집강(執綱)의 품목(稟目)을 보냈으니, 친히 살펴보신 후에 잘 고하시고 전령(傳令)을 들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都中弊瘼除次，風憲執綱稟目下去，親鑑後善告成，傳令入送]”라고 한 내용을 보면 섬의 풍화에도 간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초도에 살고 있지만 서울 소식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재빨리 대응하였을 것으로 본다. <1893년 2월 4일에 김재헌이 보내온 편지>에서는 “옛그제 김봉서(金鳳瑞)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룻밤 동안 대화를 하였는데, 압해도·자은도·장산도 세 섬이 본래 영광에 속해있었지만, 모든 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광양영감[최학규]의 분부에 ‘해남에 이속(移屬)한다’고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再昨日，金鳳瑞，自京下來，一夜說和，押海慈恩長山三島，本屬靈光，而凡事不一，故光陽令監主分付內，‘移屬於海南’云云，以此下諒焉.]”라는 내용을 귀뜸 해주고 있다. 압해도·자은도·장산도가 해남에 이속되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곳에도 명례궁 궁방전이 소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6년 3월 20일에 수치도에서 손기옥(孫琪玉)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작년 여름쯤에 얻어 쓴 돈을 지금까지 아직 올려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너그럽게 용서해주신다면 올봄의 결세전(結稅錢)을 거두어 납부할 초기에 전체를 납부할 것이니, 그렇게 헤아려주시고 죄벌을 주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昨年夏良得用錢，至今尙不伏呈，罪悶無地。然更爲寬恕，則今春結稅錢收納之初，沒數納上矣。以此下諒，毋至罪責之境，伏望伏望.]”라고 했다. 이를 통해 수치도가 1896년까지는 해남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밖에도 섬사람의 경우 정우형을 통해 섬에서 궁임이나 풍헌 및 마름 등의 직임을 얻고자 청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1890년 11월 12일에 비금도에서 이한순(李瀚淳)이 보낸 편지>에서 “혹 두호(斗護)해줄 방도가 있으면 명년에 궁임(宮任)을 도모해서 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或有斗護之方，明年宮任圖出如何?]”라고 하였고, <1891년 7월 6일에 도초도에서 이동섭(李東燮)이 보낸 편지>에서는 “일전에 부탁드린 풍헌(風憲)의 일은 혹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호장(戶長) 영감께서 일차로 고목(告目)을 잘 여쭙 후에야 이 일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조금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就白日所托風憲之事，或可爲遠念耶？戶長令監，一次善稟告目後，此事成不成，小無餘恨]”라고 하였으며, <1892년 2월 8일에 비금도에서 정홍필(鄭弘弼)이 보내온 편지>에서

는 “최영귀(崔永龜)는 본래 궁임(宮任)이나 둔장(屯長)에 대한 뜻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풍헌의 직임을 얻으려고 도모하고 있으니, 영감님에게 잘 고해줄 것이고,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실망의 탄식이 없게 해주시길 매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모두 종씨의 처분 속에 달려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崔永龜, 本有宮任屯長之意, 然明年圖差風憲之任, 善告于令監主, 而此事彼事, 俾毋失望之歎, 伏望伏望耳. 此等事, 成不成, 都在於宗氏之處分中, 則以此下諒焉.]”라고 하였다. 또 <1892년 1월 28일에 비금도에서 이한순(李瀚淳)이 보낸 편지>에서는 “봄 사이에 혹시 서울을 가실 일이 있으신지요? 부탁드린 문광오(文光五)의 마름 일은 헤아려서 처리해주시는 어떻겠습니까?[春間或有洛行否? 所托文光五舍音事, 諒處如何?]”라고 한 내용이 있다. 섬에서 궁임이나 풍헌 및 마름의 직임을 얻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했을 것이다.

3. 명례궁 수세 내용

(1) 섬의 크기와 이속

정우형 수신간찰 중 발신지가 섬인 곳은 원래는 대부분 나주에 속했던 섬으로, 새로 해남에 이속된 곳을 정우형이 담당했던 것으로 본다. 이것 외에 해남에 속한 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간찰에 보이는 섬만 보기로 한다.

각 섬의 크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도초도(都草島)는 주위가 35리이고, 비금도는 주위가 30리이며, 팔금도는 주위가 28리이고, 수치도는 주위가 23리이다.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면리편제에 따른 『호구총수』(1789년)에 의하면, 나주에 소속된 섬들 중 비금도는 406호, 도초도는 327호, 팔금도는 225호, 기좌도는 278호, 수치도는 18호로 나온다.¹⁹⁾ 물론 1880년대에도 같은 수를 유지한 것은 아닐테지만 어느 정도의 짐작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팔금도의 경우는 1893년에 206호였다.²⁰⁾

섬의 이속 시기는 비금도(飛禽島)²¹⁾와 도초도(都草島)²²⁾는 나주목에 속하다가 1887년 11월

19)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102쪽.

20) <1893년 10월 2일에 팔금도에서 이창규(李昌圭)가 보낸 답장편지>에 “본도(本島, 팔금도)의 호적(戶籍)과 정전(情錢)을 절목(節目)에 의해 206장…[本島戶籍與情錢, 依節目, 二百六張…]”라고 했다.

21) 비금도(飛禽島)는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아노현에, 통일신라시대에는 갈도현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육창현에 편입되었으며, 조선 초기에는 영광군에 속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나주목 관할이 되었으며, 1887년에 해남에 이속되었다가 1895년에 지도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안군에 이속되었으며, 1969년에 신안군이 무안군에서 분군함에 따라 신안군 비금면이 되었다. 지명은 섬의 모양이 큰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비금도라 불린다.

22) 도초도(都草島)는 신라 시대 때부터 나주목에 속하다가 1887년 11월에 비금도와 함께 해남현에 이

에 해남현에 이속되었다.²³⁾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1887년 11월 11일에 최성고(崔聖皐)가 호방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도 “두 섬[도초도와 비금도]을 귀읍으로 이속한다는 초기(草記)는 윤희를 받았습시다.[兩島移屬於貴邑草記, 蒙允矣.]”라는 내용이 나온다. 팔금도(八禽島)²⁴⁾는 1892년에 이속되었다가²⁵⁾ 1896년에 지도군에 편입되었다. 수치도(睡雉島)는 원래 나주 관할 섬이었으나 언제 해남에 이속되었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지만, 1887년 11월에 비금도와 도초도를 해남관할로 이속시킨 후 곧이어 이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7년 12월 26일에 최성고(崔聖皐)가 보낸 답장편지>에 “다른 섬 중의 몇 곳도 또 귀읍에 이속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수임(首任)의 복력인 것입니다. 우선은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他島中數處, 似有又屬貴邑者, 此則首任之福力者矣. 姑勿煩布.]”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기좌도(箕佐島)²⁶⁾는 나주에 속하였고, 경종 정조 때는 옥산 대빈방(玉山太嬪房) 소속으로 111결 27부의 궁방전이 있었다.²⁷⁾ 해남에 소속된 것은 확실하지 않다.²⁸⁾

속되었으며, 1894년에 나주군에 환원되었다. 1896년에 다시 해남군에 속하였다가 1897년에는 지도군에, 1903년에는 진도군에, 1914년에는 무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1969년 1월 1일 무안군에서 분리되어 신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 23) 『승정원일기』의 1887년 11월 10일조에 “의정부가 아뢰기를, ‘나주(羅州)에서 관할하는 비금도(飛禽島)와 도초도(都草島)는 바로 탄알만한 작은 섬으로, 백성과 물산이 원래 보잘것없어 형편이 극히 불쌍합니다. …특별히 이웃 섬에서 이미 실시한 전례에 따라 비금도와 도초도 두 섬을 지금부터 영원히 해남현(海南縣)에 소속시켜 전적으로 관할하고 통제하게 하되,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24) 팔금도는 삼국시대에는 압해·기좌·도초 등과 함께 백제의 아차산현(阿次山懸)에 속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 와서 기좌·도초와 함께 압해군(壓海郡)에 편입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나주목(羅州牧)에 속하였다가 영광군(靈光郡)에 배속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나주목에 재편입되었다. 1892년에 잠시 해남현에 속했다가 1896년에 기좌면(箕佐面)이라 하여 지도군(智島郡)에, 1914년에는 무안군(務安郡)에 편입되었다. 1917년에 안창면(安昌面)과 더불어 안좌면(安佐面)에, 1969년에는 무안군에서 신안군(新安郡)이 분군함에 따라 신안군에 속하였다. 1971년에는 팔금도 출장소의 설치로 7개 리를 관할하였고, 1983년에 면으로 승격하였다.
- 25) 『승정원일기』 1892년 2월 11일조에 “서상기가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또한 나주(羅州) 경계의 팔금도(八禽島)는 멀리 떨어져 있는 궁벽한 작은 섬으로, 적은 거주민은 누더기를 걸친 몹시 여원 물골을 하고 있습니다. 본목(本牧)의 관속이 백방으로 침범하여 곤란하게 함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 방향하며 의지하여 몸을 의탁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바, 이 때문에 하소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이웃 섬의 원용할 만한 예가 있으니, 팔금도의 장적을 해남현(海南縣)에 이속하여 안도하고 생계를 세워 살아나가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26) 기좌도(箕佐島)는 현재는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속한 섬으로, 안좌면은 안창도와 기좌도를 합하여 이루어졌다. 본래는 안창도와 기좌도 두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연결되었다.
- 27) <전라도 나주목 안창도 기좌도 기해 양안 등서초성책(謄書草成冊)>(1724년)
- 28) 『승정원일기』의 1888년 12월 14일조에 “방금 내수사의 보고를 보니, ‘나주(羅州)의 안창(安昌)과 기좌(其佐) 두 섬은 이미 본 내수사 관할 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궁벽한 섬의 최잔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항상 보호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부역이 너무 많아졌으니 반드시 장차 백성들이 흩어져 섬이 비게 될 것입니다. 비금도(飛禽島)와 도초도(都草島)의 사례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읍인 진도부(珍島府)에 이속시켜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러한 섬들은 절수가 시작될 때부터 절수가 된 것인지, 처음부터 명례궁에 절수되었는지, 아니면 매득한 것인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²⁹⁾ 그런데 궁방전의 크기를 보면 비금도의 경우에는 매우 확실하게 나온다. 즉 비금도의 명례궁 궁방전은 원래는 377결(結) 19부(負) 2속(束)이었지만 1880년 4월 이후에는 사진결(沙陳結) 등을 제외하여 결국 235결 77부 1속이 된다.³⁰⁾ 도초도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는 정확히 나온 곳이 없고 다만 ‘신미년(1871)에 새로 기경(起耕)한 전결이 139결 54부 8속’³¹⁾이라는 내용만 나온다. 즉 명례궁에서 1871년에 도초도에 새롭게 간척 등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초도가 수세한 돈 7천냥을 상납한 것을 볼 때 비금도보다는 더 많은 궁방전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팔금도의 경우는 <전라도 나주목 팔금도 명례궁 전답타량성책(全羅道羅州牧八禽島明禮宮田畝打量成冊)>(1676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전답 총 결부수가 34결 39부로 나온다.

(2) 수세 방법과 시기 및 액수

궁방전의 수세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전·곡·포 중 어떤 것을 선호했는지, 수세는 누가 담당했는지, 운송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액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다. 우선 수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살펴보면, 세납은 원래 쌀을 기본으로 하고 돈으로도 대납을 하였다. 앞서 살펴보듯이 『만기요람』에서는 ‘매 결당 米로는 23두, 錢으로는 7냥 6전 9푼씩 계산한다’고 하였다. 가장 많은 사례가 나온 비금도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승정원일기』의 1881년 10월 20일조에 “비금도는 전결 235결 77부 1속의 세납(稅納)을 지도와 장산도(長山島)의 예에 의거하여 일체 대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는 내용

하였습니다. 두 섬에 대해 이제부터 영원히 진도부에 소속시켜 전담하여 단속하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기좌도는 1888년 12월부터 진도 관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9)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2년(1671) 2월 6일조에, 사헌부에서 아뢴 말이 있는데 “전라도 나주의 사인(士人) 임상유(林相儒) 등이 본부에 정장(呈狀)하기를 ‘본주 비금도(飛禽島)에 여러 대 동안 전해 온 전장(田庄)을 궁가(宮家)에게 빼앗겼다.’고 하였는데, 대개 궁가가 해송위(海嵩尉)의 집에서 사들인 것으로서 내사(內司)에서 측량할 때에 백성의 전토가 그 가운데에 섞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궁가에서 일보는 사람이 제 능력을 뽐내려고 많은 것을 탐내는 일이 있으면 먼 지방 백성이 국가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도를 시켜 심본 명백히 살펴서 공정하게 가르게 하소서.”라는 내용이다.

30) 『승정원일기』의 1880년 4월 25일조에 “방금 또 전라 감사 심이택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 ‘나주(羅州) 비금도(飛禽島)에 있는 명례궁(明禮宮)의 둔전(屯田)은 바다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방을 쌓고서 경작하고는 있지만 매번 염기(鹽氣)로 인한 손해가 많습니다. 결총이 현재 377결 19부 2속인데, 사진결(沙陳結)과 가집복(加執卜)의 합계가 141결 남짓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결 위에 추가로 염출하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도민이 속출하고 있으니, 특별히 감하해서 전보(奠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31) 『승정원일기』의 1881년 10월 20일조에 “방금 전라 감사 이병문(李秉文)의 보고를 보건대, …나주목 도초도는 신미년(1871)에 새로 기경(起耕)한 전결이 139결 54부 8속이니 비금도와 지도(智島)의 예에 의거하여 특별히 탈을 인정해 주며…”라고 한 내용이 있다.

이 있다. 또 『승정원일기』의 1884년 10월 9일조에서도 “나주목(羅州牧) 비금도(飛禽島)의 원결(元結) 235결 77부 1속을 임오년에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3년 동안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5년 동안 다시 대납하도록 허락해 주어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다. 또 『승정원일기』의 1887년 윤4월 26일조에 “지난번 내수사(內需司)의 보고로 인하여 나주 비금도에 있는 명례궁 궁장(宮庄)의 진결(陳結) 실제 수효를 살펴서 보고 하라는 내용으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다른 섬에 이미 시행했던 전례대로 해도가 바쳐야 될 양세를 특별히 영구히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백성의 형편이 편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있다.

비금도의 경우는 원래는 쌀로 하여야 하지만 돈으로 대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881년에 건의를 하여 1882년부터 3년 동안 대납이 허용되었고, 1884년에 다시 5년 동안 대납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섬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수세시기는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학규의 간찰에는 1888년과 1889년의 경우 2월달에 궁차가 내려와서 수쇄를 하여 5~6월이나 마감이 되었다.³²⁾ 대체로 4월까지 마감을 지어야 하지만 6월에야 중앙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1890년 8월 6일에 최학규(崔鶴圭)가 보낸 편지>에서는 “궁납(宮納)은 이처럼 출말(出末)을 하게 되어 매우 시원하고, 올려보내온 백목(白木)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매우 다행입니다.[宮納, 如是出末, 甚庸豁然, 而上來白木, 無事抵京, 爲幸萬萬.]”라고 하고 있어서 시기는 매우 유동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수세는 궁차가 내려와서 수쇄하였다. 즉 <1889년 8월 16일에 비금도의 도청에서 박노순(朴魯淳)이 호방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 “다름이 아니라 수쇄(收刷)하는 일은 지금에 이르도록 끝을 보지 못해 아직 상경을 못하고 있으니 매우 답답합니다.[就控收刷之節, 至此末由, 姑未上京, 甚憫.]”라는 내용과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만기요람』 「재용편」에 의하면, “궁방전은 면부(免賦, 대동세 면제)·면세(免稅, 전세 면제)로, 유토와 무토의 구별이 있다. 무토는 호조에서 실결(實結)을 획급하여 3년을 기준으로 도내 각읍에 윤정(輪定)³³⁾하며, 수세는 해읍에서 호조에 직납하고 호조에서

32) <1888년 1월 27일에 최성고(崔聖皐)가 보낸 편지>에서 “제가 내려갈 기일은 10일 사이에 출발할 것이어서 20일 이후에나 도착할 수 있을 것이며, 궁차(宮差)는 초순께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상납할 것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下往之期, 旬間發行, 可以念後入抵, 而宮差, 則初生下去矣, 上納, 準備而待之如何?]”라고 했고, <1888년 4월 28일에 최성고(崔聖皐)가 보낸 편지>에서는 “궁납(宮納)은 아직 수쇄를 마치지 못해서 내려간 사람은 속히 돌아올 수 없으니, 본읍(本邑)에게 있어서도 실로 무색한 일인지라 두렵고 답답할 따름입니다.[宮納, 尙未了刷, 去人不得速還, 在本邑實是無色也, 爲之惶悶萬萬.]”라고 했으며, <1888년 6월 14일에 최성고(崔聖皐)가 보낸 편지>에서는 “궁납(宮納)을 마감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목가(木價)가 점점 오르는 것은 시세와 관계된 것이니 어찌겠습니까?[宮納了之了勤, 甚爲萬幸, 而木價之稍騰, 此係時勢奈何?]”라는 내용 등이 있다.

33) 민전의 소유자,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가 설정되어 있는 곳의 관(官), 궁방의 이해관계가 상호 작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궁방에 대한 부담을 여러 고을에 돌려가며 정하였던 데서 윤회결 또는 윤결(輪結)이라고 하였다. 한 지역의 부담은 본래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각 궁방에서 도장(導掌)을 파견하여 직접 세를 징수하였으나, 정조연간에 10년으로 그

궁방에 지급한다. 유토는 해궁(該宮)에서 토지를 매득한 것으로, 수세는 해궁에서 도장(導掌)을 파견하여 거둔다.”³⁴⁾고 했다. 그렇다면 궁차(宮差)와 도장(導掌)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1890년 무렵에는 궁차가 내려와서 수세를 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수세하여 납부한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즉 <1890년 윤2월 3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금년의 궁납(宮納)은 관(官)에서 수납(收納)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궁차(宮差)를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모쪼록 4월 내로 필납(畢納)한 뒤 인편이 있는 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今年宮納, 自官收納者, 故宮差不得下送. 某條四月內畢納, 隨便以示, 如何如何?]”라고 한 내용이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1890년 1월 14일에 도초도에서 김재헌(金載憲)이 보낸 편지>에서도 “저희 섬에서 납부해야 할 궁세전(宮稅錢) 미수(未收)에 대해서 읍에서 수쇄(收刷)한다는 뜻으로 영감[최학규]께서 지위(知委)하시기에 저번에 전방(銓房, 이방)에게 고했습니다.[鄙島所納宮稅錢未收, 以邑收刷之意, 令監主指委, 故向者仰告于銓房矣.]”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1892년 10월 그믐에 도초도에서 궁차 노상적(盧尙迪)이 정오위장에게 보낸 답장편지>에 “전봉(錢捧)은 많아서 합 7천여금이나 되니, 운송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실어가라는 뜻으로 우체편에다 알렸습니다.[錢捧夥多, 畝爲七千餘金, 則運送極難, 故以送人輸去之意, 禡便廻奇矣.]”라고 한 내용이나 <1893년 11월 19일에 도초도에서 노상적(盧尙迪)이 정우형에게 보낸 답장편지>에 “금번의 수세전(收稅錢)은 6천냥이나 되기 때문에 둔호(屯戶)와 고직(庫直)을 안동(眼同)하여 수송(輸送)하니, 고납(考納)하신 후에 수봉한 표를 즉시 인편이 있는 대로 올려보내어 빙고(憑考)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今番收稅錢, 爲陸仟兩, 故屯戶庫直眼同輸送, 考納後, 收捧標, 卽爲隨便上送, 以爲憑考之地如何?]”라고 한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도초도의 경우 궁차가 직접 내려와서 섬에서 수세를 하였으며, 이것을 해남읍에서 취합하여 궁방으로 올려보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1893년 7월 20일에 팔금도에서 이창규(李昌圭)가 오위장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도(本島)의 세미(稅米) 71석을 필납하니, 인척(印尺)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本島稅米七十一石畢納, 印尺忘勞成送如何?]”라고 하듯이 섬사람이 거두어서 해남읍의 정우형에게 납부한 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세해 놓은 것을 궁차가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을 취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⁵⁾ 그것은 궁방전이 유토인가 무토인가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기한을 늘리고 도장을 혁파하여 해당 고을에서 세를 거두어 호조에 상납하면 호조에서 궁방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윤희결에서의 세는 1결당 쌀로는 23두, 돈으로는 7냥 6전 7푼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점차 각 지역으로 이정(移定)되지 않고 장기간 한곳에 고정되어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1894년(고종 31) 갑오농민전쟁 당시에 농민군이 그 혁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4) 고나은, <한말 명례궁장토의 운영과 국가의 소유권 정립>, 『한국민족문화』 55, 2015, 59쪽. 재인용.

수세액의 경우에는 도초도의 경우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다. 대체로 7천냥을 상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1892년 10월 그믐에 도초도에서 궁차 노상직(盧尙迪)이 보낸 답장편지>에서나 <1892년 11월 4일에 도초도 죽동에서 김재헌(金載憲)이 보낸 편지>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비금도에서는 한꺼번에 보낸 적이 없어서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1890년 11월 28일에 비금도에서 김유헌(金有憲)이 호부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 “결역미(結役米) 29석 6두 1승 4홵에 대한 대전(代錢) 176냥 4전 6푼을 들여 보냈으니, 받으시고 자문을 받아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結役米二十九石六斗一升四合 代錢一百七十六兩四錢六分入送, 考捧, 受尺以送如何?]”라고 한 것과 같이 함께 모아서 상납하는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담당자[궁임 또는 마름]가 직접 해남읍에 납부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우형의 경우 1887년도와 1891년도에 비금도에서 세를 거두고 있었던 사실이 간찰 속에서 확인되었다.³⁷⁾ 이런 것을 볼 때 도초도와 비금도는 수세 방식이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35) <1892년 2월 그믐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궁납미(宮納米)를 실어 나르기 위해 김생원(金生員)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내려갔으니, 빗깍이 좋고 용기를 준용한 것을 고르고 또 골라서 숫자대로 출급(出給)해주고, 포량미(砲糧米) 또한 빨리 출급해주어서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역소(結役所)에서 소추(所推)할 것과 가리진(加里鎭)에서 소추할 물건은 조속히 찾아오고, 저(苧)와 포(布)는 사두었다가 무물(買物)이 올라올 때 첨가하여 실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第宮納米載運次, 金生員, 持公文下去, 色精準桶者, 擇之又擇, 準數出給, 而砲糧米, 亦爲斯速出給, 無至逗留之地, 如何? …結役所所推者, 與加里鎭所推之物, 從速推來, 苧與布買置, 買物上來時, 添載上送, 切企切企.]”라는 내용이나 <1896년 8월 28일에 최성고(崔聖皐)가 보낸 편지>에 “궁납을 거두는 일로 여러 차례 독촉한 것은 궁중에서 분주함이 있는 소치입니다. 이영석(李永錫)을 지금 내려보내니, 어정거리는 폐단이 없도록 힘써서 잘 보호해주시길, 오로지 믿을 따름입니다.[第宮納收捧, 惟爲屢督, 自有宮中奔汨之致, 李永錫今茲下送, 無至逗留之弊, 極力善護, 專恃專恃.]”라는 내용 등이 있다.

36) <1892년 11월 4일에 도초도 죽동에서 김재헌(金載憲)이 오위장 정희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궁전(宮錢)은 존(尊)의 말씀에 따라 둔장(屯長)과 고직(庫直)에게 시켜서 보냈으니, 돈의 숫자 중에서 표지(標紙) 대로 80냥은 제하고, 나머지 돈 6920냥을 영수하시길 바랍니다.[宮錢依尊教, 屯長與庫直, 使之下送, 則錢計數中, 依標紙, 八十兩除之矣. 餘六千九百廿兩, 捧上伏望耳.]”라고 했으며, <1892년 11월 18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궁전(宮錢)의 남은 돈 4천여 냥에 대해 무물(買物)을 구획하고 납부하는 표지(標紙)는 올라왔는데, 도초도(都草島)에서 나와야 할 돈 7천 냥은 아직 봉납(捧納)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宮錢在條四千餘兩, 買物所劃納標紙上來, 而都草島出來錢七千兩, 姑未見捧納耳.]”라고 한 내용이 있다.

37) <1887년 8월 29일에 나주에서 최성고(崔聖皐)가 보낸 편지>에 “비금도(飛禽島)로 찾아주라는 말씀은 진실로 좋기는 하지만 바다의 섬에 들고 나는 것이 어찌 쉬울 것입니까?[來顧飛禽之示, 誠好矣, 而海島出入, 豈可容易乎?]”라는 내용과 <1891년 11월 8일에 최학규(崔鶴圭)가 동지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 “섬에서의 여고(旅苦)가 매우 신산(辛酸)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실로 민망합니다.[島中旅苦, 想多辛酸, 爲之良悶.]”라는 내용, <1891년 12월 17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비도(飛島)의 수쇄(收刷)는 자못 노련한 힘에 힘입은 것으로, 이미 앞 편지에서 축하드렸었고, 궁차(宮差)와 흥쇠(興釧)는 짐꾼을 거느리고 잘 도착하였는데, 몇 달 동안 고생한 나머지 별달이 없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第飛島收刷, 頗賴老鍊之力, 已賀於前書, 而宮差與興釧, 領卜善到, 能無故於數朔喫苦之餘, 爲幸爲幸.]”라는 내용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팔금도의 경우는 <1893년 3월 11일에 팔금도에서 김원배(金元培)가 보낸 답장편지>에 ‘팔금도 사람 각각의 표전(標錢)이 318냥³⁸⁾이라는 내용과 앞서 살핀 <1893년 7월 20일에 팔금도에서 이창규(李昌圭)가 보낸 편지>에서 ‘71석을 필납한다’는 내용이 있다.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하되 한 번은 돈으로, 한 번은 곡식으로 세금을 낸 것인지, 아니면 무토와 유토를 구분하여 낸 것인지 부정확하다. 71석을 비금도의 대납과 비교하면 426냥 정도가 된다.

수치도의 경우는 <1892년 4월 17일에 수치도에서 강영래(姜永萊)가 호장 정희중에게 보낸 편지>에 “저희 섬의 세미대전(稅米代錢) 700냥을 보내드리니, 숫자대로 살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就拱鄙島稅米代錢, 七百兩納送, 依數考領爲望耳.]”라는 내용과 <1893년 3월 20일에 수치도에서 강영래(姜永萊)가 보낸 편지>에 “저희 섬의 세미대전(稅米代錢) 전수를 납부하니, 자문[尺文]을 소상히 해서 이곳에서 가는 사람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就鄙島稅米代錢, 沒數捧上, 以此下諒, 而尺文昭詳, 此去人便下送.]”라는 내용 등이 있는데, 700냥이 전수로 보인다.

수세는 위에서 보듯이 쌀과 돈으로 했는데, 돈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목으로 바꾸어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1890년 4월 27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궁납(宮納)의 일은 다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헌(東軒)께서 저번에 서울에 오셨을 때 무목(貿木) 등의 일은 그대에게 맡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포(布)이건 목(木)이건 간에 조속히 사는 것으로 구획해서 다음 달까지는 기어이 서울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第宮納, 想已了畢, 而東軒向有戾洛之時, 貿木等節, 以托于君處爲言矣. 於彼於此, 布木間, 從速以貿區劃, 期於來月內到京.]”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로도 많은 편지에서 목(木)이나 포(布)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나온다.³⁹⁾ 이것은 명례궁에서 필요해서 사 보내라고 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시세차익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닐

38) <1893년 3월 11일에 팔금도에서 김원배(金元培)가 보낸 답장편지>에 “본도(本島) 각인(各人)의 표전(標錢) 318냥은 ‘다만 건기(件記)만 보내오고 어찌 표지(標紙)는 보내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각인들에게 말하여 이백언(李伯彦)의 돈 50냥과 이병훈(李炳薰)의 돈 180냥, 그리고 박재효(朴在孝)의 돈 18냥을 합한 돈 248냥을 이편에 보내드렸고, 영조(零條) 70냥은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本島各人標錢參佰十八兩, 只送件記, 何不送標紙乎? 以是爲言, 故各人許爲喻, 李伯彦條五十兩, 李炳薰條一百八十兩, 朴在孝條十八兩, 合二百四十八兩, 此便備送, 而零條七十兩, 姑未備送.]”라는 내용이 있다.

39) <1890년 5월 20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궁납(宮納)을 청장(淸帳)한 것은 실로 영감의 근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감사드릴 일입니다. 백목(白木)은 보내신 숫자대로 잘 도착하였으니 다행함이 끝이 없습니다. 남은 돈 4천여 냥은 목(木)이건 포(布)이건 간에 기어이 빠르게 사서 차례대로 올려 보내어 때를 놓치는 폐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第宮納則淸帳, 寔由令之另勤, 爲之感荷者也. 白木, 依數善到, 爲幸無已者耳. 餘在錢四千餘兩, 期於木布間速貿, 鱗次上送, 毋至失時之弊如何?]”라는 내용, <1890년 6월 22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부탁드린 백목(白木)과 상포(常布)는 조속히 사서 보내주어서 실효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所托白木與常布, 從速貿送, 期有實效之地, 切企切企.]”라는 내용, <1891년 3월 30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궁납조(宮納條)는 때에 맞게 추심(推尋)하고 무목(貿木)하여 상송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宮納條, 趁卽推尋, 貿木上送如何?]”라는 내용 등이 있다.

까 한다.

이때 수송은 처음에는 일반 배를 통해 수원까지 보내다가 곧이어 운선(輪船)을 의지했고, 대체로 목포항에서 인천항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1888년 4월 28일에 최성고(崔聖皐)가 첨지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 “백목(白木)은 보내주신 숫자대로 잘 도착했으며 아직 수원에 머물러두고 있는데, 조만간 방매할 계획입니다.[白木依數善到, 而姑留於水原, 從當放賣計耳.]”라는 내용을 통해 아직까지는 운선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수원에서 물건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89년 6월 21일에 최학규가 보낸 답장편지>에 “운선은 어제 무사히 도착해서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輪船, 日昨無事順泊, 甚幸甚幸.]”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목포와 인천 사이에 처음으로 화륜선이 왕래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91년 12월 27일에 최학규(崔鶴圭)가 보낸 편지>에 “다름이 아니라 부쳐 보내신 백목(白木)이 인항(仁港)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실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고가(雇價)가 250냥이 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출급해주었습니다.[第付送白木, 到泊于仁港, 而輸運入京雇價, 爲二百五十兩也. 不得不出給.]”라는 내용, <1892년 3월 25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무목(買木)은 그간에 과연 목포(木浦)에 도착했는지요? 반주(斑紬)는 아직 숫자대로 사두지 않았을 것이지만, 다른 물건의 소용이 시급하니, 반주를 먼저 사서 몇 백 필이건 간에 운선편으로 먼저 올려보내시고, 나머지 것은 매매를 다 마친 후에 인편이 있는 대로 알려주신다면 마땅히 다시 통지할 계획입니다.[買木, 問果來到木浦耶? 斑紬, 則姑不依數買置, 他物所用時急, 斑紬先買, 爲幾百疋間, 輪船便先付上送, 零在條, 畢買後, 隨便更示之, 則當爲通奇計耳.]”라는 내용 등을 통해 1889년부터는 운선이 활용되었고, 이에 맞추어 목포항과 인천항이 발달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방전 수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별도로 더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1888년 10월 3일에 도초도에서 김재헌(金載憲)이 보낸 편지>에 “염세전(鹽稅錢)으로 파급(播給)할 185냥에 대한 일을 상조(上詔)에게 보낸 편지 속에 아뢰었으니, 서로 상의하여 조치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鹽稅錢播給一百八十五兩事, 仰告上詔書簡中, 相議措處如何?]”라는 내용, <1893년 3월 13일에 팔금도에서 이창규(李昌圭)가 보낸 답장편지>에 “포량미대전(炮糧米代錢)·결작미대전(結作米代錢)은 합 130냥 1전 3푼이고, 결전결배전(結錢結排錢)·어세전(漁稅錢)은 합 38냥 5전 3푼입니다. 원전(願錢) 180냥 내에서 관석자대전(官席子代錢) 50냥은 매년 7월을 당해 납부하라고 이미 분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민배(民排)를 하지 않았으니, 합 130냥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합전(合錢) 298냥 6전 6푼을 본도주인(本島主人) 김기선(金奇先)에게 갖추어 보내니, 살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炮糧結作米代錢, 合壹百參什兩壹錢三分. 結錢結排錢漁稅錢, 合參什捌兩伍錢三分. 願錢, 壹佰捌什兩內, 官席子代錢五十兩. 每年七月等當納, 已有分付, 故姑未民排, 合錢壹佰參什兩. 已上三合錢, 貳佰玖什八兩陸錢陸分, 本島主人金奇先許, 備送考納焉.]”라는 내용, <1893년 10월 2일에 팔금도에서 이창규(李昌圭)가 보낸 답장편지>에 “본도

(本島)의 호적(戶籍)과 정전(情錢)을 절목(節目)에 의해 206장, 돈 82냥 4전과 필채(筆債) 15냥을 합한 97냥 4전을 보내드리니, 받으시기 바랍니다.[本島戶籍與情錢, 依節目, 二百六張, 錢八十二兩四錢, 筆債十五兩, 合文九十七兩四錢, 仰呈, 考納焉.]”라는 내용이 있다.⁴⁰⁾

섬에 살면서 국방전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궁세만 낸 것이 아니고, 염세(鹽稅), 포랑미(砲糧米), 결작미(結作米), 결전(結錢), 어세(漁稅), 무세(巫稅) 등 정규세와 관석자대전(官席子代錢), 적헌정전(籍憲情錢), 백일세(百一稅) 등 여러 가지 잡비를 내야 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읍내의 각 청에 납부하거나,⁴¹⁾ 중앙에까지 납부해야 할 돈이 있었다. <1894년 1월 6일에 비금도에서 김두순(金斗淳)이 보낸 편지>에서는 “경각사(京各司)에 상납하는 일은 백번 생각해보아도 읍에서는 생경한 일이고 도민에게는 고평입니다. …본도(本島)의 백일세(百一稅)에 대한 일은 영지(令旨)를 들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京各司上納事, 百以思之, 邑之生梗, 島民之痼弊. …本島百一稅事, 令旨入送]”라고 하여 여러 가지 세금이 끝이 없어서 섬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4. 해남의 국방전과 명례궁 도장

명례궁 국방전은 지역적으로 전라도 지역의 섬이나 해안 저습지에 대규모적으로 형성되었다.⁴²⁾ 해남에 소재한 명례궁 국방전의 규모는 앞서 살펴보듯이 해남에서 1722년에 작성한 양안에 의하면 5개면(녹산면, 화이면, 은소면, 현산면, 화일면)의 소재 전답 총면적은 855결 23부 9속이었다. 그런데 이 5개면이 한동안 해남의 주요 명례궁 국방전의 소재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의 국방전이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40) 호적정전은 팔금도 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니, 대개 1장당 3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1893년 9월 30일에 도초도에서 김재헌(金載憲)이 보낸 편지>에 “다름이 아니라 금년식(今年式)부터 위시하여 적전(籍錢)을 감하는 일로 이미 궁(宮)에 여쭙었는데, 회답 내에 ‘장산·자은·압해 등 3도(島)의 절목(節目)에 의거하여 장당 3전씩 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도중(都中)에 극력히 논의를 내었습니다.[就悚, 今式爲始籍錢減數次, 已爲稟宮. 回辭內, 依長山慈恩押海三島條節目例, 每張價費三錢式, 爲教, 故極力發論都中.]”라는 내용이거나 <1893년 2월 28일에 비금도에서 김두순(金斗淳)이 보낸 편지>에서 “본도(本島)의 적헌정전(籍憲情錢) 150냥 중 필채전이 20냥을 차지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本島籍憲情錢一百五十兩中, 筆債錢二十兩, 次持已久矣.]”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41) <1893년 3월 13일에 도초도 죽동에서 김재헌이 보낸 편지>에서는 ‘본읍 각청(各廳)의 원전(願錢)’ 목록을 적어 놓았는데, “현사(縣司) 10냥, 질청(作廳) 20냥, 향당(鄉堂) 5냥, 장청(將廳) 10냥, 승발(承發) 5냥, 형방청(刑房廳) 5냥, 통인(通引) 10냥, …결배전(結排錢) 40냥 3전 7푼, 무세전(巫稅錢) 15냥 1전 8푼, 어세(魚稅) 우선 10냥” 등 합 383냥의 목록을 적어놓았다.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방양안』, 민속원, 2012, 237~238쪽.

이후 해남 소재 명례궁 궁방전의 추이에 대해서는 19세기에 작성된 『전라도장토문적(全羅道庄土文績)』(奎19301)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제28책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장토 최학규(崔鶴奎) 제출 도서문적류>를 보면, 1850년 10월에 명례궁에서 명례궁 소속 전라도 해남현 둔세미 수쇄도장(收刷導掌)을 6인[1깃당 100석에 대한 돈 500냥씩 6깃]에게 차정하였고, 이후 1879년 5월에 해남 남5면과 가리진의 둔토 244결 96부 4속, 수세미 556석 9두 9흡 곳의 도장을 4600냥에 팔았음을 알 수 있다.⁴³⁾ 즉 명례궁에서 상납액을 정하여 도장을 차정하고, 이후 이 도장권을 매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서에서의 도장은 모두 경도장(京導掌)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1850년 10월에 명례궁에서 6인[崔箕煥, 鄭德基, 鄭弘仁, 李時得, 崔重九, 金聖淵]에게 내린 도서배자[체문]는 ‘해남의 둔세미를 금년부터 시작하여 매석당 5냥씩 작전하여 상납하는 뜻으로 도장권을 주니 납가는 500냥을 상납하되 매년 6월 내로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전체가 500석에 3000냥이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1853년에 정계홍(정덕기)은 1깃의 도장권을 380냥에 판다. 1859년에는 6인[南再喆, 朱義植⁴⁴⁾, 鄭弘仁, 李時得, 金聖淵, 崔重九]이 둔세미 수쇄도장 6깃을 3600냥에 방매하였다. 그리고 병자년(1876) 1월에는 해남둔세미 수쇄도장을 다시 이기정(李基禎)에게 차정하면서 ‘월납미 296석 12두 1승 8흡, 매석대전 7냥씩 합전 2077냥 6전 9푼을 올해조부터 매년 4월 내로 착실히 상납하라’는 도서배자가 내려졌다. 1879년 5월에는 이기정이 해남 남5면과 가리진 두 곳의 둔토 244결 96부 4속, 수세미 556석 9두 9흡 곳의 도장권을 4600냥을 받고, 구문기 3장과 체문[帖文, 도서배자] 7장, 신문기 1장을 아울러 영영 방매하였다.

43) 『전라도장토문적(全羅道庄土文績)』 제28책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장토 최학규 제출 도서문적류>

| 연도 | 문건종류 | 내용 | 거래액수 |
|------|--------------|--|----------------------------------|
| 1850 | 도서배자 [체문] | 명례궁에서 崔箕煥, 鄭德基, 鄭弘仁, 李時得, 崔重九, 金聖淵에게 도장권 차정 | 각자 매석당 5 냥의 500냥씩 상납조건 |
| 1853 | 명문 | 정계홍과 아들 정덕기가 무토면세 도장 6깃내 1깃을 방매 | 380냥 |
| 1859 | 명문 | 南再喆, 朱義植, 鄭弘仁, 李時得, 金聖淵, 崔重九 등이 둔세미 수쇄도장 6깃을 방매 | 600냥씩 3600 냥 |
| 1876 | 도서배자 [체문] | 명례궁에서 李基禎에게 해남 둔세미 수쇄도장을 차정, 296석 12두 1승 8흡 곳 | 7냥씩, 2077냥 6전 9푼을 4월 내로 상납 |
| 1879 | 명문 | 이기정과 이기조가 5면과 가리진 둔토 244결 96부 4속, 수세미 556석 9두 9흡 곳의 도장을 방매 | 4600냥 |

44) 주의식은 명례궁 소임이라고 한다. 즉 『승정원일기』의 1865년 3월 8일조에 보면, “형조가 아뢰기를, ‘명례궁(明禮宮) 소임(所任) 주의식(朱義植)이 7~8년 전에 평택(平澤)에 2백 냥을 꾸어 주고는 옥박질러 창주인(倉主人) 명색을 칭하고 매년 곡식을 조운해 올 때면 우수리 조로 20여 석을 뱃머리에서 빼앗아 갔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동년 6월 22일조에는 ‘주의식(朱義植)을 경희궁 위장(慶熙宮衛將)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이기정은 1876년 1월에 갖게 된 도장권을 1879년 5월에 최학규에게 팔았던 것이다. 최학규가 살 때는 위에 나왔던 5개면 외에 완도의 가리진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 총 결부수는 244결 96부 4속인 곳이다. 그렇다면 대략 짐작해보건대 해남 남5면의 결부수는 약 130결가량이고, 가리진이 115결가량 될 것이니, 1722년에 작성한 양안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아마도 이때는 유토만 해당된 것이 아닐까?

또 같은 책 제29책 <해남군 은소면 소재 장토 정우형(鄭愚衡) 제출 도서문적류>에는 1850년 9월에 명례궁에서 천응관(千應寬)에게 은소면 독야지(禿也只)⁴⁵⁾에 대한 도장(導掌)을 200냥에 차정하였는데, 정우형이 1886년에 400냥에 산 내용이다.⁴⁶⁾ 즉 해남 은소면 독야지(미야지)에도 명례궁 궁방토가 있어서 도장권이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50년 9월에 명례궁에서 천응관(千應寬)에게 200냥에 도장(導掌)권을 주었고, 이것을 다시 1881년에 천재하(千載河)에게 300냥에 차정하였으며, 그러던 것을 1886년 9월 11일에 정우형에게 팔게 된다. 그 사연은 명문과 수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⁴⁷⁾

45) 독야지(禿也只) : 해남현 은소면 독야지로, 현재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에 해당된다. 독야지는 현재 독고개란 지명으로 잔재가 남아있다.

46) 『전라도장토문적(全羅道庄土文績)』 제29책 <전라남도 해남군 은소면 소재장토 鄭愚衡 제출 도서문적류>

| 연도 | 문건종류 | 내용 | 거래액수 |
|------|------|--|---------|
| 1850 | 도서배자 | 명례궁에서 千應寬에게 독야지 堰畚 작도장 차정 | 납가 200냥 |
| 1881 | 도서배자 | 명례궁에서 독야지에 사는 千載河에게 향도장을 다시 거행하라고 차정 | 300냥 |
| 1886 | 수표 | 천민석, 천인문, 천석년, 천준환, 천인형이 은소면 소재 도장권을 척매 | |
| 1886 | 명문 | 천재하, 천재기가 은소면 미야지 소재 19결 79복 5속 곳 향도장권을 방매 | 400냥 |
| 1886 | 소지 | 현이면 온인동의 천옥지, 천대유, 천인형 등이 해남현감에게 올린 소지- 천명중의 향도장을 400냥에 방매하여 궁납체납조를 갚고자 하니 입지를 성급해달라는 내용 | |
| 1886 | 발괄 | 정우형이 명례궁 당상대감에게 올린 소지. 독야지 향도장을 천명중이 거행하다가 상납을 건제하여 방매한 것을 400냥에 매득, 금년조 300냥을 상납하였으니, 발괄하여 무너진 제언을 수축하게 해달라는 내용 | |
| 1887 | 도서배자 | 명례궁에서 해남 삼공형에게 독야지 소재 庄民들의 용역을 견감하라고 이미 패척하였으니 물침하게 하라고 위임 | |

47) 명문(明文)은 1886년 9월 11일에 향도장 천재하(千載河)가 작성한 것으로, “은소면 미야지 소재 명례궁 향도장을 누대로 거행하다가 가산이 불행히 치패하게 되어 을유년 상납 300냥을 미납한 일로 본궁의 패척과 운영문의 감결이 지엄하고, 또 본읍에 납부할 궁결세대전 541냥 7전을 미납한 일로 여러 달 동안 장수(杖囚)하였지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향도장을 절가 400냥에 판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수표(手標)는 1886년 9월 11일에 표주(標主) 천민석(千敏石) 천준환(千準煥) 등 5명이 작성한 것으로, “죽인 천명중이 은소면에 소재한 명례궁 향도장을 거행하다가 불행히도 가산이 치패하게 됨에 따라 명례궁 상납과 궁토세대전이 모두 841냥 7전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납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궁장 향도장을 이 사람에게 판다”는

즉 독야지의 명례궁 공장토는 1850년에 천씨에게 향도장(鄉導掌)이 부여되어 대를 이어 권리를 행사하다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자 1886년 가을에 이르러 도장권을 정우형에게 팔았고, 정우형은 약 20결가량 되는 궁방전 도장권을 산 것이다. 원래 작도장에 차정된 자는 궁방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궁방과의 연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한 인물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이후에는 궁방과 연계되지 않던 양반층과 상민층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니,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며 부를 축적하고자 한 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⁴⁸⁾

1887년부터는 명례궁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주었으며, 독야지 소재 庄民에게는 역을 견감해주도록 하였으니 물침하라는 명령을 삼공형에게 내렸다. 이를 계기로 정우형은 명례궁 궁방전 수세의 일을 맡게 되었던 것 같다.

상납액은 <1897년 6월 3일에 최성고(崔聖皐)가 오위장 정우형에게 보낸 편지>에 “다름이 아니라 독야지(禿也只)에서 상납한 엽전 300냥은 도착한 대로 납부했으니, 그리 아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第禿也只上納葉錢三百兩, 依到捧納矣, 諒之如何如何?]”라는 내용에 보이듯이 10년 전에 구입했을 때와 똑같은 300냥이었고, 유토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독야지에 대해서는 <1887년 7월 23일에 서울 대창동에서 최성고(崔聖皐)가 해남의 호방 정우형(鄭愚衡)에게 보낸 편지>에 “진결(陳結) 중 독야지(禿也只)의 것을 한 10결 정도 감해주라는 뜻으로 동헌(東軒)⁴⁹⁾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편지로 부탁하였고, 다음으로 이부(吏部, 이방)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부탁을 하였으니, 상의해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陳結中, 禿也只限十結減給之意, 書托於東軒書中, 次托於吏部書中矣. 相議如何如何?]”라는 내용과 <1892년 1월 23일에 최학규가 보낸 편지>에 “독야지의 수문(水門) 역사(役事)는 소용되는 석재를 운반하고 집선하는 일을 맡으시신 대로 삼도진(三島鎭)⁵⁰⁾에 패척할 계획입니다.[第禿也只水門役事, 所用石材, 轉運執船事, 依所示, 牌飭三島鎭爲計]”라는 내용 등을 통해 명례궁이나 관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남에는 명례궁 궁방전 외에도 여러 궁방전이 소재하였을 것이다. 기록으로는 우선 옥상궁(毓祥宮)⁵¹⁾ 궁방전이 있다. 1803년 6월에 해남현에서 작성한 <옥상궁노 혁파급대조 내수사내 전라도해남 전담양안(毓祥宮奴革罷給代條內需司來全羅道海南田畝量案)>(奎

내용이 들어있다.

48) 박성준, <17세기 후반~20세기 초 궁방전에서 作導掌의 발생 기원과 작도장권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사연구』 168, 2015, 168쪽.

49) 동헌(東軒) : 해남 현감을 말함. 이때 해남 현감은 무과출신인 김성택(金聖澤, 1886~1889)이 맡고 있었다. 김성택은 1890년에 법성첨사가 되었다.

50) 삼도진(三島鎭) : 삼도진은 1883년에 노화도에 설치된 수군진으로, 노화도(蘆花島)·넙도[苧島]·보길도(甫吉島)를 총괄하였다. 여기에서는 삼도진첨사 김태희(金台禧)를 말한다.

51) 옥상궁(毓祥宮) :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1753년에 승격되었다.

18740)은 비곡면·마포면·현일면·현이면·녹산면·화일면 등 6개면 소재의 내수사 전답의 일부가 1801년 공노비 혁파로 육상궁의 노비(신공)가 혁파됨에 따라 그 급대조(給代條)로 육상궁으로 이속(移屬)된 후 타량하여 만든 것인데, 총 전답결은 27결 45부 4속이고, 도조(賭租)는 288석 14두 4승이다.

또 앞의 책 제27책 <전라남도 해남군·장흥군 소재 이용각(李容恪) 제출 도서문적류>에는 육상궁에서 임오년(1882) 7월에 정창문(鄭昌文)에게 해남소재 답 29석 11두락지 등의 도장권을 차정하는 도서배자가 있다. 같은 때 경도장 정창문과 향도장 천재풍(千在豊)이 함께 올린 발괄도 있는데, 해남이 원래 280여석 도조를 거두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803년에 내수사에서 전답 일부를 육상궁으로 이속한 것과 같은 곳이 아닌가 싶다.

1894년 무토가 사라진 후에도 해남에는 경선궁(慶善宮)⁵²⁾ 궁방전이 소재하게 되었다. 정우형가 고문서 중에는 <장평리 경선궁 장토 추수타조책>이 4권 있는데 1904년 9월, 1904년 11월, 1905년 11월, 1906년 9월에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작인은 51명~58명이고, 결부수는 7결 18부 6속 또는 7결 68부 7속이며, 합조(合租)는 186석 9두 또는 121석 11두 또는 161석 2두 7승이다.

5. 맺음말

해남군은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넓으며, 경지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넓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도서뿐만 아니라, 우수영과 목장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 근대기에는 목포항과 가까워서 물자는 목포항을 통해 중앙으로 운송되었다.

궁방 중 해남에 가장 많은 땅 또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궁방은 명례궁이었다. 명례궁은 1886~1891년에 전국적으로 61처에 분포한 새로운 궁방전을 매득과 개간의 방식으로 확보하였는데,⁵³⁾ 섬이나 해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해남은 간척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리라.

궁방전의 수세는 규정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어서 정기적인 상납 외에도 자잘한 잡비가 많아서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끼쳤을 것이고, 이를 수세하는 궁임이나 아전 또한 수많은 세금 명목 속에서 나름의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섬에서 먼저 소작쟁의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이다.

수세 방법은 섬에서 정우형에게 보내온 간찰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

52) 경선궁(慶善宮) : 고종 때 엄귀비로, 1903년에 순헌황귀비 칭호를 받고 이때부터 경운궁(慶運宮) 안의 명례궁(明禮宮) 터에 경선궁(慶善宮)을 세우고 이곳에서 살다가 1911년 7월 사망한 뒤 이름을 덕안궁이라 하였다.

53) 이영훈, <대한제국기 황실재정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 51, 2011, 11쪽.

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장 또는 궁차가 내려와서 수세하여 해남읍에 납부하면 해남읍에서 취합하여 상납하는 방식과 섬사람이 수세를 하여 해남읍에 납부하는 방식, 아전이 섬에 들어가 수세하는 방식, 섬사람이 수세를 해놓으면 궁차가 내려와서 가지고 가는 방식 등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면세결인 궁방전에 유토와 무토의 구별이 있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세액의 경우에도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쌀 1석당 돈을 환산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 달랐으니, 풍년과 흉년이 있었고, 땅의 비옥도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해에 따라 쌀값의 등락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해남에서 궁세로 수세한 돈은 바로 상납하지 않고 대부분 포목으로 바꾸어서 올라갔다. 이것은 해남 등지가 목화 산지인 것과 관계가 깊다. 무명으로 바꾸어서 올라간 것은 명례궁에서 소용되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마침 화륜선이 운행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궁세를 수세하러 내려오는 사람은 명례궁의 하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섬에서 궁방전 수세를 담당할 사람도 나름 식자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라도장토문적(全羅道庄土文績)』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궁방양안』, 민속원, 2012.

고나은, <한말 명례궁장토의 운영과 국가의 소유권 정리>, 『한국민족문화』 55, 2015.

권수용, <19세기 해남향리 정우형의 수신간찰 연구>, 『고문서연구』 51, 2017.

박광성, <궁방전의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5, 1970.

박성준, <17세기후반~20세기초 궁방전에서 作導掌의 발생 기원과 작도장권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사연구』 168, 2015.

박성준, <17~18세기 궁방전에서 도장의 발생과 역할>, 『역사문화연구』 64, 2017.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신명호, <17세기 초반 명례궁의 연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이영호, <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한국학연구』 24, 2011.

이영훈, <대한제국기 황실재정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 51, 2011.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학교경제학부 박사학위논문, 2008.

조영준, <18세기후반~20세기초 궁방전의 규모, 분포 및 변동>, 『조선시대사학보』 44, 2008.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제>, 『정신문화연구』 31, 2008.

한말 ~ 일제 초 영광
연안김씨가의 토지거래와
소유권 확보

허월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말 ~ 일제 초 영광 연안김씨가의 토지거래와 소유권 확보

허윤희(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원)

< 목 차 >

1. 머리말
2. 한말의 전답매매와 문서 작성
3. 1901년 황인수와의 산송 사건
4. 1910년 전후의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
5. 맺음말

1. 머리말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노령산맥의 끝자락 삼각산에서 떨어져 나온 야트막한 산의 북쪽 기슭 넓은 대지에 큰 규모의 고택이 남도의 너른 들을 북으로 바라보면서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외간(外澗)으로 불렸던 이곳에 자리한 이 고택은 ‘영광 연안김씨종택(靈光延安金氏宗宅)’이라 칭해진다.¹⁾ 고종 5년(1868)에 안채를 상량한 기록이 있으나, 동학농민운동 당시 안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이후에 다시 지었다 한다. 5,000㎡의 넓은 대지위에 별도 건물만 12채, 125칸에 달하는 현재의 규모로 증축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이다.²⁾ 풍수지리상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 또는 학 형국이라고 일

1) “외간(外澗)”은 1914년의 군면 폐합 이전의 면명으로, 이후 외간면은 이웃한 마산면, 육창면과 함께 군남면으로 통합되었다.

2) 바깥대문은 14세손 김진과 19세손 김재명, 20세손 김함의 삼대가 효성이 지극하다하여 나라에서 세워준 정려문이다. 보기 드물게 2층 누각형대문으로 세워졌는데, 3인의 효행에 대하여 내려진 명정(命旌)을 모시기 위한 정문(旌門)을 대문 위에 누각으로 얹은 것으로, 3대의 효성을 기려 ‘삼효문(三孝門)’이라 한다. 종택 내부에는 서당이 존재하는데, 대청을 사이에 두고 동재와 서재가 있어 선생을 초빙해 집안의 자제나 마을의 학동들을 교육하였다 한다. 안채 맞은편에 있는 정면 9칸, 측면 2.5칸의 곳간채는 종택의 경제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외에도 행랑간과 창고 뒤편에 쌀 100가마니가 족히 들어갈 수 있는 비밀창고가 존재하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곡식 공출에 대한 대비로 제작한 공간이라 한다.

걸어지는 길지(吉地)에 넓게 북향으로 위치한 이 고택은 현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4호로 지정되어 있다.³⁾ 이와 같은 종택의 위치와 규모, 공간 구성은 물산이 풍부하고 전답이 기름진 남도를 배경으로 하는 종가의 경제력을 잘 보여준다.

연안김씨가 이곳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종택건물의 역사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김영(金嶸, 1540~1598)이 영광의 수령으로 부임해 온 중부 세공(世功, 1521~미상)을 따라와 영광 불갑면에 터를 잡았고 그 셋째 아들인 인택(仁澤, 1575~1666)이 현재의 위치인 당시 외간에 터를 잡아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연안김씨 내에서는 영광 외간에 자리한 일족을 ‘외간종중(外澗宗中)’이라 칭하고 있다.

영광 군남면 동간리의 연안김씨가문은 남도의 넓고 기름진 땅을 배경으로 400여 년을 현 지역에서 세거하여 왔다. 이 역사는 중앙과 지역사회에서 역사의 부침을 함께 해가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신장시키고 유지해 온 역사였다.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종택에는 조선후기로부터 근대에 걸치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남아있다. 종택에는 대대로 물려온 교지·관복·호패 등 100여점에 달하는 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생산된 4,300여 점에 달하는 문헌이 전해지고 있다.⁴⁾

3) ‘영광연안김씨종택(靈光延安金氏宗宅)’,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종택에 대해서는 “『중요민속자료(제234호) 기록화보고서 한국 전통가옥 영광 연안김씨 종택』, 문화재청, 2008년”에 실측과 더불어 자세한 해설이 소개되고 있다.

4) 해당 자료들은 1990년대 후반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조사, 수집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였다.(장서각 MF 35-009637~53, 9445~46) 그리고 그 가운데 660여 점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古文書集成 104)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I』(201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간행하였다. 해당 고문서집성에는 수록고문서뿐 아니라 연안김씨가 전적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 전체목록을 수록하고 있는 바, 자료의 현황은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안김씨가보다 자세한 내력과 문헌의 개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해당 고문서집성에 수록된 ‘拙稿, 『해제: 영광 외간(外澗) 연안김씨 종가의 가계와 고문서』, 『고문서집성 104.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I』, 2013, 韓國學中央研究院’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1> 영광 연안김씨 종택



① 삼효문(三孝門, 바깥대문)

② 사랑채 영역

③ 안채 영역

④ 안채

연안김씨가 문헌자료 가운데는 조선후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친 토지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문헌들이 상당량 현전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후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전통 양반 지주의 역동적 경제활동을 잘 보여 준다. 연안김씨는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공격적인 매득과 식리활동을 통하여 지주경영을 급격히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지주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위에서 자본의 확충과 상업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⁵⁾ 이와 같은 연안김씨의 적극적인 지주경영과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매득을 통한 토지의 확장과 지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연안김씨는 역동적인 경제활동 못지 않게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 확인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사인간 또는 관과의 적절하고도 확실한 문서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확고한 소유권의 확립은 지주경영과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

5) 연안김씨가 이와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조선말기 전라도 영광 연안김씨의 지주경영」(『한국민족문화』 56, 2015, 한국민족문화연구소)과 「일제강점기 영광 연안김씨의 농업경영과 자본전환의 모색」(『역사문화연구』 60, 2016, 역사문화연구소)를 통하여 정리한 바 있다.

서행위와 소유권의 확인행위는 19세기 후반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사회, 정치,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연안김씨가 지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해 갈 수 있는 배경이 된 중요한 지주로서의 덕목이었다.

주목할만한 연안김씨의 문서행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00년 경부터였다. 그리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그 적극적 대응모습을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토지거래와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보여지는 연안김씨의 구체적 문서행위와 그와 같은 행동의 배경이 된 사건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정태적이지만은 않았던 전통 양반지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능동적 태도와 그 연장선에서의 당시의 제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문서를 통하여 살펴보려 한다.

2. 한말의 전답매매와 문서 작성

당시 연안김씨의 경제활동을 주도한 인물은 金思衡(1830~1909)과 그의 손자 金鍾瑄(1870~1943)이다.⁶⁾ 특히 1900년대와 1910년대의 문서에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김종관이었다. 영조대 金煊(1716~1777) 이후 과거 및 관직과는 연이 닿지 않았던 연안김씨가문은 1885년(고종 22) 김사형이 繕工監 監役으로 관직에 진출하면서 다시 중앙 관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⁷⁾ 또한 그 손자 金鍾瑄이 9년 후인 1894년(고종 31) 조선왕조의 마지막 문과에 병과 29인으로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아갔다.

김사형은 이후 龍驤衛 副護軍, 敦寧府 都正을 거쳐 1905년(광무 9)에는 侍從院 副卿으로 勅任官 3등의 자리에 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당해 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중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⁸⁾

김종관 역시 조부와 유사한 사환이력을 지녔다. 벼슬은 翰林 學士, 弘文館 應敎, 奉常司 典祀事를 거쳐 당상관인 通政大夫 秘書監陞에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발하여 宋秉璿(1836~1905)이 <請討凶賊疏>를 올리고 고종을 알현하여 을사오적의 처벌과 조약의 폐기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한다.⁹⁾ 이 때 비서관 승으로 자리를 함께한 종관은 이 일을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나 사저에 머물다가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한말 우리의 역사와 부침을 함께한 사형과 종관의 사환이었으나, 이와 같은 중앙정계에의 사환경험은 지역사회에서 연안김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고 성장시키는

6) 사형의 아들이자 종관의 아버지인 赫基는 1897년(광무 1)에 사망하였다.

7) 사형이 관직에 나아가게 된 경위는 확실치 않으나 門陰이나 遺逸을 통하여 충원하였던 감역의 성격을 통해 볼 때, 문음을 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金思衡上疏草」, 장서각 MF 35-09447.

9)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2월 20일; 『고종실록』 47권, 43년 1월 18일.

주요 기반이자 경험이 되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대지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 성장시켜 나가는 데는 이 같은 중앙에서의 경험과 지위가 큰 힘이 되었음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 사형과 종관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연안김씨가 경제력의 기반을 놓고 성장시킨 당사자였다. 종택의 현재 모습 역시 이때에 이루어진 것인데, 1868년(고종5) 사형의 시기에 현재의 안채가 갖추어 졌고, 1942년 종관의 말년에 아래채를 세우면서 125칸에 달하는 현재의 종택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종택의 규모와 더불어 토지의 집적을 통한 대지주로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 졌다. 사형과 종관의 대에는 기존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매득과 식리(殖利)활동을 통하여 토지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종관의 전답매매 등 경제활동은 1900~1910년대 토지제도의 변화 및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라는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며 경제규모를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안김씨는 1907년에 100여 石落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사형과 종관의 매득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었다.¹⁰⁾ 연안김씨의 활발한 토지 매득은 현존하는 매매문서의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연안김씨에게 현존하는 매매문서의 가운데 1910년까지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 2>는 연안김씨가 매득주체인 전답매매문서를 1910년까지 매 10년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1910년 이전 연안김씨가 매매문서의 현황 (단위: 건)

| 구분 \ 연대 | 전답매매 | | | 산지매매 | | | 가사매매 | 기타매매 | 총합계 |
|---------|------|------|------|------|-----|-----|------|------|-----|
| | 본문기 | 구문기 | 합 | 본문기 | 구문기 | 합 | | | |
| 문서수 | 280 | 43 | 323 | 21 | 3 | 24 | 4 | 12 | 363 |
| 백분율(%) | 77.1 | 11.8 | 88.9 | 5.8 | 0.8 | 6.6 | 1.1 | 3.4 | 100 |

10) 해당 사실은 1907년(융희 1) 사형이 종관에게 토지를 상속하면서 작성한 衿給文記에 직접 언급되고 있다.(分財記 5, 『(古文書集成 104)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I』, 466쪽)

<표 3> 연안김씨가 전답매득의 시기별 현황

| 연대 | 매매건수 | | | 매득면적(두락) | | | 매득가격(兩) | | |
|-----------|------|----|-----|----------|-------|---------|----------|-------|----------|
| | 畓 | 田 | 합 | 畓 | 田 | 합 | 畓 | 田 | 합 |
| 1831~1840 | 1 | | 1 | 5.0 | | 5.0 | 55 | | 55 |
| 1841~1850 | 1 | | 1 | 19.7 | | 19.7 | 177 | | 177 |
| 1851~1860 | 3 | | 3 | 12.5 | | 12.5 | 71 | | 71 |
| 1861~1870 | | 1 | 1 | | 8.0 | 8.0 | | 83 | 83 |
| 1871~1880 | 5 | 4 | 9 | 22.0 | 10.0 | 32.0 | 398 | 89 | 487 |
| 1881~1890 | 8 | 6 | 14 | 29.7 | 20.5 | 50.2 | 210 | 118 | 328 |
| 1891~1900 | 47 | 9 | 56 | 448.7 | 38.0 | 486.7 | 11,024.4 | 198 | 11,222.4 |
| 1901~1910 | 169 | 26 | 195 | 2,007.5 | 128.9 | 2,136.4 | 61,637 | 1,786 | 63,423 |
| 총합계 | 234 | 46 | 280 | 2,545.1 | 205.4 | 2,750.5 | 73,572.4 | 2,274 | 75,846.4 |

표에서 알 수 있듯, 연안김씨의 토지매득은 기본적으로 전답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지주경영의 핵심인 답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시기별로 살펴볼 때 19세기 후반부터 전답의 매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890년대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사형과 종관의 중앙관직 진출이 이루어진 시기로, 이 때에 연안김씨는 매우 공격적인 토지획득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급속하게 성장해 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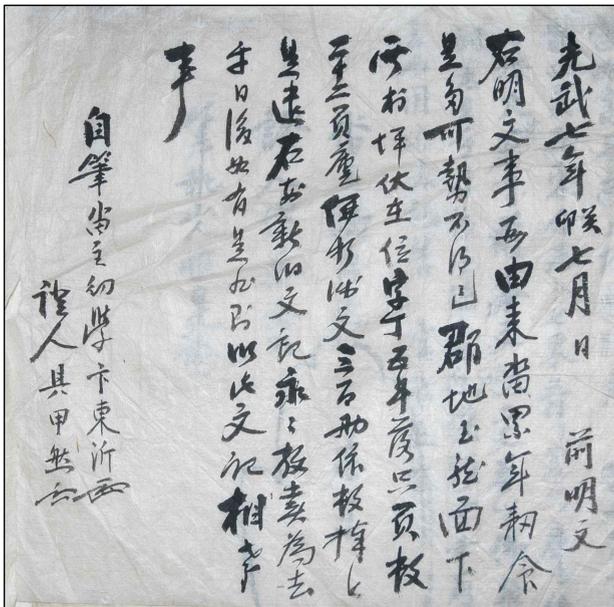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연안김씨의 지주경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유권 확보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¹¹⁾ 매매문서들을 검토하면, 토지소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연안김씨의 노력은 1900년 무렵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은 특히 새로운 전답의 매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1911년 무렵 매매계약서를 통한 토지매매가 본격화되기까지, 조선의 토지매매는 전통적인 매매문기의 작성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明文”이라고 일컬어지는 매매문기는 문서의 서두에 매매연월일을 쓰고 이어서 “(매득자) 前明文”이라 기록한 후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본문에는 우선 해당 토지의 취득경위(買得, 衿得 등)와 경영상황(耕食, 收稅 등)에 이어 매도사유(移買, 納稅 등)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재지(군현-면-동리-坪員)와 양안상 내용(字號와 地番, 四標, 結負數) 및 면적(斗落, 日耕 또는 夜味) 등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매매가를 기록하고, 관련문서(新·舊文記)의 지급여부를 기록한 후에 본문기를 통하여 매매사실을 증명한다는 진술을 기술함으로써 본문이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끝에는 토지주와 증인, 筆執이 각각 신분과 성명을 기록한 후 서명(手決, 手寸 등)을 함으로써 증거력을 갖게 되었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매매문기를 작성하였으며,

11) 한말 연안김씨의 지주경영에 대해서는 拙稿(2015)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본문기라 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거래나 상속 등으로 이미 작성되어 토지주가 가지고 있던 문기를 구문기라 하여 본문기와 함께 매수자에게 건네어 졌다.

이와 같은 매매관행은 1910년경까지 주된 매매방법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점차 간소화되면서 문기의 작성이 형식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양안상의 기록이 대폭 생략되면서 자호와 결부 정도만 기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토지의 유래와 경영 및 매매사유에 대한 정형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매매사유에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要用所致”라는 용어로 투식화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구문기에 대해서도 언급과 지급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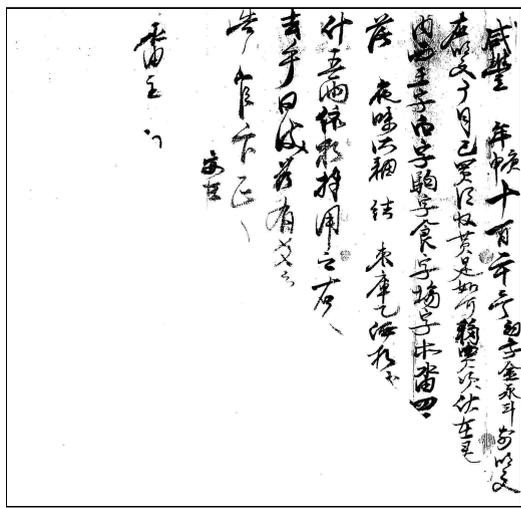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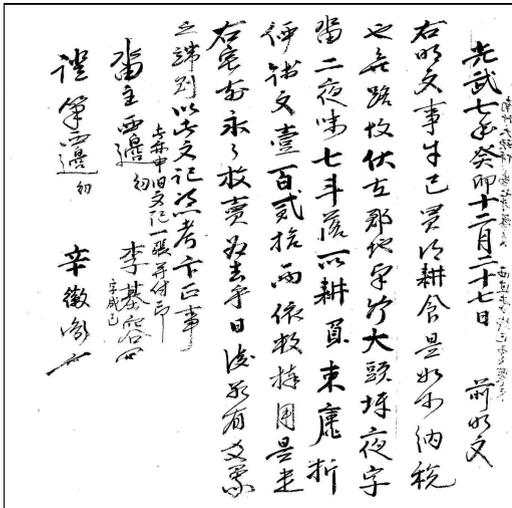
<그림 2> 1903년 순천지역의 전답매매문기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1903년 순천지역에서 답 5두락을 30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된 <그림 2>의 매매문서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토지의 유래에 대하여 단지 “由來畝”이라고만 표기하고 있어 그 기원이 자신의 깃득[衿得]인지, 아니면 妻邊이나 母邊인지 등을 알 수가 없다. 매매사유에 대해서도 “요용소치”는 아니나 “勢不得已”라 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토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소재지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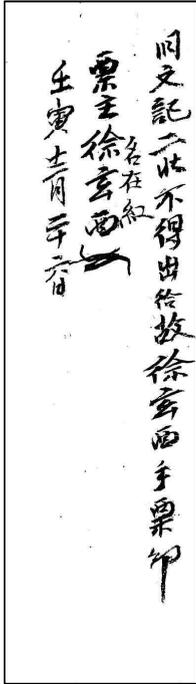
12) 조선후기 土地賣買明文의 내용이 점차 투식화하면서 간소화되어가는 경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정수환·이현창, 「조선후기 求禮 文化柳氏家の 土地賣買明文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33, 韓國古文書學會, 2008;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蔡賢耕, 「조선후기 土地賣買明文의 보존관리와 교부방식 연구 - 호남지역 고문서를 중심으로 -」,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호, 두락, 결부만을 기록하였고, 구문기에 대해서도 단지 “新舊文記永永放賣”라 하고만 기록하여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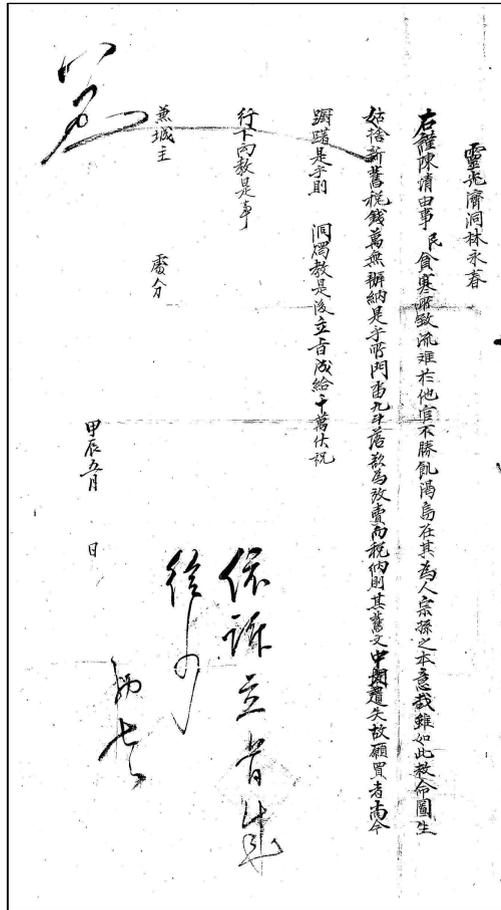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매매관행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안김씨, 특히 종관의 토지매매는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의 <그림 3>는 1903년 유학 이기용으로부터 남죽면의 답 7두락을 120냥에 매득하면서 작성한 전답매매문기이다. 이를 보면 토지의 유래에 대해서는 “自己買得”, 경영에 대해서는 “耕食”, 판매사유에 대해서는 “納稅無路”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토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양안상의 기록이 생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의 <그림 2>에 비하면 夜味기록이 확인된다. 그리고 구문기에 대해서는 본문이 끝나고 별도의 행에 “舊文記一張并付”라 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연안김씨가의 매매문기 작성은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양식에 있어서는 거의 대다수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1903년 연안김씨가의 전답매매문기 (장서각 MF 35-9637) <그림 4> 필지를 분할 매득하면서 반으로 잘라 수령한 구문기 (장서각 MF 35-9638)



<그림 5>
구문기를
대신하여
작성한
手標
(장서각
MF
35-9638)



<그림 6>
1904년
전답매매를
위하여
발급받아
구문기로
건네진
立旨
(장서각
MF
35-9638)

특히 구문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과 같이 구문기를 인수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本無”, “遺失 / 闕失”, “他文記并付 / 都文記并付” 등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필지를 분할하여 매득하는 경우 <그림 4>와 같이 구문기를 대각선으로 斜割하여 첨부하거나,¹³⁾ <그림 5>과 같이 구문기를 내어 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手標를 작성하

13) 이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 구문기를 잘라서 건네주는 경우는 대각선 방향과 수직 방향의 분할이 존재한다. 채현경은 이들 문서를 斜割舊文記와 半割舊文記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보성 제주량씨가와 구례 문화유씨가, 영광 영월신씨가의 가전 고문서 및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원광대학교 박물관 등의 소장 고문서 등에서 발견된다.(채현경, 앞의 논문 및 『寶城 濟州梁氏家の 토지매매명문 검토』, 『조선 후기 호남의 경제와 사회』,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 2011)

거나, <그림 6>과 같이 구문기를 대신하여立旨의 발급을 요구하여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구문기의 철저한 확인은 새로이 매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종관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토지의 매득과 문서의 작성에 있어 종관의 철저함은 證參에서도 드러난다. 매매문기의 작성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방매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형제 등 친인척의 증참은 물론, 면장이나 동·이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답의 매매에 있어 居間이 존재할 경우 거간을 증참으로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동일한 전답의 매매에 대하여 모자를 각각의 대상으로 2건의 매매문기를 작성하여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는 1903년 영광 현내면 윤씨가로부터 삼남·삼북면 일대 답 5처 4석14두락을 2,600냥에 매득하면서 발생하였다. 윤씨는 가장의 사망 후 장례로 인한 積債와 흉년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해당 전답을 방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종관은 亡夫妻 오소사와 그 아들 윤흥석을 대상으로 각각의 매매문기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는 거래규모가 큰데다가 가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막고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관은 이렇게 본문기의 철저한 작성은 물론 구문기에 대한 확실한 처리를 통하여 매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토지매매문서를 살펴보면 본문기와 구문기의 매매문기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행위에 대한 문서들이 첨부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첨부되는 문서가 수표였다. 이 수표는 전답의 방매가에 대한 수령을 확인하는 문서로, 주로 전답의 방매자가 작성하여 종관에게 건네어 졌으며, 그 외에 방매자의 대리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간이 작성하기도 하는 등 실제 금액을 수령한 당사자가 작성하였다. 납세를 위한 토지의 방매에서 자주 확인되는 소토지 자작농이 토지를 방매하고 자신은 해당 토지의 작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병작의 계약에 대한 수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하였다. 반면 대규모의 토지매매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작인과 도조액 등이 기록된 전답치부를 첨부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다음의 <그림 7>~<그림 9>는 1904년 김봉우로부터 원산면의 답 4처 18두락을 430냥에 전 4처 10두락을 120냥에 매득하면서 작성된 문서들로, 이러한 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종관은 이 때 전과 답에 대한 매매문기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림 7>은 그 중 전의 매매문기로 3월 14일에 작성되었다. 문서의 작성에 참여한 이 가운데 증인의 김학중은 다른 야닌 이 거래를 중개한 거간이었다. 그리고 <그림 8>은 전답을 방매한 김봉우가 전답가 중 400냥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두달 후인 5월 16일에 작성되었으며, 거간 김학중의 언급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9>는 김봉우가

방매한 전답 중 전 10두락에 대하여 소작계약을 맺은 수표로, 5월 8일에 작성되었다.

大韓光武元年 三月十日
 在野文亭 自己 田 10 畝 耕 舍 量 雖 可 要 用 以 存 飯 依
 至 先 山 而 平 右 之 田 係 匪 田 且 年 為 耕 入 貧 康 是 立
 右 右 田 係 年 田 且 年 為 耕 三 自 康 化 守 性 年 且 年
 且 年 耕 三 自 康 化 守 性 年 且 年 耕 三 自 康 化 守
 田 係 年 田 係 年 田 係 年 田 係 年 田 係 年 田 係 年
 以 耕 化 文 文 永 教 費 為 多 乎 日 故 也 有 推 為 裁
 契 則 以 此 文 在 野 文 亭 年

田 元 山 五 石 全 鳳 儀 二
 權 人 山 吉 規 全 夢 仲 者
 掌 執 山 南 漢 鄭 子 善 其

<그림 7> 1904년 김봉우가 전 10두락을 방매하
 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장서각 MF 35-9638)

甲辰年正月十日
 牛落佃肆面兩掉上叩
 穡者南漢洞坪皆十八年落男田十
 全鳳儀書
 居同穡者田金季中掉云

<그림 8>
 김봉우가
 전답가
 400냥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수표
 (장서각
 MF
 35-9638)

甲辰年正月十日
 牛落佃肆面兩掉上叩
 穡者南漢洞坪皆十八年落男田十
 全鳳儀書
 居同穡者田金季中掉云

<그림 9>
 김봉우가
 소작계약을
 맺으며
 작성한
 수표
 (장서각
 MF
 35-9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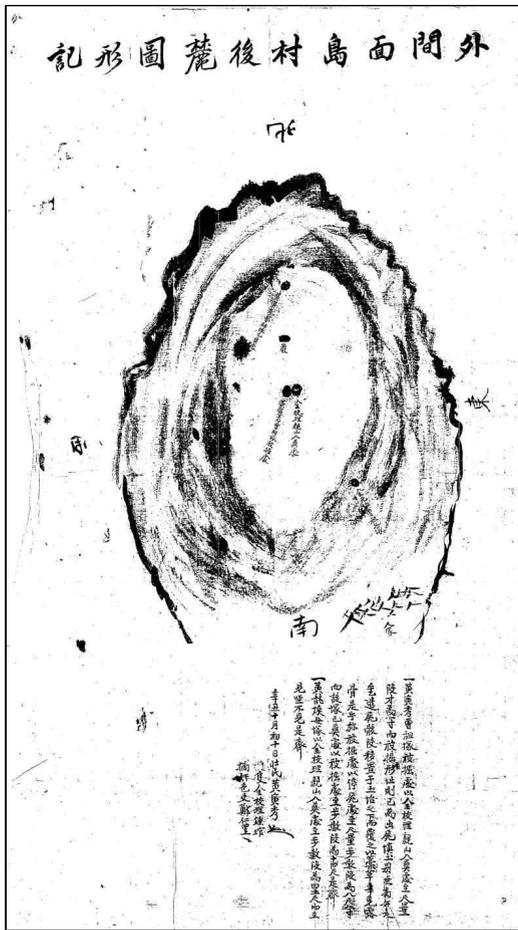
이와 같은 종관의 토지매매와 문서의 확보노력은 당대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임은 물론, 이후 진행될 토지조사사업과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자신의 배타적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조사사업 이전시기, 전통적 매매관행 속에서의 견고한 소유권 확보와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물론, 이후의 지주제 강화와 경영에서의 발빠른 대응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1905년까지 중앙관직에서 활동한 경력이 종관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 시기는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근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시기였다. 그 정책 중에는 재정의 확보와 부세제도의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양치아문과 지계아문에 의해 추진된 양전사업과 지계발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01년에 시작하여 이듬해까지 진행된 황인수와의 山訟도 종관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연안김씨가 토지매매문기를 검토할 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미 살핀 바와 같은 매매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1901년 황인수와의 산송 사건

황인수와의 산송은 외간면 島村의 산지를 둘러싸고 황인수 등 황씨 일족과 종관 등 연안김씨 일가에서 벌어진 소유권 분쟁으로, 양자가 모두 해당 산지가 자신의 선조를 모신 선산이며 상대방이 투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소송의 과정에 관의 실측을 통하여 작성된 <그림 10>의 圖形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안김씨가와 황씨 일족의 분묘는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었다. 그 거리만큼이나 치열하게 전개된 양측의 소송전은 관련 매매문서와 소송문서 등 연안김씨 측의 문서와 더불어 황인수 측의 관련문서도 합하여 30여점이 현전하고 있어 그 전모를 알려주고 있다.



<그림 10> 外間面 島村後麓 圖形(중앙의 두 점이 각각 연안김씨과 황씨 일족의 분묘이다. 장서각 MF 35-9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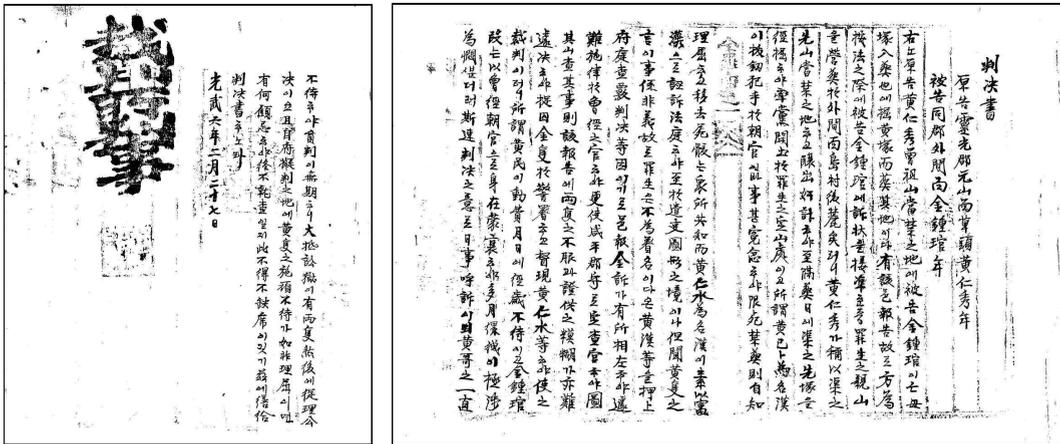
사건은 1901년 10월 무렵, 도촌의 亭嶺에서 무덤을 이장하려 하는 종관 등 연안김씨가와 묘소를 이장해 나가려 하는 황인수 등 황씨일족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종관은 당시의 황씨일족의 행위를 투장으로 간주하였고, 황씨일족의 일꾼들을 결박하여 구타하고 즉시 무덤을 들어내도록 겁박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황인수 등은 김교리덕에서 권세를 앞세워 자신들을 겁박한다며 영광관아에 소를 제기하였고, 종관 역시 이에 대응하여 소장을 올리게 된다.

황인수 등은 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산지가 자신의 증조가 모셔진 곳으로, 이미 예전부터 자신들의 선산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1851년 당시 해당 산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씨일족의 장손 김달철과 차손 김석룡을 산지주로 하여 황씨일족인 유학 황종혁이 143냥에 해당 산지를 매득한 것을 증명해 주는 산지매매문기를 증거문서로서 제출하였다. 반면 종관 등은 해당 산지가 대대로 자신들의 선산으로 산직을 두어 守護禁養해 온 곳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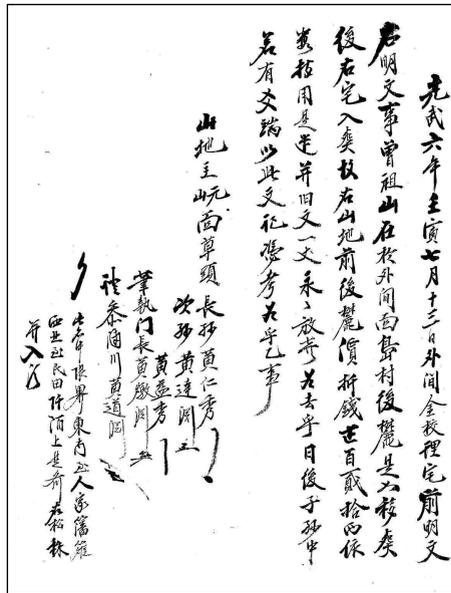
소송은 原隻을 바꿔가며 영광군수와 관찰사, 평리원까지를 몇 차례씩이나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황인수 등은 산지문기를 근거로 영광군수, 관찰사, 평리원에 걸쳐 김종관의 무력행위와 투장에 대한 처벌 요청하였다. 그리고 종관 역시 황인수 등이 자신의 산지에 투장했다고 주장하며 영광군수, 관찰사, 평리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다른 한편 자신에게 유리한 함평군에도 소장을 올려 영광이 아닌 함평에서 도형을 적간하도록 시도 하기도 하였다.

한 때 관찰사로부터 황인수 등을 잡아들이라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패소한 것은 종관이였다. 심지어 종관은 이로 인하여 1902년 정월에 투옥되는 상황까지도 맞이 하게 되었으며, 황인수는 연안김씨에게 무덤 이굴 및 소송비용 보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은 양 측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일단 평리원의 최종판결을 통하여 본래 황씨일족의 산지로, 황인수의 증조부를 장사지낸 이후 연안김씨가에서 종관의 亡母 분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종관은 망모의 무덤 인근의 산지에 대하여 황인수로부터 120냥에 매득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산송의 판결과 뒤이은 합의에 따라 황인수 등은 산송과 관련한 전후 문서들을 김종관에게 넘김으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되게 된다.



<그림 11> 황인수의 소에 대하여 재판소 판사가 내린 판결서 (장서각 MF 35-9637)



<그림 12> 황인수가 김 종관에게 산지를 방매하는 매매문기(장서각 MF 35-9637)

이 사건에서 종관은 해당 산지가 이미 자신의 조상이 묻혀 있던 곳으로, 산직을 두어 오랜 기간 관리해 온 선산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황인수가 “金校理宅”이라고 칭하고, 朝官으로서의 권세를 언급한 것처럼 중앙관리였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소의 관할을 함평으로 옮겨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패소하였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황인수 역시 해당 산지가 이미 자신의 증조부를 모셔온 선산임을 주장하였다. 비록 종관이 “富民”이라 칭하기는 하였으나, 소장과 판결문들을 검토할 때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종관과 연안김씨가에 비해서는 한미한 위치에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알아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진다.

황인수 측의 소유권을 확인함에 있어, 당사자의 심문과 관계자들의 증언, 현지의 조사와 도형의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 졌다. 여기에는 증빙문기의 역할도 주요했으리라 보이며, 이 지점에서 황인수가 제시한 1851년의 산지매득문기가 힘을 발휘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산송의 진행과 결과는 종관에게 소유권의 확인과 이를 위한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주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4. 1910년 전후의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

이미 살핀 종관의 토지매득과 관련문서의 확보양상을 통해 볼 때, 종관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김씨가에 있어 토지조사사업과 당대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토지조사사업 등의 목적과 결과가 배타적 소유권의 제도적 확립과 긴밀히 관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권의 확보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던 종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러한 정황은 당대에 작성되어 전해지는 여러 매매와 증명문서 등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1910년대에 작성된 문서들을 검토해보면 토지조사사업은 물론, 이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이나 <과세지건취도>의 작성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문서들을 다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서의 존재는 당대의 제도적 변화 등에 대하여 종관과 연안김씨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쉽게 적응해 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제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보호국화를 추진해나가던 1906년 무렵부터 일제는 <토지가옥증명규칙>¹⁴⁾이나 <토지·가옥의 매매·교환·양여·전당에 관한 법률>¹⁵⁾ 등을 통하여 조선의 토지와 가옥 등 부동산의 매매를 위한 제도들을 제정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의도 자체가 일본인을 염두에 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외국인과의 거래나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에 제한적으로 시행될 따름이었다. 조선인간의 거래,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매매문기의 작성을 통한 매매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종관이 중심이 된 연안김씨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정계의 경험과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전통적인 매매문기와 수표의 작성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매매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인 1911년 무렵이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매매문기의 작성이 감소하는 대신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1913년 무렵이면 거의 완전히 대체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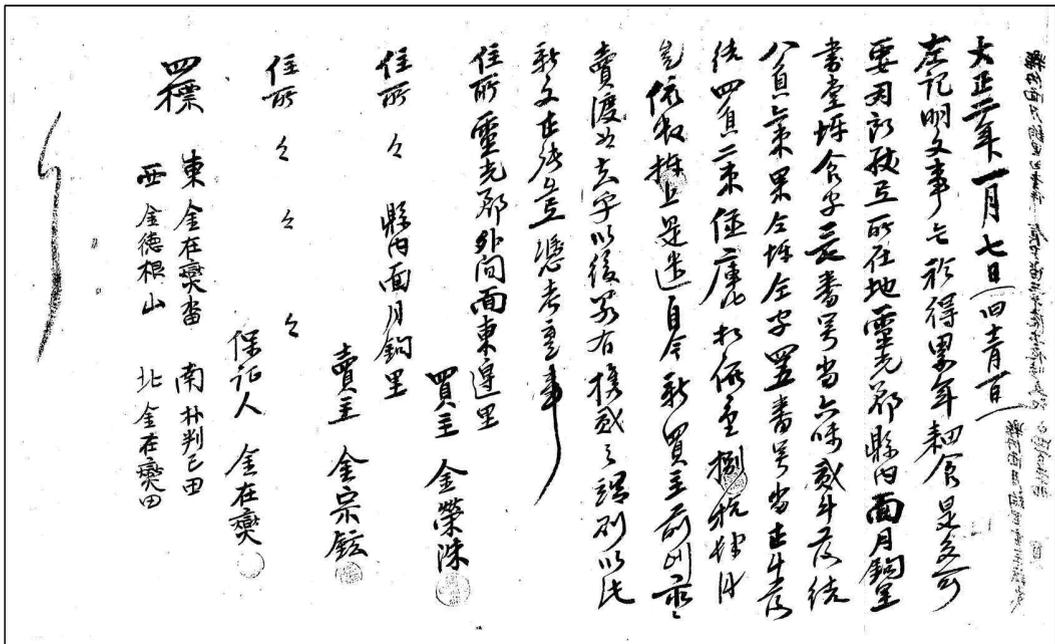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이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시작되고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전통적인 매매문기가 그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서가 제도로서 제시되었고 동장의 보증참여 및 부군청에의 제출과 확인이라는 소유권의 공적 보장이로서의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안김씨의 전통적인 매매관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매매문서가 존재한다. 1913년 1월 7일, 연안김씨는 김영수(金榮洙)를 매득주체로 하여 金宗鉉으로부터 縣內面 月鉤里 書堂坪의 食字 37畝 2두락

14) 「法部令 第4號 土地家屋證明規則」, 『官報』光武 10年 11月 30日.

15) 「法律 第6號 土地·家屋의 賣買·交換·讓與·典當에 關한 法律」(1906년 10월 16일),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V, 273~4쪽.

과 45畓 1두락을 84円에 매득하였다.¹⁶⁾ 이에 대하여 매매당사자들을 두 건의 매매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그림 13>으로 전통적인 매매문기의 양식과 유사한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림 14>로 정형화된 매매계약서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날, 동일한 매매당사자 및 보증인이 동일한 매매건에 대하여 신·구 양식의 각각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통적인 매매문기를 함께 작성하는 것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온 강력한 소유권 증명 문서로서의 매매문기의 역할을 새로운 매매계약서로 대체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13> 김종현이 김영수에게 답을 방매하는 매매문기 (장서각 MF 35-9638)

16) 영수는 종관의 장자인 昌永(1898~1964)의 字이다.

北

| | |
|--------|---|
| 一 土地所在 | 全南靈光縣西面月鈞里 |
| 一 番号 | 食 |
| 一 地目 | 番 |
| 一 面積 | 二畝 六味 |
| 一 統數 | 八六 |
| 一 四標 | 東 全在樂番 南 本人番 西 全在樂番 北 全在樂番 極標 極身也 |
| 一 價格 | 左道 全副 全面 全里 |
| 一 土地所在 | |
| 一 字 | 食 |
| 一 番号 | 四五 |
| 一 地目 | 番 |
| 一 面積 | 一畝 五味 |
| 一 統數 | 四二 |
| 一 四標 | 東 全在樂番 南 本人番 西 全在樂番 北 全在樂番 極標 極身也 |
| 一 價格 | 左道 全副 全面 全里 |

前記表示土地賣買代全全部領受不
但保能先正權引保能引為中保人引茲引署在孫所矣

大正三年一月七日

全南靈光縣西面月鈞里

賣主 全榮珠

買主 全榮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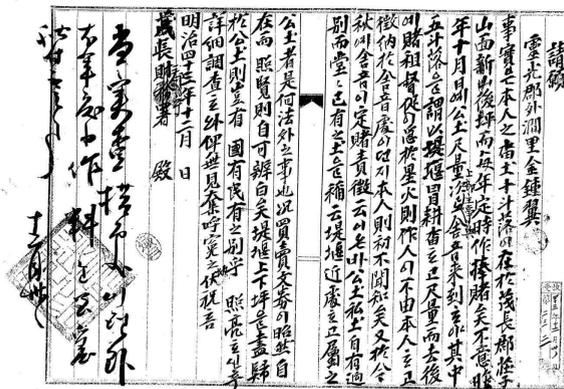
縣西面月鈞里

保証人 全在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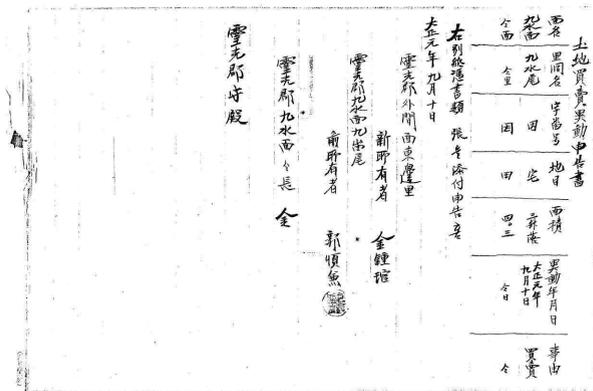
縣西面月鈞里全榮珠賣買契書

<그림 14> 김종현이 김영수에게 답의 방매하는 토지매매계약서 (장서각 MF 35-9638)

1909년에는 역둔토조사의 와중에 무장군 장자산면에 소재한 답 5두락이 공토로 편입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답 10두락을 시작을 주어 경작해 왔는데, 1909년 10월에 公土測量을 하러 온 마름[舍音]이 그중 5두락을 堤堰冒耕畝으로 측량하고 작인에게 도조 1석 10두를 성화같이 독촉하니 이에 작인이 연안김씨가에 허락받지도 않고 도조를 납부하였다. 이후 1910년에 다시 마름이 도조를 정하여 징수를 하려 하니, 이에 사실을 알게 된 연안김씨가에서는 <그림 15>와 같이 종관의 아우 鍾翼과 작인 丁明叔의 명의로 각각 관청에 청원을 하였다. 이때에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매매문권이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매매문기와 기타 증빙문서들을 보유하고 이를 통하여 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매매계약서와 더불어 여전히 매매문기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15> 김종익이 무장군수에게 올린 청원서 (장서각 MF 35-9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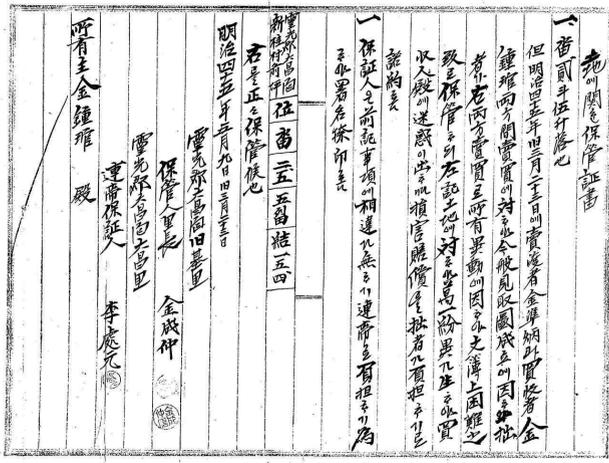


<그림 16> 토지매매이동신고서 (장서각 MF 35-9638)

연안김씨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매매문기의 작성을 통하여 토지를 매득하곤 하였지만, 이제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공적인 확인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종관은 매매당사자간에 매매문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그림 16>과 같은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매매문기와 해당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公簿상의 소유자의 이동을 신고, 수정하였다.

1912년 음력 3월 23일에 종관은 김준병으로부터 육창면의 답 2두5승락을 매득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매매문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과세지권취도를 작성하던 시점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동이 文簿상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종관은 이를 뒤로 미루고, 대신하여 매매사실과 매매문기의 확인을 보증, 보관하는 <그림 17>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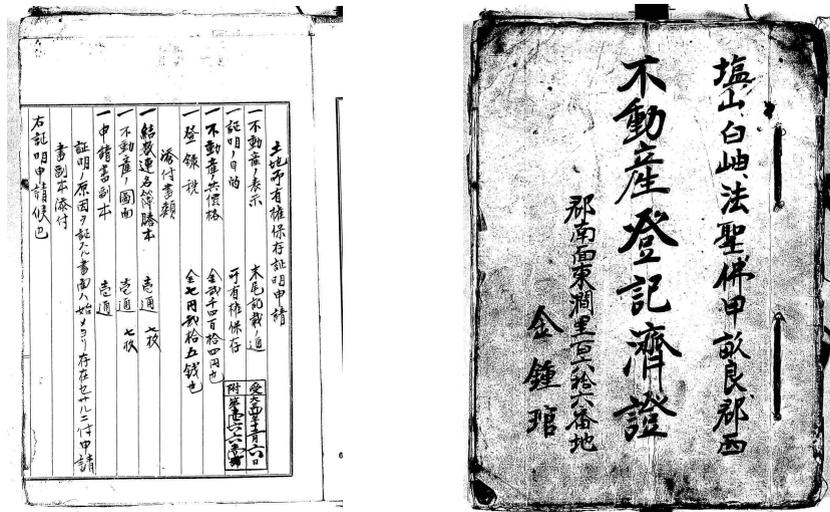
서를 이장으로부터 작성하여 수령하였다. 그리고 해당 매매는 이듬해인 1913년 3월 28일 김준병과 종관간에 새로운 매매문기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당시 연안김씨가 토지매매가 단지 개인간의 문기 작성과 지급에 그친 것이 아니라, 公簿의 수정과 확인까지를 거침으로써 공적으로 확고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과세지권취도의 작성을 비롯한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7> 이장이 김종관에게 지급한 보관증서 (장서각 MF 35-9638)

과세지권취도의 제작 뿐 아니라 이후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도 연안김씨는 소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 시기에도 지속적인 토지의 매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새로이 매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현재에도 연안김씨에게는 이와 관련한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서>나 <토지매매증명신청>, <토지소유권이전증명신청> 등의 다양한 문서들이 다량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⁷⁾

17) 장서각 MF 35-9643~7 참조.



<그림 18> 『부동산등기제증』(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철, 장서각 MF 35-9453)

특히 1910년대 후반에 수행한 영광 일대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의 증명을 득한 서류들은 『不動產登記濟證』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철해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 묶여진 서류들은 크게 세 종류로,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書>와 <土地表示變更登記申請書>, <各義人表示更正登記申請書> 및 첨부서류들이다.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은 1915년, 1916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토지소유권보존증명은 김종관의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으로, 이미 1913년에 진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갱신과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증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1915년에는 염산면에 소재한 32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증명을 신청하였다. 결수연명부등본과 부동산도면을 첨부하였고, 이와 함께 1913년에 이미 봉산면 소재 토지로 소유권보존증명을 받았던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부본을 함께 첨부하였다. 1916년에는 군서면과 묘량면, 백수면, 불갑면, 진양면에 소재한 41개 필지의 소유권보존증명을 신청하였다. 역시 결수연명부등본과 부동산도면을 첨부하였으며, 1913년에 이미 금마면 소재 토지로 소유권보존증명을 받은 14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부본을 함께 첨부하였다.

1919년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과 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이미 소유권보존증명을 받았던 지역인 군서면과 묘량면, 백수면, 법성면(구 진양면), 불갑면, 염산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수는 더 늘어나 토지표시변경은 111필지, 명의인표시경정은 116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토지표시변경은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의 결과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의 단위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정전과 지번, 두락과 사정후의 지번, 坪을 기록하여 증명을 받았다. 명의인표시경정은 1915년과 1916년 소유권보존신청 당시 잘못된 명의인의 주소를 바로잡기 위한 것과,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번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연안김씨가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주소지번의 변경, 토지면적단위의 변경 등 과정상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관의 증명을 받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5. 맺음말

연안김씨는 1900년대에 100여 石落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사형과 종관이 매득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었다. 연안김씨의 토지매득은 특히 1890년대 이후에 집중되었는데, 이 시기는 사형과 종관의 중앙관직 진출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토지소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연안김씨의 노력은 1900년 무렵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1900년대 중엽까지 중앙관직을 역임한 경험과 더불어 1901~1902년에 발발한 황인수와 의 산송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황인수에 의해 “金校理宅”이라고 칭해지고, 朝官으로서의 권세까지 언급되고 있음에도 종관은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심지어는 투옥되는 수모를 당했다.

황인수는 종관이 비록 “富民”이라 칭하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한미한 위치였다. 그렇지만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내면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황인수 측은 당사자의 심문과 관계자들의 증언, 현지의 조사와 도형의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증명해 갔으며, 특히 1851년의 산지매득문기 등의 문서가 힘을 발휘했다. 결국 황인수와 의 산송을 겪으면서 종관과 연안김씨는 소유권의 확인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안김씨의 소유권과 문서에 대한 중시는 전답을 매득하면서 작성한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매매관행은 1910년경까지 내용이 점차 간소화되면서 문기의 작성성이 형식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안김씨의 토지매득 작성한 문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구문기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게 확보 또는 확인해 나갔다. 구문기의 철저한 확인은 새로이 매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토지의 매득과 문서의 작성에 있어 철저함은 證參에서도 드러났다. 방매자와 이해관계에 친인척의 증참은 물론, 면장이나 동·이장의 확인을 받기도 하였으며, 거간을 증참으로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대금수수시의 수표를 비롯하여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행위에 대한 문서들을 첨부하여 매매와 소유권의 획득을 거듭 확인하였다.

일제의 조선식민화와 함께 진행된 토지조사사업과 제도적 변화들에 대한 연안김씨가

의 대응도 상당히 치밀했다. 토지조사사업 등의 목적과 결과가 배타적 소유권의 제도적 확립과 긴밀히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기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연안김씨가에서 문서들을 보면 토지조사사업은 물론, 이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이나 <과세지건취도>의 작성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매우 적절하게 다량으로 작성,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서의 존재는 당대의 제도적 변화 등에 대하여 종관과 연안김씨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쉽게 적응해 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1910년 이전 종관의 토지매매와 문서의 확보노력은 당대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임은 물론, 이어서 진행될 토지조사사업과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자신의 배타적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조사사업 이전시기, 전통적 매매관행 속에서의 견고한 소유권 확보와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물론, 이후의 지주제 강화와 경영에서의 발빠른 대응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었다. 다시 말 해, 연안김씨의의 적극적 문서행위를 통한 소유권의 제도적 공고화 노력은 한말~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기에 지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가는 한편, 상업자본 등으로의 자본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참고문헌】

-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및 古書(장서각 MF 35-009637~53, 9445~46)
『(古文書集成 104)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I』,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3.
『延安金氏族譜』 1~20, 延安金氏譜所, 1913
『고종실록』
『중요민속자료(제234호) 기록화보고서 한국 전통가옥 영광 연안김씨 종택』, 문화재청, 2008.
-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정수환·이현창, 「조선후기 求禮 文化柳氏家の 土地賣買明文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33, 韓國古文書學會, 2008
蔡賢耕, 「寶城 濟州梁氏家の 토지매매명문 검토」, 『조선 후기 호남의 경제와 사회』,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2011.
蔡賢耕, 「조선후기 土地賣買明文의 보존관리와 교부방식 연구 -호남지역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허원영, 「해제: 영광 외간(外澗) 연안김씨 종가의 가계와 고문서」, 『고문서집성 104.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I』, 韓國學中央研究院, 2013.
허원영, 「조선말기 전라도 영광 연안김씨가 지주경영」, 『한국민족문화』 56,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허원영, 「일제강점기 영광 연안김씨가 농업경영과 자본전환의 모색」, 『역사문화연구』 60, 역사문화연구소, 2016.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이현주(장서각 선임연구원)

< 목 차 >

1. 서론 : 해남윤씨가 8대 종부의 탄생
2. 외로운 종부 광주이씨의 종가살이
3. 광주이씨의 정체성 찾기
4. 절망의 순간 시모에게 보내는 지원의 메시지
5. 결론 : 해남윤씨가 후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은 한살할머니

6. 서론 : 해남윤씨가 8대 종부의 탄생

이 글은 해남윤씨가 8대 종부인 광주이씨의 사례를 통해 유교적 종법제도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끝자락인 19세기 격변기에 가문 경영의 주체로서의 종부의 실질적 지위가 어떠했으며 그 지위가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한글편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해남윤씨가 8대 종부인 광주이씨(1804년-1863년)는 세조대에서 연산군 대에 권신이었던 광원군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의 후손이다. 그녀는 선조들이 광원군 이래 세거해 오던 전남 보성군 대곡에서 출생해 성장했다.

광주이씨는 순조20년 나이 17세 되던 해에 해남윤씨가로 출가했다. 부인보다 한 살 아래이던 남편 윤광호(尹光浩)는 해남윤씨가 8대 종손이었다. 이들의 혼인은 그 당시 손꼽히는 두 명문 가문이 혼인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됨을 의미했으며 해남윤씨가 8대 종부의 화려한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남윤씨가 종부로서의 광주이씨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광주이씨가 1834년(순조 34년) 30세 되던 해에 시어머니에게 쓴 장문의 편지 한 통을 통해 그녀가 험난한 여정을 거쳐 해남윤씨가 8대 종부로서 명실상부한 종부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광주이씨와 혼인한 남편 윤광호는 결혼한 해 봄에 불행히도 요절하고 만다. 광주이씨

의 글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남편 면목(面目)도 아디 못 유언(遺言)을 드러스오리잇가. 세상을 잡아짜 열 가디 한 가디 인유(仁柔)¹⁾의 충수(充數)²⁾의 드들 못호올 인싱이오며 성인(成人)호온디³⁾ 달 수논 삼 삭이오디 불과 날 수논 오십 일이오나 오순(五旬)도 미거미거흔⁴⁾ 심신(心身)의 조화흔 모습 이 업다 이 모양 이 신세 되오니 엇디 고고(孤苦)이 원운(怨運)이 궁양(穹壤)⁵⁾의 스못초올 썩⁶⁾ 천디(天地)를 쭈를 듯 아모리 싱각호온들 세상의 머물 쓰시 잇스오리잇가

[남편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유언인들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 열 가지 중 한 가지 인유(仁柔)의 충수(充數)에도 들지 못하는[인유함으로 그 수효를 채우지 못할] 인생이며, 혼인한지 달수로세 달이지만 불과 날 수로는 오십 일이오나, 오십 일도 철이 없는 심신이 조화로운 마음이 없다가 이 모양 이 신세가 되오니 어찌 외로운 원운이 하늘과 땅에 사무칠 뿐 천지를 뚫을 듯 아무리 생각한들 세상에 머물 뜻이 있겠습니까]

광주이씨는 신행도 하기 전 친정에서 남편의 부음을 들었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대로 혼인을 한 지는 3달이지만 날 수로는 50일에 불과했다. 그러니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광주이씨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천지를 뚫을 듯 아무리 생각한들 세상에 머물 뜻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세상을 버리고자 수일간 음식을 끊었다고 한다. 이 때 시숙들이 광주이씨의 죽음을 만류했다.

(2) 조부 디각이 순전(純全) 업습기 당돌이 죽기를 버린 후는 숨 갑시 두 식[격]삼촌 계오서 [격]윤씨 십이디 종가 명문 사당 산소 우마장이 원통호고 삼십 와가(瓦家) 끄대 밧시 아니 되기 자에게 잇고 저 불상불상호신 아즈머니 자에 업스면 엇다 의디(依支)호여 부디(扶支)호실 터이며 나논 명 저룬 족하 성장호여 귀흔 딥 쫄 싱으로 공현 죽계 돌이가 업스며 원귀(冤鬼) 되리란 말슴 몇 번 호시며 조부 먹으면 좁스 시려노라 업플 쪼나디 아니시고 과도이 말슴이 우리 형제 명이 조에게 이시니 우의 [격]어마님 계시고 아리 썩리이리나 싱각호여 보라 호습시며 아모조록 살나 호시고

1) 인유: 인유(仁柔). ‘인유’는 ‘인유하다(어질고 부드럽다)’의 어근이다.<표준국어대사전>
2) 충수(充數): 일정한 수효를 채움. 또는 그 수효를 뜻함.<표준국어대사전>
3) 성인호온디: 성인(成人)하진. ‘성인호-’는 ‘성관하다’(관례(冠禮)를 행하다)와 같은 말이다.
4) 미거미거흔: 미거미거(未舉未舉)흔. ‘미거(未舉)하다(철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의 어근이 중복된 형식이다.
5)穹壤(궁양): 하늘과 땅<표준국어대사전>
6) 스못초올 썩: 사무칠 뿐. ‘스못초올’의 ‘스못-’(通)은 중세국어에서 “통하다” 또는 “궤뚫다”, “사무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말씀이 자네 죽는 대로 버려둔즉 자네 답의셔난 은총을 노을 거시니 절단코 린경(7)을 보다 싱스로 만단(萬端)으로 가유가유(家諭家諭)호옵시되(8) 듣는 듯하다도 싹갑비원역(9) 살 쓰시 업셔 호오니 두 분 오히려 밋디 야닌가 술 국리 디속호옵신 모습구디 밋게 보이시려 모습도 잡게시리 환생 속 무시(無時)가 여러 가디 비원(悲願)을 기록하여 주시고 천방백계(千方百計)로 천하(天下)의 퍼이게시리 가유(家諭)호옵시기 즈부 팔즈 기험(崎險)(10) 무시무시호오디 천성(天性)은 초독(峭毒)지(11) 못호오나 절단코 스스로 명을 딛(盡)코져 세상의 머물 고디 험가지도 업습더니 즈부 만 거술 저디(著大)디(12) 만 가디로 가유(家諭) 혀가 달라질 듯 심신이 상호옵시게 저리호옵시니 내 원역(冤抑)만 심각하고 압 못 보논 썰도 업손 식어마님 두 분 식삼촌 명환(命頑)이 즈부게 밋였다 누츠 호옵시니 도로혀 놀납고 몸을 버린 중도 황공황공(惶恐惶恐)호옵기 즈부 말씀이 일러나도 종가(宗家)의 호발(毫髮)도 유조(有助)치 못호옵고 어마님피 야즈바님 한가디 뜻 밋디 못호올 인성(人生)이라 송장으로 누어 엿조오니 벽만 지고 안져도 명(命)만 디여달나 호옵시며 [격]쥬상 말씀?디 호여 계신 줄 엿디어마님 다 아오시리잇가

[자부의 지각이 순전히 없기에 당돌이 죽기를 버린 후에는 목숨 값이 두 시삼촌께서 “윤씨 12대 종가 명문 사당 산소 우마장이 원통하고, 30칸 기와집 썩대밭이 되지 않기는 자부에게 달려있고 저 불쌍불쌍하신 아주머니 자부 없으면 어디다 (인생)을 부지하실 것이며 나는 목숨 짧은 조카 성장하여 귀한 집 딸 생으로 공연이 죽게 둘리가 없으며 (차라리 내가) 원귀(冤鬼) 되리라”는 말씀 몇 번이나 하시며 자부가 먹으면 (시속도) 잡수시려다. (하시며)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과도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제 목숨이 자부에게 (달려) 있으니 위로 [격]어머님 계시고 아래로 딸이라 생각하여 보라” 하시며 “아무쪼록 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네 죽는 대로 버려둔즉 자네 집에서는 은총을 놓을 것이니 절단코 인경약을 받아 (살게)” 생사로 온갖 이유로 깨우치시되 듣는 듯 하다가도 갑갑하고 억울해서 살 뜻이 없어 하니 두 분이 오히려 (자부가) 믿지 않은가 (하여) 살 궁리 지속하신[지속해서 말씀하신] 마음을 굳이 믿게 보이시려 (또) 마음도 잡게 하시려 환생 속 무시로 여러 가지 비원을 기록하여 주시고 천방백계로 천하에 펼 수 있도록 깨우쳐주시기 자부 팔자 기구하기

-
- 7) 린경을: 인경약(引經藥)을. 일정한 장부(臟腑)와 경맥(經脈)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것과 배합된 다른 약이 일정한 장부와 경맥에 대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도록 약성을 이끄는 한약.<한의학사전>
 - 8) 가유가유호옵시되: 가유가유(家諭家諭)하시되. 가유호세(家諭戶說)에서 온 말이다. 집집마다 일러서 깨우침을 뜻한다.
 - 9) 원역: 원역(冤抑). 원역하다의 어근. 원굴하다(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와 같은 말이다.
 - 10) 기험: 기험(崎險). 기구하다와 같은 말.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다는 뜻이다.
 - 11) 초독지: 초독(峭毒)하지. ‘초독하-’는 매섭고 독하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
 - 12) 저디디: 저대(著大)하지. ‘저대하다’는 드러나게 크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무시무시하되 천성은 독하지가 못하나 결단코 스스로 목숨을 다하고자 세상에 머물 곳이[머물 이유가] 한 가지도 없더니 자부 만 것을[죽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만 가지로 깨우쳐서 허가 닳아질 듯 (시숙들의) 심신이 상할 정도로 저리하시니 내 원억(冤抑)만 생각하고 앞 못 보는 딸도 없는 시어머님, 두 분 시삼촌 명완(命頑)이 자부에게 매여 있다 누차 말씀하시니 도리어 놀랍고 몸을 버린 중에도[상황에도] 황공황공하기에 자부가 말씀드리기를 “일어나도 종가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께 아주버님의 한 가지 뜻도 받지 못할 인생이라”고 송장으로 누어 여쭙니 “벽만 지고 앉아도 목숨만 이어 달라” 하시며 주상 말씀까지 하여 계신 줄 어찌 어머니 다 아시겠습니까]

시숙들은 “윤씨가 종가 명문 사당 산소 우마장이 원통해하고 삼십 칸 기와집이 썩대밭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모두 광주이씨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해남윤씨의 명운을 홀로 남은 어린 종부 광주이씨에게 짊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앞 못 보는 딸조차도 없는 시어머니와 두 분의 시삼촌 명환이 모두 자부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광주이씨의 죽음을 만류했다. 시숙들은 광주이씨가 명만 끊지 않고 살아준다면 남편 잃은 설음 외에 다른 근심은 없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이씨는 이러한 시숙들의 약속을 금석같이 믿고 남편을 따라 죽어야 마땅하나 구차히 살아남았다고 한다.

시숙들의 간곡한 만류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광주이씨는 이후 43년간 외로운 해남윤씨가 종부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7. 외로운 종부 광주이씨의 종가살이

유교적 종법질서가 존재하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으로 파악되지 않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라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약속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그러나 어떤 여성이 전통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여성은 자신이 학습 받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광주이씨가 해남윤씨 종가에서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처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광주이씨는 보편적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다른 여성들과는 많이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부재, 무능하고 유약한 시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종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종부로서의 지위는 자신이 찾고 자신이 지킬 수 밖에 없는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광주이씨가 종부가 되어 시댁으로 왔을 때는 이미 해남윤씨 종가의 가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듯하다. 해남윤씨 종가의 가산은 앞서 윤효정이 가산을 일으킨 후 국부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막대했다¹³⁾. 따라서 종가의 권한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종손의 요사로 종가의 권위는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한 노비제도의 변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해 종들의 이탈도 심하였던 것을 예문 (3)을 통해 알 수 있다.

(3)(가) 종들이 형세(形勢)의 충노(忠奴) 아닌 후 마니 썩로 난 거시오니 큰덕 형세(形勢) 연중(年中) 업시 비시오니

[종들이 (이러한) 형세에 충노가 아닌 자 말고는 많이 따로 나가버린 것인데 큰덕 형세가 연중 (구별) 없이 빛이오니]

(나) 종들도 남논(男奴) 여비(女婢) 솔흔 거시 유리(流離) 종이 되오니 나가리 드러가리 저의 무음으로 그리호오니 저의만 몹슬 거시란 말 못할 줄로 아오며

[종들도 남자 종 여자 종 솔하던 것이 유리(流離)하는 종이 되니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을 저의 마음대로 그리하니 저의만 몹쓸 것이라고 말도 못할 줄로 알며]

(다) 조부가 철부디로 전곡(錢穀) 부족단 말도 못할 말이로소이다 팔도의 유명유명한 [격]윤싱원덕 명문(名門) 누대(累代) 지물(財物)을 지간(才幹) 업게 헛탄이 쓰온들 노비달이 아닌 후 먹기까디 비시오니 이 터의 무슨 세상 귀천(貴賤)이오니잇가

[자부가 철부지로 전곡 부족하단 말도 못할 말입니다. 팔도에 그리 유명하던 윤생원덕 명문 누대 재물을 재간 없게 헛되이 쓴들 노비들이 아니면 먹기까지 빛이오니 이 상황에 무슨 세상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종들조차 광주이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종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예문(4)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4) 수족을 동인 후 전신(全身) 불수(不隨) 세상의 슬디 잇습. 밥 먹는 귀신이오며 전곡(錢穀)이 혼흔여 헛저(下底)나 종이나 막 비부르게 먹겨 시겨도 위엄(威嚴)이 업슨

13) 尹孝貞은 학문에 힘쓰고 농업경영을 부지런히 하였다. 1501년 生員에 合格한 後 官界 進出을 포기하고 제자 교육에 힘써서 학문을 모르는 海南地方을 文獻, 禮義之鄉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夫人은 海南의 鄉族이었던 海南鄭氏였다. 尹孝貞은 그의 妻家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海南의 甲富가 되어 그때부터 海南 尹氏의 經濟的 基盤은 튼튼해졌다. <고문서집성 해남윤씨해제, 정구복>

후 아니 듯는 디 병신 둔질(鈍質)이 빅스(百事)의 속여속여 더구나 천역(賤役)은¹⁴⁾ 죽어도 못할 거시니 먹을 것 업서 비부르게 못 먹이며 시겨든 문 안이 발이나 드되며 임즈 업산 땃땃¹⁵⁾ 조부 말을 싹죽이나 호오리잇가 혀 다라디게 말만하다 쓰시 업시 말면 종들게 심심이 하니 악정(惡政) 내여더만 아니 듯는다 저의나 그리하면 현마¹⁶⁾ 어이호오리가 몹슬 속만 상호오며 기가 막힐 썩 뉘럴 원(怨)호오며 어디 하소호오리잇가

[수족(手足)을 동여맨 후 전신이 불수가 된 세상에 쓸데가 있습니까. 밥 먹는 귀신이 오며 전곡(錢穀)이 흔하여 하저나 종이나 막 배부르게 먹여 시켜도 위엄이 없으면 듣지 않는데 병신 둔질이 백사에 속여 속여 더구나 천역은 죽어도 못할 것이니 먹을 것 없어 배부르게 못 먹이며 시키면 문 안에 발이나 들여놓으며 임자 없는 땃땃한 자부 말에 싹죽이나 하겠습니까. 혀 닳아지게 말만 하다 끝이 없이 말아버리면 종들에게 심심하게 구니[싱겁게 구니] 악정 내었더니 듣지 않는다. 저희가 그리하면 차마 어찌 하겠습니까. 몹쓸 속만 상하며 기가 막힐 썩 누구를 원망하며 어디다 하소연 하겠습니까]

노비노동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었기에 종들의 근면과 충성은 가정 경제의 필수적이 요소였다. 광주이씨는 종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종가의 경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경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신을 가리켜 “수족을 동여매어 전신이 불수가 된 존재”로 또 “밥 먹는 귀신”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친들은 청상이 된 두 종부가 지키는 종가에 간섭이 극심하였고, 종들은 종가를 우습게보고 재물을 도적질해 갔다.

(5) [격]아즈바님 밧긔서 거두어드리고 종들 삼분병작훈¹⁷⁾ 곡식 도적덜도 심히기 그

14) 천역은: 천역(賤役)은. 여기에서 천역은 여성들이 담당했던 여러 가지 가사노동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여성들에게 ‘男耕女織’이라는 명분으로 양잠, 면포, 삼베, 생산과 같은 직포 생산을 독려하였다. 본 편지에는 ‘조부 세간 못 살고 길삼은 새로이 조부 입는 것도 남의 손을 비오니 종물 오죽 히롭스오리잇가[자부 세간 (잘) 못 살고 길쌈은 새롭게 자부 입는 것도 남의 손을 빌리니 종물에 오죽 해롭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광주이씨가 여성들의 고유한 노동(女工)을 거부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온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수많은 업무 중에서 길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길쌈이 가족의 의복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조세의 납부나 장사에서 화폐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15) 땃땃: 땃땃한. ‘땃땃’은 ‘땃땃ㅎ-’의 어근이다. ‘땃땃ㅎ-’는 현대어 ‘땃땃하다(생김새가 매끈하게 곧고 길다)’로 이어지는 데 여기서는 광주이씨가 남편이 없는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16) 현마: 차마. ‘현마’는 ‘얼마’의 옛말이다. ‘얼마라도, 차마, 설마’의 뜻으로 쓰였다. 중세어에서 ‘멧마, 언마, 현마’ 등의 쓰였는데 ‘마’가 접미사처럼 사용되었다. 저고마, 초고마 등의 ‘마’도 이 형태소 ‘마’와 관련이 있으며 ‘만, 아모만, 만치’ 등의 ‘만’도 관련이 있는 어휘이다.

도 일코 무어술 가디고 제곡(祭穀)¹⁸ 객량(客糧)¹⁹ 농량(農糧)²⁰ 허리 덕키며 판판 조부는 놀며 종들 일 시기다 심심 디딜²¹ 감도이²² 허기 반심(叛心) 먹난단 말도 듯습고 조부 업고져 심성(心性) 정변(政變) 허게 만치 아닌 그릇 손은 열낙헌디 식기로 쓰레로 술애나 반상기 접시 몇몇 가디 디버내다 서방님 수저 이모년(임오년) 도적두 두고 간 져가디(수저까지) 도적 허오니 앓갑도 아니코 쓰기의 성가신 둥 반상기 접시보다 저논 드노아²³ 잡수신 거시라 더 절통 분 허옉기 그런 거술 덕키디 못 허고 시시로 일논(잃어버리는) 거순 큰도적도곤 소소이 일난 거순 상람(上覽)의 답안이 볼 거시 업다 허오며 엄영(掩映)²⁴은 업서 금지도 허여주리 업논 돌두곤 심 허옉기 이 형용을 디여습는이다

[아자바님 밖에서 거두어들이고 종들은 삼분병작한 곡식을 도적질도 심하기에 그것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제곡(祭穀), 객량(客糧), 농량(農糧)으로 쓸 것 지키며, 판판 (노는) 자부는 놀며 종들 일 시키다가 심심하고 지질하게 감돌이 하기[싱겁고 지질하게 자기 이익만 취하기] 반심(叛心) 먹는다는 말도 들었고, 자부 업고져[자부를 무시하고] 마음에 역심을 품고 많지도 않은 그릇, 손은 열악한데, 식기로 뚜레로 술애나 반상기 접시 몇몇 가지 집어내다 (팔고) 서방님 수저 임오년에 도적도 두고 간 져가락까지 도적질을 하니 (오히려) 아깝지도 않고 쓰기에 성가신 중에 반상기 접시보다 져가락은 (서방님께서) 들고 놓으며 잡수신 것이라 더 절통하고 분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때도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큰 도적보다 소소히 잃어버리는 것은 상람(上覽)하던 집안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하며 가려주는 것이 없어 막아 줄 사람 없는 돌보다 심하기에 이 형용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였던 종가의 재산은 시숙이나 종들 때문에 곡수(穀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종들까지 많지도 않

17) 삼분병작헌: 삼분병작(三分竝作)한. 조선시대의 소작제도의 하나이다.
 18) 제곡: 제곡(祭穀). 이 편지에서 '제곡'은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곡식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무즈년 유월 스무여드래 날 [격]제곡(祭穀) 업서', '먹은 것도 그러치 못홀디 [격]제곡을 학취 허여 쓸 거시다', '또 엇디 빗 어더 머그며 종부 골이며 [격]제곡 허오리잇가', '순전 여름 [격]제곡이 업스오니 조부 세상의 무어시 그리 축축 가슴 튀여'의 용례에서 보인다. '제곡' 앞에 모두 '[격]'을 두어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객량(客糧):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하여 두는 식량. <표준국어대사전>
 20) 농량(農糧): 농사짓는 동안 먹을 양식. <표준국어대사전>
 21) 지질: '지질하다(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의 어근.
 22) 감도이: 감돌이. '감도이'는 '감돌이'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갈돌이'는 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덤비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한곳으로 감돌아드는 물에 비유하여 생긴 말이다.
 23) 드놓다: 들놓다의 옛말. '들어 놓다'. '들고 놓다'. '들어 올리다'의 뜻.
 24) 엄영(掩映): 막아 가리거나 그늘지게 함. <표준국어대사전>

은 그릇을 멋대로 집어내다 처분하고 하물며 서방님 수저까지 도적질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종가의 기강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이씨는 종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일을 시켜야 하니 마음이 괴롭고, 종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 그 고통 또한 심하다는 심정을 편지에 반복적으로 기술했다. 결국 자신이 종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권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가의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예문 (6)을 보면 광주이씨는 제사를 지낼 곡식을 못 얻어 찢쩍 매며 손님 대접할 음식이 없어 고민하였다.

(6)(가) 제수 잇다감 빈객(賓客)²⁵⁾ 적은 곡식 아무쪼록 조라여²⁶⁾ 쓰려 원통(冤痛) 원 억원억(冤抑冤抑) 철천(徹天) 백골(白骨)이 석딘²⁷⁾하여도 석디 아닌 유흔(有恨)은 열 가지 다 잇덧기 하여 살 마음을 두읍

[제사에 이따금 귀한 손님 대접에 적은 곡식으로 아무쪼록 넉넉하게 쓰려 원통하고 원억하고 또 원억하여 철천 백골이[뺨에 사무치는 백골이] 석진하여도 썩지 않은 한(恨)은 열 가지가 다 있듯이 하여 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나) 님딘연 봄을 당하여 소의 당가 허덧 마덧 순전(純全) 여름 [격]제곡(祭穀)이 업스오니 조부 세상의 무어시 그리 축축 가슴 튀여 조석(朝夕)을 당하여 식음(食飲)의 마시 업고 성야(星夜)의 잠이 업시 엇지 다 투싱(偷生)하여²⁷⁾ [격]명문후택 금족만흔 지물 헛탄이 쓰고 설움만 싱각 편이 잇다 궐향(闕享)을²⁸⁾ 훈 후 상적(相敵)은²⁹⁾ 낭반 못 어더드리물 원근간(遠近間)의셔 오죽 7이 업셔 훈³⁰⁾흡시랴 디디하천(至至下賤)도 제 인스 체면을 덕키면 간대로³⁰⁾ 멸대(蔑待) 아니하옵는디 조부 만 거슬 개풍의 버러디로 알나 시버 미일 업시 투싱(偷生)하였다 이런 우세³¹⁾ 죠쇼 잇느냐

[임진년 봄을 당하여 소를 담가 하든 말든 순전이 여름 제곡이 없으니 조부 세상에 무엇이 그리 축축 가슴 튀던지 조석을 당하여 식음의 맛이 없고 성야(星夜)에 잠이

25) 빈객(賓客): 귀한 손님. <표준국어대사전>

26) 조라다: '자라다'의 옛말. 많아지거나 넉넉하게 되다.

27) 투싱하여: 투생(偷生)하여. 죽어야 마땅할 때에 죽지 아니하고 욕되게 살기를 꾀하다. 구차하게 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

28) 궐향(闕享): 궐향(闕享)을. '궐향'은 궐사(闕祀)(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지내지 못하여 빠뜨림)와 같은 말임. <표준국어대사전>

29) 상적(相敵)은: 상적(相敵)한. 양편의 실력이나 처지가 서로 걸맞거나 비슷하다. <표준국어대사전>

30) 간대로: 그리 쉽사리. '함부로(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의 방언(경남). <표준국어대사전>

31) 우세: 우세. '남우세하다'(남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게 되다)와 같은 말. <표준국어대사전>

없이, 어찌 다 투쟁하여[구차히 살아남아] 명문후택 금쪽같은 재물을 헛되이 쓰고 설
음만 생각하다 편안히 있다가 곁향을 한 후 상적(相敵)한[격에 맞는] 양반 못 얻어
들임을 원근 간에 오죽 가없어 한(恨)하시랴. 더할 수 없이 낮은 하천(下賤)도 제 인
사 체면을 지키면 함부로 멸대(蔑待)하지 않는데 자부 만 것을[죽으려다 만 것을] 개
똥의 벌레로 알라 싶어 매일 없이 투쟁하였다가[구차히 살다가] 이런 남우세 받고
조소 받느냐]

봉제사(奉祭祀)³²⁾와 손님 접대(接賓客)는 종부의 가장 큰 의무이면서 권리였다. 그런
데 종부의 고유한 의무인 봉제사와 손님 접대를 행사하기조차 빠듯한 살림살이이다 보
니 종가의 위상은 말이 아니었고, 봉제사의 주체인 종부인 자신도 그 권위를 지켜가기
가 어려웠다.

부족한 경제력은 자신의 중요한 의문인 시모 봉양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시어머
니가 병이 났을 때 죽을 쓸 쌀조차도 구하기가 막막했다고 했다. 친정에서 물욕 없이
살다 이리저리 돈을 빌리려 다니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7) 그 칠팔 월의 [격]어마님 환후(患候) 공극(孔劇)³³⁾ 위황위황(危慌危慌)하신디 미
음 곡식 업서 그적의 더욱 [격]아주바님께서 디금 곱트시면 [격]어마님 엇디 회춘하
여 계시옵. 자부도 보타달 일이오디 남녀 비복(婢僕)까지 열류령 수응(酬應) 간례(慣
例)의 삭여습. 돈 한 냥 주시기 상봉을 시켜 팔나 하온즉 이틀만의 돈 갖다주오니
폭폭 가슴 취오며 어디 살 고디야 대살연(大殺年)³⁴⁾ 아닌디 돈을 갖고 곡식 못 파니
굴머 죽을 고디라 시버 조부모(祖父母) 덕으로 세상의 물욕(物欲) 영욕(榮辱)을 몰나
습다 그저야 아옵고 내 터의 이 가사(家事) 디이고³⁵⁾ 이 터의 이 가슴을 뽀운 후 날
곱튼 인심 무슨 귀천이나 잘 잡디면 부여(賦與)는 못흔들 현마 빗 주소 꾸이소 남의
게 허 고분 소리하리 내 터의 형세(形勢)³⁶⁾ 업스면 더욱 소임을 못힐 거시니 오죽
수이 넉이며 숨 갑시 잇스리 이러하옵시

[그 칠팔 월에 어머님 환후가 공극(孔劇)하여 대단히 위태롭고 황망하신데 미음 (쓸)
곡식이 없어 그때 더욱 아주버님께서 지금 같으시면 어머님 어찌 회춘하여[회복하
여] 계시겠습니까. 자부도 속이 탈 일인데 남녀 비복(婢僕)까지 열류정 수응(酬應)하
는[요구에 응하는] 관례라고 (여기며) 삭였습니다. 돈 한 냥을 주시기에 상봉을 시켜

32) 조선시대 총부는 남편이 죽은 후 그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봉
사권(祭祀權) 혹은 제주권자(祭主權者)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다.<강혜경(2008) 참조>

33) 공극(孔劇): '공극하다(심하고 지독하다)'의 어근.<표준국어대사전>

34) 대살년(大殺年): 대흉년(대단히 심한 흉년).<표준국어대사전>

35) 디다: '지게 하다. 떨어뜨리다. 내리다. 뿌리다. 없애다'의 옛말.

36) 형세(形勢): 살림살이의 형편.<표준국어대사전>

(곡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도로) 돈을 가져다주니 폭폭 가슴 치며 어디 살 곳이야 대살년(大殺年)도 아닌데 돈을 가지고 곡식을 못 사니 굶어 죽을 곳이라 싶었고 조부모 덕으로 세상의 물욕, 영욕을 모르다가 그제야 알고 내 처지에 이 가사(家事)를 지게하고 이 처지에 이 가슴을 태운 후 나 같은 인생이 무슨 귀천이라. 잘 말아서 하면 부여(賦與)는 못하겠지만[남에게 나누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설마 빛 주소, 꾸이소 하며 남에게 혀 곱은 소리하리. 내 처지에 형세 없으면[형편이 나쁘면] 더욱 소임을 못할 것이니 오죽 (남들이) 쉽게 여기며 목숨 값이나 있으리]

시아머니의 환후가 위태로운데도 미음을 쓸 곡식조차 없어서 애를 태웠다고 한다. 종을 시켜 곡식을 사오라고 했는데도 대흥년이 아닌데도 살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8) [격]어마님 서중 세전(歲前)³⁷⁾의 빙고(氷庫) 곱튼 방의 두풍³⁸⁾ 즈로³⁹⁾ 발작 못 견디여 호흡서 계시니 사나의 종들이서 안악 방 하나을 그리 한고(寒苦) 격그실 적 주방 거쳐(居處) 오죽 하시게습. 이번의 [격]아주바님그 옛즈오니 사랑방은 벗적 덩게 지내여다 호흡시니 엄영(掩映)으로 그리호흡고 안악은 걱정만 한다며 그리 차게 호흡오며 [격]어마님 방 차면 병환 나시며 방의 불 신축(伸縮) 등안이 한다 즈제 업스를 설워 호흡시면 7이 업서 계집 종도 시켜 더 너이되 남무 업다 호흡면 사나의 종 시기면 불공설⁴⁰⁾하는 제도 잇고 속여 너어노라 하는 제도 잇스오며 극한의는 더욱 실섭(失攝)호오실⁴¹⁾ 적은 이 터의 안저 조석(朝夕)으로 식초(柴草)로 근심을 호흡고

[어머님 서중 세전(歲前)에 빙고(氷庫) 같은 방에서 두풍 병으로 자주 발작을 못 견디어 하셔 계신데 사나이 종들 때문에 아낙 방 하나가 그리 한고(寒苦) 겪으실 때 주방 거쳐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아주버님께 여쭙니 사랑방은 벗적 덩게 지내었다 하시니 엄영(掩映)으로[비밀히] 그리하고 아낙은 걱정만 한다며 그리 차게 합니다. 어머님 방이 차면 병환 나시며 방의 불 늘이고 줄이는 것을 등한히 한다고 자체가 없음을 서러워하시면 가없어서[끝이 없어서] 계집종을 시켜서 (장작을) 더 넣어 달라 하되 나무가 없다고 해서, 사나이 종을 시키면 불공하게 함부로 하는 자도 있고 속여서 넣었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극한에는[심한 경우에는] 더욱 몸조리조차 하지 못하실 때는 이 처지에 앉아 조석(朝夕) 걱정으로 식초(柴草) 걱정으로 근심

37) 세전: 세전(歲前). 설을 쇠기 전<표준국어대사전>

38) 두풍(頭風): 머리 아픈 것이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고 수시로 발작하거나 멎는 증상.<한의학사전>

39) 즈로: '자주(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의 옛말.<표준국어대사전>

40) 불공설하는: 불공설화(不恭說話)하는. 공손한 태도가 없이 함부로 하는 말하는.

41) 실섭호오실: 실섭(失攝)하실.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하실. <표준국어대사전>

을 하였고

예문(8)을 보면 시모와 자신이 거쳐하던 방은 나무가 없어서 방의 온랭을 맞추지 못할 정도였는데 숙부가 거쳐하던 사랑방은 “버쩍 덩게” 지냈다고 한다. 종들도 이미 이름뿐인 종부들보다는 실세를 누리던 시숙들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광주이씨의 정체성 찾기

이러한 시숙들의 극심한 횡포에 대해 광주이씨의 시모인 양천허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했지만 광주이씨는 이를 돌파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바로 요절한 남편 윤광호의 뒤를 이을 양자의 입양문제였다⁴²⁾.

해남윤씨가에서 종손의 입양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⁴³⁾. 어초은(漁樵隱) 윤희정 이래 윤광호까지 십삼대 종손이 이어 내려오는 동안 네 번의 입양이 이루어졌다⁴⁴⁾. 광주이씨의 시조부(媿祖父) 되는 윤지정(尹持貞, 11대 종손)은 부인 남양홍씨가 후사 없이 20세에 죽었고 그 또한 26세에 요절했다. 그래서 종가 살림은 증조모(曾祖母)가 맡게 되었다. 이어서 시부(媿父)인 윤종경(尹種慶, 12대 종손)이 입양되었으나 두 번이나 상배(喪配)를 한 뒤에 세 번째 양천허씨(陽川許氏)를 맞았다. 양천허씨는 간신히 독자 윤광호(13대 종손)를 얻었지만 16세에 병사하고 말았다.

종손이 요사하여 가묘를 이어 받들어 줄 후사가 없게 되자, 종가의 입양문제를 둘러싸고 근친들과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과 권한을 갖게 되는 종

42) 조선시대의 총부들은 남편 사후에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총부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총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후를 하는 것이 방법이었다. 총부의 입후는 총부주제(冢婦主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총부주제’에서도 총부가 입후를 하지 않으면 제사는 자연히 차자에게 넘어가고 총부는 모든 지위를 잃게 되므로 입후를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제사권(祭祀權)은 재산권(財産權)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제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순구(1996) 참조>

43) 해남윤씨가에는 윤선도가 자손에게 내려 준 家訓이 전하는데 그 다섯째 항목이 “後嗣를 구하되 점쟁이 말을 듣지 말고 眞詮을 주로 삼아라”이다. <고문서집성, 해남윤씨 해제, 정구복> 그 만큼 입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44) 해남윤씨가는 윤희정 이래 윤주흥까지 총 4번의 입양이 이루어졌다[孝貞(1476-1543)→尹衢(1495-?)→尹弘中(1518-1572)⇒尹唯幾(1554-1619)⇒尹善道(1587-1671)→尹仁美(1607-1674)→尹爾錫(1626-1694)⇒尹斗緒(1668-1715)→尹德熙(1685-1766)→尹棕(1705-1757)→尹持貞(1731-1756)⇒尹鍾慶(1769-1810)→尹光浩(1805-1822)]

尹弘中은 동생 尹毅中의 차자인 尹唯幾를 입양했고 尹唯幾는 동복형 尹唯深의 차자 윤선도를 입양했으며 尹爾錫은 尹爾厚의 넷째 아들 윤두서를 입양했다. 그리고 尹持貞은 아들이 없어 삼촌인 尹恠의 아들 尹奎常의 셋째아들 尹鍾慶을 입양했다. 이때까지 종가의 입양은 모두 지친 간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의 입양문제는 종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⁵⁾.

종손의 부재로 오랫동안 종가 살림을 돌보아 오던 시숙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양문제를 이용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해남윤씨가에서 이루어진 입양은 모두 지친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종가의 양자로 삼아 경제권을 확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광주이씨는 시숙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피폐해진 종가를 바로 세우고 종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장치로 입양문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따라서 시숙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히려 멀리 있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골랐다.

광주이씨는 멀리 충청도에 살고 있던 일가 중 십촌이 넘는 조카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다. 시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충청도 서천에서 주흥(柱興, 兪名 兪철)을 데리고 온 것이다. 윤주흥은 윤광호의 4대조인 윤덕희의 둘째 동생 윤덕훈(尹德薰)의 손자인 윤명호(尹命浩)의 아들이다. 윤광호에게는 11촌 조카가 된다. 윤주흥은 해남윤씨 종가로 입양되어 종손이 된 후 3남 4녀를 낳았고, 이후 해남윤씨 종가는 그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시숙들이 윤주흥의 입양이 더욱 탐탁지 않았던 이유는 윤주흥의 생가가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시숙들은 종가의 재산이 윤철의 생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이 입양이 더욱 못마땅했다. 이 일로 해서 숙부들과 광주이씨 간에 경제적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 광주이씨가 쓴 편지 곳곳에는 서천에서 윤철의 생모가 해남을 방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시숙들과 겪는 갈등이 기술되어 있다.

(9)(가) 아즈바님께서 서천을 딴정(耽)이 탐(耽)은 줄 아르셔 적상(積傷)하신⁴⁶⁾ 눈치 었디 미련 여편니온들 모르오리잇가 세〴〵히 심각(愼)하여 보온즉 아즈바님 그러하시기 고이치 아니혹옵더이다

[[어머니께서) 아주버님께서 서천을 진정(眞)이 탐(耽)한 줄[주시하고 계신 줄] 아서서 적상(積傷)하신 눈치 어찌 미련 여편네인들 모르겠습니까. 세세히 생각하여 본즉 아주버님 그러하시기 괴이치 아니하였었습니다]

(나) 서천이 저리 철빈(鐵貧)의로⁴⁷⁾ 종가(宗家)만 미들세면 [격]어마님그셔나 [격]아즈

45) 조선 중기 총부의 제사권(祭祀權)과 입후권(立後權) 문제는 총부 자신의 생존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제사상속이라고 하는 사회 예측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입후가 더 일반화되는 것은 혈통보다 종통을 중시하는 의식의 일반화 혹은 성리학이 보다 의리론적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상은 누가 더 많은 재산권을 갖느냐 하는 실리 추구에 의해 분쟁이 있어났고, 그 분쟁에서 총부가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어 입후가 일반화 된 것이다. <이순구(1996) 참조>

46) 적상(積傷)하신: 적상(積傷)하신. 어떤 일로 오랫동안 마음을 썩이라는 뜻. <표준국어대사전>

47) 철빈(鐵貧)의로: 철빈(鐵貧)으로. '철빈'은 더할 수 없이 가난한 상태를 뜻한다.

바님긔셔 와 원예(遠慮)를 아니 칭각

[서천이 저리 철빈(賤貧)으로[더 할 수 없이 가난한 집으로] 종가(宗家)만 믿을 것 같으면 어머님께서나 아주버님께서 왜 원려(遠慮)를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나) 청상 잇는디 십 세 못된 조식 보내고 못 잇고 보고시분 소정 막어 응철이 아니 보내고 응철 어마님도 못 오게 말슴 인심의 못후올 일이오나

[청상 잇는데 십세 못된 자식 보내고 못 잇고 보고 싶은 사정 막아 응철이 아니 보내고 응철 어머님도 못 오게 말씀하신 것은 인심의 못할 일이나]

시숙들이 응철의 생가 서천을 호시탐탐 주시하며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마음을 썩고 있는 일을 광주이씨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응철의 생가를 두고 광주이씨와 시숙들의 대립이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서천 응철이네 생가에서는 생모가 아들을 보고자 해남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모양이고 이로 인해 시숙들은 응철의 입양에 대해 불만은 더더욱 커져갔다.

시숙들의 반대를 무릅 쓰고 지친이 아닌 촌수가 먼 응철을 양자로 들임으로써 종가에서 광주이씨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갔고 시숙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⁴⁸⁾. 사정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시숙들과 광주이씨의 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가중 되어 갔다.

(10) 제 미거⁴⁹⁾ 무무훈⁵⁰⁾ 일신 예절을 어이 아오리잇가마는 조부더러 예의 알고 한물 지계(支計)⁵¹⁾ 건니란 말슴 더 원통원통 각골이 원억. 내 무순 미일노 무상훈 세상의 의구히 머물어시버 절단코 완명이나⁵²⁾ 조딘코져 모음 밧.

[제 사리 어둡고 무식한데 일신 예절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조부더러 예의 알고 한

48) 해남윤씨가에는 1826년 윤주흥(尹柱興)의 염장문기(鹽場文記)가 전해진다. 1826년 윤주흥의 요청에 따라 현산면 두모포에 있는 염장의 세를 면제해 줄 것을 허가하는 문서이다. 윤주흥은 이 때 겨우 3세이지만 해남윤씨가의 공식적인 문서가 윤주흥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49) 미거: 미거(未舉). ‘미거하다(철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의 어근.<표준국어대사전>

50) 무무훈: 무무(貿貿/贅贅)한. ‘무무하-’는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하다는 뜻이다.<표준국어대사전>

51) 한물 지계 : 채소, 과일, 어물 따위가 한창 수확되거나 쏟아져 나올 때를 ‘한물’이라 하고, ‘지계’는 地契로 볼 수도 있고 ‘支計’로 볼 수도 있다. 地契는 대한제국 때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나 문권을 말하고 ‘支計’는 ‘셈’이나 ‘회계(會計)’를 뜻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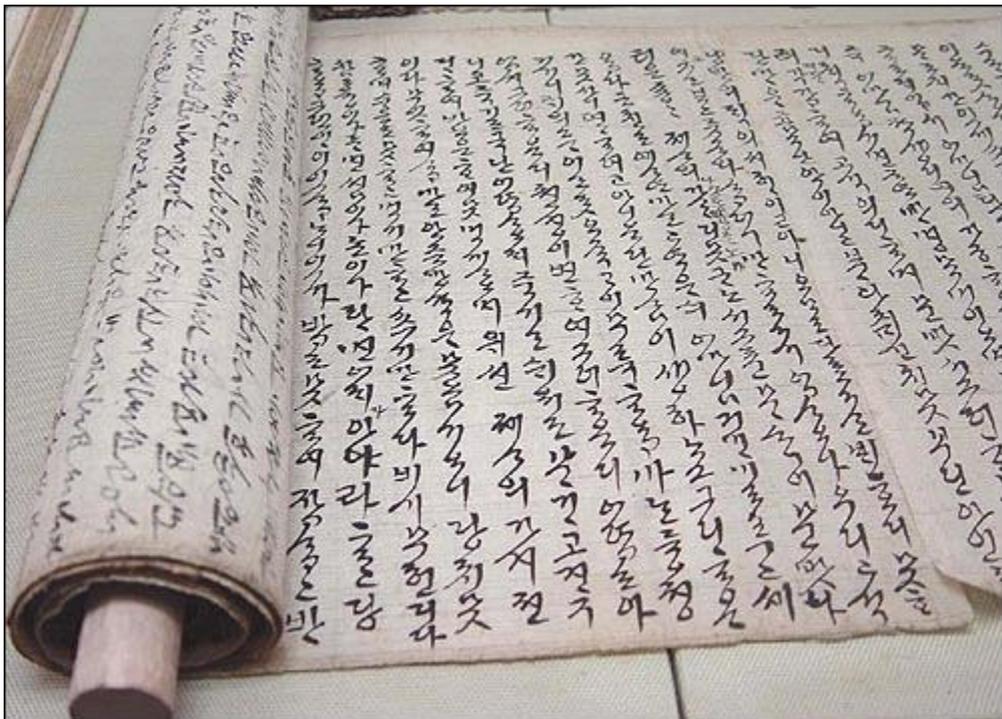
52) 완명이나: 완명(頑命)이나. ‘완명’은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 있는 목숨을 뜻함.<표준국어대사전>

물 지계 건네란 말씀 더 원통하고 각골까지 억울합니다. 내 무슨 (생각으로) 매일같이 무상한 세상에 의구히 머물까 싶어 결단코 완명이나[모질게 살아가는 목숨이지만] 자진하고자 하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시숙들은 한물의 수확 장부인 “한물 지계”를 건네라고 하였고 이 사실에 광주이씨는 원통함이 극에 달했다. 이런 시점에 광주이씨는 홀연 친정으로 떠난다.

9. 절망의 순간 시모에게 보내는 지원의 메시지

종가에서 10여년 종부살이를 하던 광주이씨는 홀연 양자 응철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친정에 머물면서 광주이씨는 순조34년(1834년) 3월 초4일에 시모에게 장문의 한글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가 바로 “규한록”이라고 알려진 광주이씨의 한글편지이다⁵³⁾. 이 편지는 시모만이 읽기를 기대하며 쓴 것이 아니라 시숙들을 비롯한 여러 근친들이 모두 돌려가며 읽기를 기대하고 쓴 것이다.



53) ‘규한록’이란 명칭은 박요순(1970)에서 저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편지 원문에는 아무런 명칭도 없다.

이 편지의 상당 부분은 시집은 후 당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편지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은 종가에서 자신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응철이를 양자로 택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또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응철이의 입양문제가 시숙들을 비롯한 시댁과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고 이 일로 인해 친정에까지 오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어마님계오셔 쏘 대증 내어 불의 너으실가 죄민(罪悶)호오며⁵⁴⁾ 아즈바님계셔 찬찬 감흐옵시기 두 번만 보셔도 대단 증 내어 불으 너으시기는 새로이 감누(感淚) 흐옵실 줄 아오나 덜 보아졌다 호오시니 실노 쯤시 감호오시디 아니코 업시호여 계시면 원통" 이 업소오이다

[어머님께서 또 크게 화를 내어 (편지를) 불에 넣으실까 죄스럽고 민망하며 아주버님께서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만 보셔도 대단히 화내어 불에 넣으시지는 (않으시고) 새로이 감격하여 눈물 흘리시겠지만, 덜 보겠다 하시고 실로 자세히 살펴보시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시면 (그런) 원통함이 없겠습니다.]

시어머니 양천허씨가 크게 화내며 편지를 읽기도 전에 불에 넣어버릴까 걱정하며 부디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과 시숙들이 자신의 편지를 자세히 보지 않고 없애버리면 얼마나 원통할까 하는 마음을 적고 있다. 그만큼 광주이씨와 시어머니, 시숙들간의 갈등이 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광주이씨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주이씨는 이 편지에서 시댁 해남윤씨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장한 마음을 예문(12)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12) 쯤부는 [격]어마님기나 속의 쓰이고 서러운 비원을 알외오니 엇디 아옵셔 증을 내옵셔 영영 오디 말나 호옵셔도 쯤부 가서 손으로 몸으로써 수월케 조역할 길 업습고 미일 업시 흠흠이⁵⁵⁾ 잇스온들 속이야 편호더니잇가 계답이라 흘 거시 업서 밥먹는 귀신이오니 어버이 동상 슬하 노인도 곱고 아히도 곱치 먹으나 굴무나 완명을 이 제는 할 일 업시 기드려 죽기를 바라노이다 쯤부는 심스의 님쯤 업슨 신체 법이라 그러호옵. 제 조부모 발치의 무칠 쓰시제 히남 쯤희 공중의 쓰는 구신 되기를 원치 아니호옵노이다

54) 죄민호오며: 죄민(罪悶)하오며. 보기에 죄송(罪悚)하고 민망(憫惘)하다는 뜻이다.<표준국어대사전>

55) 흠흠이: 흠흠하게. '흠흠하다'는 남의 일처럼 모르는 체하는 모습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자부는 어머님께나 속에 쌓이고 서러운 비원을 아뢰니 어찌 아시고 화를 내시어 영영 오지 말라 하셔도 자부 가서 손으로 몸으로써 수월하게 조역할 길이[도와드릴 길이] 없고 매일 같이 흠뻑하게 있은들[모른 체하며 있은들] 속이야 편하겠습니까. 계집이라 할 것이 없어 밥 먹는 귀신이니 (친정) 아버지 동생 슬하에서 노인도 같고 아이도 같이 먹으나 굶으나 완명을[죽지 못해 모질게 살아있는 목숨을] 이제는 할 일 없이 기다려 죽기만을 바랍니다. 자부는 살아서는 임자 없는 신체 법이라 그러합니다. 제 조부모 발치에 묻힐 뜻이 있지 해남 땅의 공중에 떠있는 귀신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부는 어차피 살아서 임자(남편) 없는 몸이고, 죽어서는 자기 친정의 조부모 발치에 묻힐지언정 해남 땅 공중의 떠 있는 귀신 되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시댁에서 자신이 처한 부당한 대우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광주이씨는 급기야 종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모(養母) 도리혀와 성장하도록 아버지 답의 미로⁵⁶⁾ 미스옵시면 덕택 무궁하올듯 천만 바라옵는이다((제가) 양모(養母) 도리하며 (웅철이가) 성장하도록 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하면 덕택 무궁할듯 천만 바랍니다.”라고 하며 양자 웅철 또한 성장할 때까지 자신의 친가에서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광주이씨가 긴 편지를 통해서 시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종을 포함한 종가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12) 조부 터의 식어마님 식삼촌 비위에 었디 당호오리잇가마는 눈의 디난(至難)하여야 호온디 그리도 못하고 가서 몸 둘 고디 잇습는이잇가 주인이 게셔도 어렵다 이르온디 가서 무슨 푸접 었다 의지호고 사잔 말슴이옵 전곡(錢穀)이나 마니 잇고 성정이나 업스면 종들이고 아무고 퍼주며 인심을 어더 그리 저리 산단 말이옵.

[자부 처지에 시어머님 시삼촌 비위에 어찌 당하겠습니까마는 눈에 지난(至難)하여야 한데 그리도 못하고 가서 몸 둘 곳이 있겠습니까. 주인이[남편이] 게셔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가서 무슨 푸접(을 받고) 어디다 의지하고 살자는 말씀입니까. 전곡이나 많이 있고 성정이나 없으면 종들이고 아무고 간에 퍼주며 인심을 얻어 그리 저리 산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인 웅철이에게 종물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달라는 것이고 웅철

56) 매로: ~처럼, ~같이 를 뜻하는 말로 경상도 사투리이다.<표준국어대사전>

이 혼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다.

(13)(가) 응철이가 엇더헌 사람이 되올지 종물을 던여주온 후 종운이 불행하여 못 디인 거시야 차마 조부 원망호오리잇가

[응철이가 엇더헌 사람이 되올지 종물을 지워준 후 종가의 운이 불행하여 (응철이가 종물을) 못 진 것이야 차마 자부가 원망하겠습니까]

(나) 응철이 혼수 죽은 묵스로⁵⁷⁾ 스오 년만 미주옵시면 비시나 썩오면 응철이 혼수나 여축(餘蓄)⁵⁸⁾ 아니 잇습느니잇가 아모조록 응철 장가들기의 빈명 나디 아니키와 혼수 빚 아니 쓰시기 디극 평칭 극원이로소이다

[응철이 혼수 죽은 묵으로[제 묵으로] 사오 년만 매주셔서 빛이나 덜면 응철이 혼수에 쓸 여축(餘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응철이 장가들기에 빈명(貧名) 나지 않기와 혼수에 빚 쓰지 않기가 지극 평생 극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서를 달기를 예문(14)에서와 같이 응철이가 지각이 들어 종수를 감당하기 전까지는 시숙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였다.

(14) 응이 디각드려 종수를 당키 전은 아즈바님계셔 원근간 시비 조곰치도 저어 마옵시고 식덕 것과 궂치 잡디여⁵⁹⁾ 수습호옵셔 비시나 아니 디고 양식이나 넉넉 범절 잘 거두어 주옵시고 아즈바님 잡스올 것 의지호옵시고 식덕의 형세 나아 논 사옵시면 조부 아첨(阿諂)이 업스오나 원근간 시비하시며 궂튼 조손 누기논(누구논) 못 먹으리 호고 원곡수 아니 주시논 일은 무무헌 여편니 소견 궂이 업더이다

[응철이가 지각 들어 종수를 감당하기 전에는 아주버님께서 원근간 시비 조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덕 것과 같이 다잡아서 수습하시어 빛이나 지지 않고 양식이나 넉넉하게 범절 잘 거두어 주시고 아주버님 잡수실 것 의재(依在)하시고 시덕의 형세 나아져 논을 사게 되면 자부는 (이를 두고) 아첨이 없겠지만, 원근간 시비하시며 같은 조손 누구논 못 먹으리 하고 원곡수 아니 주시논 일에는 무무헌 여편네에게 (더 이상의) 소견은 가없습니다]

57) 죽은 묵스로: 죽은 묵으로. '광주이씨'의 묵을 뜻한다. 죽어야 마땅한데 완명을 이어가는 자신을 지칭하여 '죽은 묵'이라고 하였다.

58) 여축: 여축(餘蓄). 쓰고 남은 물건을 모아 둬. 또는 그 물건.<표준국어대사전>

59) 잡디다: '잡되다(아주 엄하게 다잡다)'의 잘못

10. 결론 : 해남윤씨가 후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은 한실할머니

유교적 종법질서에 변화가 일어난 19세기 격변기에 가문 경영의 주체로서의 여성. 특히 문중의 종부로서의 지위를 가진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한글편지를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유교적 종법질서가 존재하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독립된 개체인 개인으로 파악되지 않고 친족이라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해남윤씨의 광주이씨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이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여성은 자신이 학습 받은 남성중심의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종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던 광주이씨는 종부로서의 지위를 자신이 찾고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주체로 자신을 인식한 것이다.

광주이씨는 종가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는 경제력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노비노동을 자신을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도 자신이 종가의 경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했다.

광주이씨는 종가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수단으로 종부의 ‘입후권’을 이용했다. 그 때까지 해남윤씨가에서 이루어진 입양은 모두 지친간에 이루어졌는데 광주이씨는 시숙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피폐해진 종가를 바로 세우고 종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장치로 입양문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따라서 시숙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히려 멀리 있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골랐다.

광주이씨가 장문의 한글편지를 통해 제기한 요구가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 이후 결국 광주이씨는 시댁 해남윤씨 종가로 돌아왔고 피폐해진 종가의 가세를 바로세운 것을 보면 광주이씨의 시위는 시어머니와 시숙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여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남편은 물론 자신의 피붙이 하나 없는 종가에서 광주이씨는 19세기라는 사회적 격변기에 종가를 바로 세우고 이름뿐인 종부가 아닌 명실상부한 종가의 안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광주이씨는 죽은 지 백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남윤씨 종가에서는 피폐된 종가의 가세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문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남윤씨 종가에서는 그녀의 친정인 대곡(大谷)을 택호로 하여 “한실(大谷)할머니”라고 칭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혜경(2008), 근현대 종부를 통해 본 유교전통 여성의 지위: 영남지역 종부사례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연구 제13집.
- 김정경(2005), 규한록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 서술자의 기능 고찰, 한국고전연구 12권 0호, 한국고전연구학회.
- 김현숙(2018),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 -종부의 치산과 가계경영-
- 박요순(1970), 신발견 규한록 연구, 국어국문학49·50, 국어국문학회.
- 박혜숙(2001),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고전문학연구 제20권 0호, 한국고전문학회.
- 이순구(1996),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9권0호.
- 정구복(1986), 古文書集成 三, 해남윤씨 해제.